총회 매뉴얼

2024—2026

상임 규칙 지침 및 정책 사명을 위

한 조직

임원

제226차 총회 (2024)

미국 장로교회(PCUSA)

공동 의장

세세 암스트롱 목사 토니 라슨 목사

상임 서기

오지현 목사

부상임서기

티모시 카갈 목사 트리샤 다이크스 코닉 목사

치리 장로 C. 로리 그리피스 치리 장로 케리 라이스

치리 장로 케이트 트리거 더퍼트 치리 장로 낸시 J. 테일러 치리 장로 Y. 다이애나 라이트

보조 정규 서기

아만다 크래프트 데

보라 데이비스

루시 덕슨-브램블 치리 장로 발레리 이즈미 치리 장로 릭 존스

치리 장로 마사 밀러

조슈아 희준 박 목사 나탈리 실스튜

마누엘 실바-에스테리치 목사 데이비드 스타니우나스

치리 장로 켄 톨리 치리 장로 플로르 벨 레스-디아즈 테레사 와그너

저작권 © 2024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국 총회 서기

목차

총회 상임 규정

1. 총회의 기초와 가치 **1**

하나님 예배 2

공동체 형성 2

신실한 분별과 통치 3

2. 하나님 예배 **4**

A. 총회에서의 공동 예배 4

B. 총회 기간 동안의 예배와 영적 형성 4

C. 선교와 공공 증언 5

D. 안식일 준수 5

E. 접근성 5

F. 토지 인정 5

3. 공동체 조성 **6**

A. 위원, 자문 대표 및 기타 총회 참가자 6

1. 위원 및 자문 대표의 역할 6

2. 위원 및 자문 대표단 준비 6

3. 참석 및 참여 6

4. 위원 6

5. 자문 대표 7

6. 연락 회원 8

7. 헌법 자문 위원회 9

8. 기타 참가자 9

9. 참가자 명단 9
10. 참가자 경비 10
B. 총회 준비 사항 11
1. 회의 일시, 장소 및 형식 11
2. 대면 회의 장소 선정 11
3. 전자 회의 12
4. 회의 준비 12
5. 행사 후원 13
6. 평화적 시위 13
C. 접근성 및 포용성 13
D. 의회 지도자 및 선거 14
1. 총회 의장단 14
2. 총회 서기 17
3. 부정기 서기 22

4. 신실한 분별과 통치 **23**
A. 총회 전 업무 23
1. 의제 출처 23
2. 마감일 23
3. 번역 우선순위 24
4. 편집 및 명확화 업무 24
5. 서곡 24
6. 오버추어 옹호자들 25
7. 기관, 위원회 및 위원회 보고서 25
8. 보고서의 유형 26
9. 참고 자료 26
10. 총회 회의록 26
11. 위원 결의안 26
12. 의견 27

13. 조언 및 자문 메모 27
14. 헌법 자문 위원회 보고서 27
15. 재정적 영향 27
B. 의회 위원회 27
1. 위원회 구성 27
2. 위원회 구조 승인 28
3. 의회 위원회 사회자 28
4. 오리엔테이션 28
5. 총회 위원회 위원 배정 28
6. 안건 회부 29
7. 의회 업무 이송 위원회 29
8. 안건 회부 절차 29
9. 잠정 의제 30
10. 위원회 지원 30
11. 위원회 보조원 30
12. 의회 위원회 절차 30
13. 신규 안건 32
14. 공청회 32
15. 의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 33
16. 의회 위원회 보고서 34
C. 위원, 자문 대표 및 기타 의회 참가자 35
1. 위원 및 자문 대표 등록 35
2. 위원 및 대표단 좌석 배정 및 접근 35
3. 정족수 35
4. 토론과 분별 35
5. 이전 질문 동의안 36
6. 투표 36
7. 본회의 동의 안건 36
8. 의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 36

9. 의회 위원회 보고서 36
10. 대체 동의안 37
11. 헌법 문제 37
12. 비공개 회의 37
13. 예산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38
14. 총회 후보추천위원회 38
15. 특별 인사말 39
16. 이전 공지 39
D. 위원, 자문 대표 및 기타 총회 참가자 여러분 39
1. 특별회의 소집 39
2. 서명 확인 40
3. 준비 및 통지 40
E. 위원, 자문 대표 및 기타 총회 참가자 41
1.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41
2. 중간 평의회 행정 위원회 42
3. 총회 특별 행정 심사 42
F. 위원, 자문 대표 및 기타 총회 참가자 42
1. 상임 규칙 개정 권고 42
2. 상임 규칙 개정 43
3. 상임 규칙의 정지 43

5. 용어 해설 **44**
A. 기관/총회 기관 44
B. 회의 44
C. 사회자 44
D. 세션 44

공개 회의 정책 50
기관 회의록 작성 지침 59
총회 기록 검토 지침 54
분쟁 시 장로교인을 위한 지침 56
사회 정책 수립 58
기본 원칙: 노회 시험 협력 위원회
후보자를 위한 62
미국 장로교(PC(USA))의 종교 간 입장 66
역사적 참고 사항 77
총회 상임위원회, 옹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검토 기준
자문 위원회 및 위원회 검토 기준 80
총회 기관 검토 기준 82
위원 및 자문 대표를 위한 윤리 기준
총회에 85
문화적 역량 기준 88
미국 장로교회(PCUSA) 아동/청소년/취약 성인 보호
정책 및 절차 92
선교를 위한 조직 102

정관

상임 규정

의

총회

제1부

총회의 기초와 가치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한 분이시요 섬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한 분이시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으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
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그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4–7, 26–27

부서지고 두려움에 찬 세상에서 성령께서
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끊임없이 기도할 용기를 주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주로 증거하게 하시며, 교회와 문화
속 우상 숭배를 폭로하게 하시며,
오랫동안 침묵해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미국 장로교(PCUSA) 신앙고백서에서 발췌

교회의 위대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보호, 양육 및 영적 교제; 신성한 예배의 유지;
진리의 보존;
사회적 정의 증진; 그리고
세상에 천국을 드러내는 일이다.

교회질서서, F-1.0304

총회는 교회 전체의 의회이며, 미국 장로교(U.S.A.)의 노회, 노회, 당회 및 교회의 일치를 대표한다.

총회는 모든 교회와 평의회 간의 연합과 공동체, 사명의 유대를 이루며, 이를 통해 온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도록 합니다(*교회질서서*, G-3.0501). 우리는 "장로들은 단순히 회중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대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교회질서서,* F-3.0204)는 점을 상기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총회의 핵심 가치, 특성 및 헌신을 세 가지 영역에서 확언합니다: 하나님 예배, 공동체 형성, 신실한 분별과 통치.

하나님 예배

- ❖ 공동체 안에서 공동 예배, 기도, 연구 및 제자도의 다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 ❖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기.
- ❖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성찬에 참여하며, 세례의 약속을 기념하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 ❖ 함께 소망하며 갈망하노니 우리의 상호 증언과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게 하소서.
- ❖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삶과 사역에 참여하며.

공동체 형성

- ❖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개혁주의 전통 안팎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
- ❖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 ❖ 다양한 배경과 관점, 특히 침묵당하거나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로부터 배우기.
- ❖ 기쁨과 감사로 증언하며 교회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들의 출현과 형성을 지원합니다.
- ❖ 교회의 필요와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길로 성령을 따라가며, 우리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1789년 첫 총회 이후 장로교인들이 신실하게 지켜온 방식을 고수한다.
  1789년 제1차 총회 이후 장로교인들이 신실하게 지켜온 방식을 고수하며, 교회와
- ❖ 상처 주거나 배제하거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 온 제도와 구조를 해체하고, 함께 교회가 되는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을 구축합니다.

신실한 분별과 통치

- ❖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반영합니다.
- ❖ 성령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의 정신을 채택합니다.
- ❖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심을 장로교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확신합니다.

- ❖ 사람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찾고 대변하기 위해 노력한다.
- ❖ 분별과 의사결정을 위한 의도적이고 공평하며 다언어적이며 접근 가능한 과정을 경험한다.
- ❖ 묵상,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의 솔직한 나눔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
- ❖ 각 개인이 토론에 가져오는 경험과 이해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목소리가 대표되고 존중되며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 쉽게 이해되고 접근 가능한 과정을 통해 질문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일어날 기회를 마련합니다.
- ❖ 창조물에 대한 책임 있는 돌봄과 인적·재정적 자원의 청지기적 관리를 실천합니다.
-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교회를 교회 전체와 연결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제2부

하나님의 예배

A. 총회에서의 공동 예배

말씀과 성례를 통해 총회는 성령의 생명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교회질서서*, W-1.0106).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총회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있다. 총회 의장은 총회 기간 동안 예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 선포를 함께할 이들을 선정하며, 주최 위원회, 총회 서기, 신학 및 예배 사무국과 협력하여 예배를 계획한다. 예배는 *예배 지침서에* 따라 계획되어야 하며, 그 말씀, 언어, 음악, 양식, 예배 형식에서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해야 한다. 의장단은 예배 계획과 인도에 포용성이 보장되도록 총회 대표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주의 만찬은 총회 기간 중 첫 번째 전체 예배에서 거행되며, 총회 기간 중 다른 예배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의장단은 첫 번째 전체 예배를 주재하고 말씀 선포를 담당한다.

정기 서기는 의장단과 협력하여 에큐메니컬 파트너들의 참여와 지도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증언하는 예배를 계획하고 지도한다. 성찬의 책임자인 정기 서기는 예배에서 말씀 선포를 할 사람을 초청한다.

B. 총회 기간 동안의 예배와 영적 형성

총회는 공동 예배 외에도 분별과 심의 과정에서 찬양, 감사, 고백, 중보기도, 간구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교회질서서*, W-5.0205).

총회의 각 위원회 회의나 본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 이러한 업무 회의는 의장의 재량에 따라 기도, 성경 묵상, 찬송, 침묵 등의 실천을 포함할 수 있다. 지도자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는 이러한 실천을 돕기 위한 훈련과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성경 공부, 기도와 묵상을 위한 조용한 공간 마련 등 의미 있는 영적 실천을 통해 총회에서 예배와 기독교적 성장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C. 선교와 공적 증언

예배는 세상 속 교회의 선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총회는 참가자들이 교단의 채택된 사회 증언 정책을 구현하는 봉사 활동과 공적 증언에 참여할 기회를 포함할 수 있다. 총회가 열리는 지역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미 선교와 공적 증언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개인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D. 안식일 준수

총회는 참가자들이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휴식과 여가, 개인적 재충전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총회가 주일에 개최될 경우, 해당 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지역 예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최 교단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날을 시작한다.

E. 접근성

하나님 예배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모든 참석자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F. 토지 인정

개회 예배 또는 총회 첫 본회의에서는 총회가 열리는 토지의 원주민에 대한 인정 선언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3부

공동체 설립

A. 위원, 자문 대표 및 기타 참가자

1. 위원 및 자문 대표의 역할

위원들과 자문 대표들은 총회의 기초와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 주체로서 모여 그들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도록 분별하고 인도하며, 교회의 증언을 강화하고 신앙과 삶을 양육합니다.

2. 위원 및 자문 대표 준비

정기 서기와 파송 기관은 공동으로 위원 및 대표들에게 오리엔테이션과 지도를 제공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을 준비시키는 책임을 진다.

3. 참석과 참여

a. 위원 및 자문 대의원은 총회 기간 내내 참석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원회 또는 본회의 중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로 교체되어야 할 경우, 정관 서기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 및 해당 위원장의 노회 지도부와 협의하여 대체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b. 위원회 보조원들은 위원회 활동 중 위원 또는 자문 대표가 총회 분별 과정의 다른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이를 통보받아야 한다.

4. 위원

a. 위원 수

위원 수는 G-3.0501에 따른 *질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노회 규모 결정 시에는 가장 최근 통계 정보가 있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노회가 보고한 현역 회원 수(교역 장로 포함)를 사용해야 합니다.

b. 선거 및 보고 마감일

노회는 위임받은 총회 회기 소집 18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위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위임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노회는 해당 노회가 가질 수 있는 위임위원 수와 동일한 수의 예비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위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 위원이 총회 폐회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c. 발언권 및 투표권

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 및 배정된 총회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하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d. 신설 노회

신설 노회의 경우, 해당 노회의 말씀과 성례를 담당하는 목사 및 교회들의 자격 요건 등록이 총회 개최 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된 경우, 해당 노회는 총회에 파송할 위원을 선출할 자격을 가진다(*교회질서서*, G-3.0501).

5. 자문 대표

자문 위원의 목적은 총회가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분별과 심의 과정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자문 위원은 그들의 참석과 참여를 통해 총회가 보다 대표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확장된 관점을 제공한다.

자문 대의원은 위원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며, 위임 대의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에서는 자문 대의원이 발언권을 가지며, 위임 대의원이 안건에 투표하기 전에 자문 대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자문 대표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신학대학생
- 파트너

a. 청년 자문 대표

각 노회는 청년 자문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의원은 노회 소속 교회 정회원 또는 노회와 관계된 예배 공동체 참여자여야 하며, 총회 소집일 기준 만 18세 이상 23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b. 신학대학생 자문 대표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장로교인을 대표하는 자문 대의원은 최대 20명까지 선출된다. 현재 석사 과정 신학대학원생은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서기에게 자문 대표 선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장로교 정치의 기초에 명시된 포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대표를 선정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c. 협력자 자문 대표단

에큐메니칼 및 선교 파트너 기관에서 최대 20명의 자문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중 최소 10명은 미국 외 지역 교회 출신이어야 하며, 세계개혁교회연합(WCRC) 회원 교회 출신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교단 또는 회원 교회를 대표하지 않는 선교 파트너 기관 출신은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다. 파트너 자문 대의원
다른 교회를 대표하는 자는 이전 총회의 초청에 따라 해당 교회의 최고 교회 당국에 의해 선출된다. 총회는 [장로교 선교부]의 추천과 총회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관계 위원회의 지명을 받아 그러한 초청을 발송한다.

6. 대응 회원

다음의 자들은 통신회원으로 한다:

- 이전 총회 의장들.
- 정기 서기, 부서기 및 보조 서기, 그리고 정기 서기가 지정한 [총회 사무국]의 기타 직원.
- [총회 사무국 위원회] 위원들;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조정 위원회] 위원들과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가 지정한 [장로교 선교위원회] 직원;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 의장(또는 공동의장) 및 해당 법인 이사회가 지정한 기타 인사.
- 헌법 자문 위원회 위원.
- 각 총회에서 지명하는 1인(일반적으로 사무총장 또는 상임 서기).
- 총회에 직접 보고하는 각 기관(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에서 지명하는 1인(추가 인원은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임 총회 의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가 인원을 지정할 수 있음).
- 미국장로교회(PCUSA) 여성회 의장 또는 그 지명자.
- 미국 장로교회 법인, 연금위원회, 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 장로교 재단, [장로교 선교 기관]의 집행부.

장로교 출판사, 미국 장로교회(U.S.A.) 소속 장로교 여성회, 그리고

- ❖ 미국장로교(PCUSA) 신학 기관 및 협약으로 연결된 신학교의 총장(또는 그 대리인).

대응 회원들은 규정에 따라 총회 및 총회 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이나 동의안 제출권은 없다.

7. 헌법 자문 위원회

총회 기간 중, 헌법 자문 위원회(ACC) 위원 3명 이상이 총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총회와 의장에게 헌법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8. 기타 참가자

a. 특별 게스트

총회는 존중, 예의, 인정 및 정보와 자료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른 인물을 특별 손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인사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회에 발언하도록 그들을 초청할 수 있다. 총회 위원회는 자체 회의에서 유사한 초청을 할 수 있다. 정기 서기는 주최 위원회와 협력하여 총회가 열리는 지역의 토착 관리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할 것을 초청해야 한다(상임 규칙 2.F 참조).

b. 에큐메니컬 대표

에큐메니컬 대표자는 다른 교회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해당 교회의 공식 대표자로 활동하는 개인이다. 정관 서기는 세계개혁교회연합 회원 교회들에게 총회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공지할 수 있다. 총회 소집 최소 45일 전에 적절한 교회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된 경우, 이들 인사는 총회의 손님으로 환영받으며 에큐메니즘을 담당하는 총회 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평의회에 소개된다.

c. 총회 산하 기관의 초청 인사

총회는 특정 에큐메니칼, 선교 또는 프로그램 관계 수립·확인을 목적으로, 또는 해당 기관의 특정 안건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총회 기관이 초청한 인사를 환영할 수 있다. 모든 경비 보상은 초청 기관의 책임이다.

d. 종교 간 대표자

다른 신앙이나 종교 전통을 가진 세 명의 관찰자, 즉 비기독교 종교 전통 및/또는 신앙 공동체의 공인된 종교 기관이 선정한 대표자들은 총회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관계 위원회의 초청으로 총회에 참석한다. 종교간 대표자들은 교회의 심의 과정에 동석하며, 인사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회에 발언할 수 있다.

e. 참관인

총회는 미국 장로교(PCUSA)의 공개 회의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공개 회의이다. 총회 업무에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은 자로서 현장 참석 또는 영상 기술을 통해 총회 업무를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9. 참가자 명단

총회 산하 기관, 협의회, 교단 교육 기관, 미국장로교회(PCUSA) 회원, 또는 주로 미국장로교회(PCUSA) 회원으로 구성된 독립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 서기는 총회 회의를 주최하기 위해 선택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총회 회기에 등록된 위임 대표 및 자문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참가자 경비

a. 위원 및 자문 대표

총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자문 대표의 여행 경비, 식비, 숙박비 및 기타 승인된 경비에 대한 승인된 보상은 총회 예산에서 지급된다. 대리 위원이 참석할 경우, 총회 예산에서 지급되는 두 사람의 총 경비는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단일 위원의 지급액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b. 종교 간 대표

총회는 위원들의 숙소 비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숙소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총회 장소까지의 여행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c. 에큐메니컬 대표

총회는 위임위원의 경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손님의 경비와 숙소를 부담할 수 있으나, 총회 장소까지의 여행 경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d. 협력자 자문 대표단

미국 장로교회(PC(USA))는 각 협력자 자문 대표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모든 교통비를 부담한다.

B. 총회 준비

1. 회의 일시, 장소 및 형식

총회 회의 계획은 참가자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신실한 분별과 통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립된다. 총회 준비는 교회의 포용성, 접근성, 청지기 정신, 그리고 참가자들의 신체적·영적 안녕에 대한 헌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 회의는 참가자들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디지털 회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또는 총회나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한 정관 서기가 승인한 경우 양자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총회 특정 회기의 날짜, 방식 및 장소(적절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기 소집 최소 두 회기 전까지 직전 총회에서 정한다. 총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5월 15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개최된다. 회의 날짜, 방식 또는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관 서기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날짜, 방식 또는 장소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

2. 대면 회의 장소 선정

총회 사무국장은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하여 총회 개최지로 적합한 장소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완전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된다.

가능한 한 회의 장소는 다양한 지리적 지역으로 순환하여 미국장로교회(U.S.A.) 전역의 구성원들이 총회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회가 특정 장소에서 소집될 경우, 서기(Stated Clerk)는 해당 지역 노회(presbytery) 또는 여러 노회와 총회(synod)의 지원을 구하여

지역적 표현을 총회 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전자 회의

일부 또는 모든 참가자가 디지털 회의 플랫폼을 통해 참여가 승인된 경우, 다음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a. 해당 기술은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회 질서서》*(Book of Order*) 및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b. 정기 총회 소집 최소 60일 전까지 서기(Stated Clerk)는 사용될 플랫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의 플랫폼 접속 방법.
- 정족수 확립 및 유지 보장 방법.
- 발언 요청, 동의안 제출 및 투표 방법.

c. 회의 소집 전에 서기는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기술 오리엔테이션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d. 전자 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각 총회 참가자는 자신의 오디오, 비디오 및 인터넷 연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참가자의 개별 연결 손실 또는 품질 저하로 인해 회의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e. 온라인 회의 서비스는 각 회의 시작 최소 15분 전부터 이용 가능해야 한다.

f.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모든 참가자가 필요한 기술 및 인터넷 접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4. 회의 준비

정관 서기는 총회 회의 준비를 감독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총회와 관련되거나 총회 기간에 예정된 공식 특별 행사, 공개 회의 및 전시회의 시간 및 장소 배정; 위원, 자문 대표 및 기타 공식 참가자들의 호텔 및 기타 숙소 배정
.

5. 행사 후원

총회 회기 전, 회기 중 또는 회기 직후에 개최되는 행사에 총회 참가자가 포함되는 경우, 후원자 또는 후원 기관은 해당 행사의 초청장이나 홍보물에 자신들의 신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6. 평화적 시위

평화적 시위는 총회 또는 그 위원회 회의장(디지털 공간 포함) 외부에서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회의장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C. 접근성 및 포용성

위원 및 자문 대표단은 대면 총회 기간 중 어느 부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어야 하며, 총회 모든 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와 필수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 및 자문 대표단은 총회 업무 참여에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 위원 및 자문 대표 중 회의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의 계획 수립 시, 모든 성별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접근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 법률, 지방 조례, 시설 이용 정책 또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을 조성하거나 LGBTQIA+ 개인이 안전하지 않거나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타 차별적인 지역 규칙 및 정책을 고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모든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조성에 최대한의 배려를 기울일 것입니다.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위원 또는 자문 대표가 보조원이 필요한 경우, 보조원 경비는 위원 경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며, 보조원은 위원과 함께 정식 서기(Stated Clerk)에 의해 등록됩니다.

직원, 지도부, 위원 및 자문 대표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인간 정체성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 대명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예배와 기도를 위한 언어는 삼위일체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D. 총회 지도부와 선거

1. 총회 의장단

a. 의장직

총회 의장은 미국 장로교(PCUSA) 총회의 직분자로서, 《교회 질서》(*Book of Order*) G-3.0104에 따라 임명됩니다.

중재자의 사역은 세례받은 자들의 사역과 치리 장로 및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들의 특별한 성직 사역에 기초합니다.

의장들은 총회 회기 말에 선출되어 평화의 유대 안에서 성령의 일치를 전하는 사절로서 교회의 삶을 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그들은 교회 생활 속 일치와 공동체, 사명의 유대를 상징하며 다음 총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 직분의 명칭은 "미국 장로교 총회 의장(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이다.

b. 협력적 섬김

총회 의장 직분은 두 명의 총회 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장들은 함께 직분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결정하며,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모습을 본보이고 교회의 폭넓은 다양성을 구현합니다.

c. 의장들의 사역

총회 의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총회 회의를 주재하며, 질서 유지와 총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총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총회규칙*, G-3.0104).
- 정기 서기와 협력하여 미국 장로교(PCUSA)의 대사 역할을 수행하며, 총회의 결정을 공유하고 교회의 가치와 약속을 수호한다.
- 정관 서기 및 주최 위원회와 협력하여, 그들이 진행할 총회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한다.
- 상임규칙 4.B.3에 따라 총회 위원회 지도부를 임명한다.
- 위원 및 자문 대표단 준비에 참여한다.
- 예배 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에큐메니컬 예배를 제외한 총회 예배 설교자 선정도 포함한다(상임규칙 2.A).
- 총회의 지시에 따라 특별 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한다(상임규칙 4.E.1).
- 직분상 그리고 본 규칙 및 선교 조직에 따라, 총회 운영 및 지도력을 제공하는 기구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미국 장로교(PCUSA)의 사명.

d. 총회장 후보자

1. 총회 의장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각 사람은 지명 시점에 총회 위원이여야 한다(*교회질서서*, G-

3.0104). 후보자는 직전 총회 폐회 시점 이후에야 노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의장직을 희망하는 위원은 총회 소집 최소 45일 전까지 정규 서기에게 출마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총회 사무국[및/또는 통합 후속 기관]은 의장 후보자들을 위한 자원 지원 및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e. 후보자를 위한 지침

1. 선거 과정을 통해 총회는 후보자들과 함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한다. 따라서 의장 후보자는 직위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한다.

2. 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은 개별 위원이나 자문 대표에게 직접 로비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후보자들은 신실한 청지기 정신과 의장 후보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물 기부금을 제외한 총 지출액은 2,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4. 각 후보자 쌍은 총회 소집 최소 1주일 전에 정식 서기에게 실제 및 예상 지출 내역서(후보자 자격과 관련된 여행비 및 회의비, 현물 기부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이 내역서는 총회 소집 전에 [총회 사무국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장 선거 전에 위원 및 자문 대의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5. 후보자들은 정규 서기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원 및 자문 대표들과 만나 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된다. 총회장 후보 관련 자료 배포는 이러한 행사로 제한된다.

6. 후보자는 총회 소집 최소 15일 전까지 정관 서기가 게시할 간행물에 포함될 정보를 정관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정보에는 후보자의 약력, 소명 의식 진술서, 교회 비전이 포함된다. 정관 서기는 후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간행물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한다.

f. 의장 선거

총회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위원회 활동 및 본회의 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장 후보자들의 선거는 폐회 예배 전 총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총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

1. 각 후보 그룹은 총회 위원이 추천한다. 추천 연설은 없으며 추천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2. 지명이 마감된 후, 각 후보 그룹은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 동안 총회에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되며, 추첨은 최근 총회에 참석한 의장이 진행합니다.

3. 모든 후보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그들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원래 발표에서 가장 먼저 발언한 후보자 그룹에게 주어지며, 동일한 질문이 이후 발언 순서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에게 차례로 제시된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순서에 따라 두 번째 후보 그룹에게, 그다음으로 나머지 후보들에게 동일한 순서로 제시됩니다. 이 절차는 후보 그룹 수에 15분을 곱한 시간 또는 1시간 중 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며, 총회 표결로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4. 의장 후보가 한 명뿐인 경우, 만장일치로 선출될 수 있다.

5.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있을 경우, 선거는 투표로 진행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들이 총회에 처음 발언한 순서대로 이름을 기재한다. 선출을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자들의 유효 투표 과반수가 필요하다.

6. 첫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총회는 두 번째 투표를 진행한다. 첫 투표에 명시된 모든 후보는 두 번째 투표에서도 후보자가 총회에 처음 발언한 순서대로 기재된다.

7. 제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는 제3차 투표를 진행한다. 제2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두 후보자(동률 포함)는 제1차 및 제2차 투표에서의 순서와 동일하게 제3차 투표에 포함된다. 추가 투표가 필요한 경우, 각 투표에는 이전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두 후보자(동률 포함)만 포함된다.

8. 각 투표 전 자문 대표단의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정관 서기는 새로 선출된 의장들을 위한 취임식을 주관한다. 이 취임식은 선거 직후에 진행되거나 총회 폐회 예배의 일부로 진행될 수 있다.

총회 폐회 예배의 일부로 진행될 수 있다. 직분의 상징물은 퇴임하는 의장단이 전달한다.

신임 의장단은 폐회 기도와 축도를 통해 총회 폐회 예배에 참여한다.

g. 공석

어떠한 사유로든 의장단이 총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경우, 정식 서기는 총회에서 선출된 전임 의장단원이 의장단 복귀 시까지 총회를 주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장직을 수행하는 자 중 한 명이 직위를 사임할 경우, 총회 *상임규칙과 질서서에* 규정된 모든 헌법적 기능은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잔여 의장이 수행한다.

모든 의장 직무 수행자가 직위를 사임할 경우, 정규 서기는 이전에 선출된 총회 의장 중 한 명이 의장을 맡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첫 번째 의제는 의장 선출이 된다.

2. 총회 상임 서기

a. 정기 서기의 직위와 직함

총회 서기는 미국 장로교(U.S.A.)의 상임 교회 직분자이자 교제 공동체의 수장으로, 교회의 삶과 증언을 위한 헌법적·영적 지도력을 제공하며 위기 시 교회의 문제에 대해 목회적 권위를 행사한다. 정기 서기의 직함은 "미국 장로교(PCUSA) 총회 정기 서기"이며,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현직자가 사용할 수 있다.

b. 정기 서기의 직무

정기 서기는 총회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 및 총회에서 발생하거나 총회와 관련된 기타 모든 사항(다른 담당자에게 배정되지 않은 사항)을 책임진다. 전체 직무/책임 목록은 *'선교를 위한 조직'에* 명시되어 있다.

교회질서서(*Book of Order*) G-3.0104, G-6.02, G-6.04에 명시된 책임 외에도, 정규 서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모더레이터들과 협력하여 미국장로교(PCUSA)의 대사 역할을 수행하며, 총회 결의 사항을 대변하고 교회의 가치와 약속을 수호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랑과 평화의 유대를 드러낸다.

- 의장 후보자 선정 및 선거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총회 운영 기관 및 관련 총회 기관과 협의하여 각 총회 위원회의 수와 명칭을 결정한다.
- 위원 및 자문 대표단 준비에 참여한다.
- 총회에 정회원으로 참석할 직원 명단을 작성합니다.
- 의회가 해당 사안에 관여하는 위원회, 기관 및 기타 관계 기관에 그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의회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 노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은 총회 결의 사항을 모두 노회에 송부한다.
- 총회 회의록의 발간을 지시한다.
- 총회 중 에큐메니컬 예배를 위한 설교자를 선정한다.

c. 정기 서기 선출

총회 상임 서기는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추가 4년 임기로 재선될 수 있다.

[총회 사무국 위원회] 위원 또는 이 절차에 참여하는 인사로서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또는 위원회에 직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정규 서기로 지명될 수 없다. 현직 정규 서기는 이 상임 규정에 명시된 선거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총회 선거 기간 동안, 의장단은 임시 정규 서기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 사무국] 직원이 될 수 있다.

d. 정기 서기 지명 위원회 선거

정기 서기 임기 종료 전에 소집되는 총회는 정기 서기 후보 추천 위원회를 선출한다. 총회 대표 위원회와 협의한 후, 총회 후보 추천 위원회는 정기 서기 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정기 서기 후보 추천 위원회는 최소 5명에서 최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신규 통치 기구] 대표 2명(이 중 1명은 위원회 의장을 맡음)
- 선출 당시 중간 평의회 서기로 재직 중인 자 최소 1명.
- 최근 3회 총회 중 하나에서 미국 장로교(PCUSA) 회원으로 선출된 위원 및/또는 자문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최소 절반을 차지해야 합니다.
- [신규 통치 기관]을 대표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현장 추천이 허용된다. 현장 추천으로 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는

위원회에 대한 본회의장 내 후보 추천은 총회 추천위원회의 특정 후보 추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위원회 추천 후보와 동일한 범주에 속해야 한다.

e. [신규 거버넌스 기구]는 다음을 수행한다:

- 지명위원회에 최신 직무 설명서를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 [신설된 거버넌스 기구] 내에서 후보자 추천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고, 정관 서기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위한 직원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 정기 서기 임기 말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 결과는 정기 서기 지명 위원회와 공유해야 한다.

f. 정관 서기 지명 위원회 절차

정기 서기 지명 위원회는 정기 서기를 선출할 총회 시작 최소 1년 전에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원자에게 요구할 서류와 지원 접수 절차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추가 임기를 희망하는 현직자를 포함한 모든 관심 있는 자는 총회 개시 180일 전까지 정규 서기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기 서기 후보 추천 위원회는 총회 개회 60일 전까지 후보자를 발표해야 한다.

정기 서기 후보 추천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정기 서기 후보자를 추천하는 총회 회기 종료 시 해산된다.

g. 정기 서기 후보자

정기 서기 직위에 지원한 자 중 위원회의 후보자가 아닌 현직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후보자와 경쟁하기를 원하는 자는 총회 개회 45일 전까지 정기 서기 후보 추천위원회에 그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정기 서기 후보 추천위원회에 완전한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정기 서기로 추천될 수 없다.

총회 개회 전에 [신설 기관]은 정규 서기로 출마하는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총회 개회 최소 3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후보자의 약력 및 해당 직분에 대한 소명 의사를 밝힌 개인 진술서.
- 교회 현안에 기반하여 정규 서기 후보 추천위원회가 작성한 설문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와 그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인쇄물이나 전자 매체를 포함한 어떠한 다른 자료도 배포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전단지, 단추, 기념품 또는 서기 직 선거 운동을 암시하는 기타 물품이 포함됩니다.

각 후보자는 선거 전에 위원 및 자문 대의원들과 만나 대화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h. 선거 절차

총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규 서기를 선출한다:

1. 총회가 본회의로 소집된 후 48시간 이내에, 총회는 정규 서기 지명 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한다.

    a. 위원회는 단일 후보자를 지명하고,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연설을 해야 한다.

    b. 사회자는 이후 후보자 추천 절차를 완료한 자들에 대한 추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며, 각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연설은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추가 후보 추천이 없을 경우, 선거는 즉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정기 서기 후보자는 정기 서기 직분에 대한 소명 의식을 최대 5분간 총회에 발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b. 사회자는 위원들에게 정규 서기 추천위원회에 질문할 기회를 최대 15분 동안 부여한다.

    c. 의장은 위원들에게 정규 서기 후보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최대 15분간 부여한 후, 투표를 실시한다.

3. 다른 후보가 있을 경우,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정기 서기 선거는 총회 회기 마지막 날 전날 첫 번째 안건으로 진행된다.

    b. 각 후보자는 정규 서기 직분에 대한 소명 의식을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 동안 총회에 발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후보자들은 추천 연설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발언한다.

c. 의장은 위원들에게 정규 서기 후보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부여한다.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로 추천된 후보자에게 제기되며, 동일한 질문이 추천 순서대로 다른 후보자들에게 차례로 제기된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순서에 따라 두 번째 후보자에게, 그다음으로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차례로 제시된다. 이 절차는 후보자 수에 15분을 곱한 시간 또는 1시간 중 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며, 총회 표결로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이후 투표가 실시된다.

d. 선거는 비밀 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순서대로 기재한다. 당선에는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

두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총회는 세 번째 투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두 후보(동률 포함)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투표에서의 순서와 동일하게 세 번째 투표용지에 기재된다. 추가 투표가 필요한 경우, 각 투표용지에는 이전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두 후보(동률 포함)만 기재된다.

i. 취임

신임 정규 서기는 선출된 총회 회기 마지막 회의에서 취임한다. 퇴임하는 정규 서기와 신임 정규 서기는 선출된 총회 폐회 후 최대 90일간 퇴임하는 정규 서기 및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를 중복 수행할 수 있다.

j. 공석 발생

정기 서기 직이 공석이 될 경우, [총회 사무위원회]는 정기 서기가 직무를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총회가 새로운 정기 서기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대행 정기 서기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부정기 서기

부정기 서기는 정기 서기를 대신하여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치리 장로 또는 교역 장로이다. 총회는 총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부정기 서기를 선출할 수 있다. 정기 서기는 [총회 사무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직위를 채울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임기는 4년이며, 총회의 재선임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4부

신실한 분별과 총회 통치(Governance)

A. 총회(Assembly)에 상정된 안건

전체 교회의 평의회로서 총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 증거를 이끌고 인도합니다. 총회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히 노회와 총회가 제출한 사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교회질서서*, G-3.0302d).

총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은 *교회질서서* G-3.0501에 명시되어 있으며, 총회에서 심의하는 모든 업무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 안건은 제안된 조치 및/또는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조치를 수행할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총회의 분별을 뒷받침할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검토될 수 있는 모든 안건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 의 업무 출처

총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업무를 접수한다:

- 노회 및 총회로부터의 청원서(*교회질서서* G-3.0302d 조항에 따라)
- 총회가 설립하거나 총회에 책임을 지는 기관들의 보고서.
- 총회 행정 검토를 위한 노회 회의록(*교회법규* G-3.0108a 및 G-3.0502c 조항에 따라).
- 총회에 제출된 위원들의 결의안.

2. 마감일

총회의 분별을 위한 자료 편찬 및 번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총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다음 마감일 일정에 따라 정규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a. 총회 소집 최소 120일 전까지, 헌법적 함의를 지닌 모든 안건(제안서 포함), 모든 보고서(기관 및 총회 회의록 제외), 그리고 총회의 해석이 필요한 모든 질문을 제출해야 한다(*교회질서서*, G-6.02).

b. 총회 소집 60일 전까지, 기타 모든 청원안 및 헌법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c. 총회 소집 45일 전까지, 검토를 위한 모든 의견, 동의서, 기관 및 총회 회의록.

d. 총회 소집 30일 전까지, 총회에서 선출되는 직위에 대한 모든 후보자 추천서.

e. 총회 소집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위원들의 결의안.

정관 서기는 교회의 분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예정된 마감일 이후에도 업무 항목을 접수할 재량권을 가진다.

3. 번역 우선순위

총회 업무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관 서기는 모든 권고안 항목의 전문과 헌법 개정 사유 및 의견에 대한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정관 서기는 또한 총회 업무의 다른 부분에 대한 번역을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기타 안건에 대한 근거 설명;
- 기타 의견; 및
- 기타 참고 자료.

정관 서기는 완료된 번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 심의를 위해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는 단체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업무 편집 및 명확화

정관 서기는 명확화를 목적으로 제출된 모든 업무 항목에 대해 필요한 편집 권한을 가집니다. 총회 조치에 특정 부서나 하위 기관이 명시된 경우, 정관 서기는 해당 조치가 총회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관을 명시하도록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5. 제안안(Overtures)

제안안은 노회 또는 총회에서 승인된 안건으로, 총회에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성명서 또는 결의안을 승인 또는 지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교회질서서*, G-3.0302d). 제안에 제출된 권고안, 근거 및 참고 자료는 일반적으로 1,50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관 서기가 제안된 개회 동의안이 다른 노회가 이미 제안한 내용과 동일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동의안으로 간주된다.

노회 또는 총회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 노회] 노회는 _____ [미국장로교(PC(USA))] [총회 번호]차 총회 [(연도)]에 [총회가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조치 명시]를 청원합니다."

제안된 조치에 대한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의안 작성자는 정관 서기 및 기타 기관과 협의하여 유사한 의안이 이미 검토되었는지 여부와 의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노회 또는 총회는 정관 서기가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다른 노회 또는 총회의 제안에 동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오버추어) 옹호자들

각 의회는 안건으로 접수된 개회안을 제출할 경우, 해당 개회안이 회부될 수 있는 총회 위원회에 개회안의 배경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개회안 대변인 1명을 임명할 수 있다(상임규칙 4.B.12).

7. 기관, 위원회 및 총회 위원회( )의 보고서

총회 산하 기관들은 다음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 ❖ 해당 기관의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설명.
- ❖ 이전 총회에서 회부된 사항에 대한 응답.
- ❖ 조치를 제안하는 사항(업무 수행 근거 포함).
- ❖ 정보 제공 목적으로 총회에 공유된 사항.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교회의 상호 연결된 특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행 권고 사항은 해당 기관이 어떻게 업무를 조정하고 교회 총회 및 평의회의 다른 기관들과 협의해 왔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총회 산하 기관의 보고서는 5,0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보고서 유형

기관들은 선교 조직 및 이전 총회 결의에 따라 다음 유형의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a.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기관 보고서는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 이름]은 미국장로교(PC(USA))의 [총회 번호] [연도] 총회에 [총회가 취할 것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조치 또는 조치들을 명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 사유를 명시하는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b. 기관 회의록: 총회는 지난 2개 연도 동안의 총회 산하 기관 회의록을 검토한다. 해당 회의록은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사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총회 운영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검토된다.

c. 정보 제공 보고서: 기관은 제안된 조치에 대한 권고 없이 총회 정보 제공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자원 자료

자원 자료(기존 출판된 서적 제외)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작성할 수 있다. 자원 자료는 기관의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회부된 각 안건당 1,000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 총회 회의록 자료

총회는 총회 운영 지침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난 2개 연도의 총회 회의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위원 결의안( )

위원 결의안은 총회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한 사안을 다루는 안건이다. 최소 두 노회를 대표하는 위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한 위원은 두 건 이상의 위원 결의안을 추천할 수 없다.

a. 위원 결의안은 근거 설명을 포함하여 75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b. 결의안 작성 시, 위원들은 자신의 제안과 관련된 기존 총회 정책을 인지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정책을 참조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c. 위원 결의안은 헌법(*교회질서서, G-6.04a)*의 개정 또는 해석을 요구하거나 상임규칙의 개정을 제안하는 안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2. 의견

총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서면 의견은 다음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총회 산하 기관
- ❖ 장로교 여성회
- ❖ 미국장로교회(PCUSA)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들; 그리고
- ❖ 총회와 서신을 주고받는 타 교단

이러한 의견은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안건을 포함하거나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조언 및 상담 메모( )

조언 및 자문 메모는 사회증언정책자문위원회, 인종평등옹호위원회, 여성 및 성평등옹호위원회, LGBTQIA+ 평등옹호위원회가 총회 위원들이 총회 안건을 검토할 때 유용한 기존 정책, 특정 주제에 대한 현재 작업, 최근 동향 및 기타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14. 헌법 자문위원회 보고서

헌법 자문위원회는 *교회법규집* G-6.02 및 G-6.04에 따라 회부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해당 안건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15. 재정적 영향

제안된 각 안건의 재정적 영향은 해당 총회 기관의 직원이 계산하여 총회 위원회 및/또는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B. 총회 재정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총회 업무는 일반적으로 초기 검토 및 조치 권고를 위해 총회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원회 위원과 자문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보고서를 접수하고, 업무에 참여하며, 근거를 검토하고, 전체 총회의 심의를 위한 조치 항목을 준비하기 위해 신실한 분별을 통해 협력합니다.

2. 위원회 구성 구조 승인

정관 서기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하여 총회 위원회의 수와 업무 범위를 정한다.

3. 총회 위원회 의장단

총회 의장단은 각 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한다. 총회 위원회 의장직은 차기 총회 위원이거나 지난 3회 총회 위원이 맡는다.

위원회 의장 선출 시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총회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자 중 최소 절반은 치리 장로여야 한다.
- 위원회 의장단의 구성은 모든 성별 정체성을 공정하게 대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자 중 최소 3분의 2는 현직 위원이어야 한다. 각 위원회에는 현 총회 위원이 의장으로 최소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어느 한 노회에서도 한 명 이상의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 각 총회가 위원회 의장단에서 대표성을 갖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총회 사무국 위원회] 및 총회 대표 위원회 대표들과의 협의 후 임명해야 한다.

4. 오리엔테이션

총회 서기는 총회 소집 최소 3주 전에 총회 위원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총회 위원회 위원 배정 절차

총회 위원회 위원을 배정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절차는 해당 배정이 이루어지는 총회 회기 소집 최소 180일 전까지 공표되어야 한다. 총회 소집 최소 45일 전까지, 정규 서기는 해당 절차를 활용한 무작위 선정 과정을 통해 각 위원 및 자문 대표를 총회 위원회 중 하나에 배정하고, 배정 명단을 총회 참가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총회 서기가 개발한 위원회 배정 절차는 다음을 보장한다:

- 각 위원회의 구성은 교회의 지리적 다양성을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어느 노회에서도 특정 위원회에 한 명의 위원이거나 자문 대표만 참여하도록 한다.
- *교회 질서서* F-1.0403에 명시된 인원 범주는 공평하게 배분됩니다.
- 각 위원회에는 치리 장로와 교역 장로 위원이 동수로 포함된다.

- 청년 자문 대표단과 신학대학생 자문 대표단은 위원회 간 균등하게 배분된다.
- 파트너 자문 대의원은 해당 대의원들과 협의하여 총회 위원회에 배정된다.

6. 의 업무 회부

정기 서기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하여 총회 소집 전에 제출된 모든 안건을 총회 업무 회부 위원회에 회부할 준비를 한다.

7. 총회 업무 회부 위원회

의회 위원회의 의장은 의회 업무 이송 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해당 위원회는 의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 의장이 주관한다. 본 위원회는 의회 업무 처리를 위한 총회 첫 회의에서 의회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의안 회부 위원회는 또한 필요 시 총회 소집 직전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 기능은 총회가 개회되면 종료된다.

8. 업무 회부 방식

총회에서 심의할 업무 항목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회부된다:

- 총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정을 권고하기 위한 경우;
- 총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사항; 또는
- 회부 거절.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은 일반적으로 단일 총회 위원회에서만 심의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한 안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관련성 있는 안건은 가능한 한 단일 위원회에 배정되어야 한다.

9. 임시 총회 사무국 안건 목록

정관 서기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 목록을 총회 업무 회부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위원회는 총회 첫 번째 업무 회의에 안건 목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제출한다.

10. 위원회 업무 배정 지원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적절한 지원 인력이 배정되며, 필요 시 위원회 운영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관 서기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 및 필요한 경우 다른 총회 기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를 결정하고 해당 인원을 배정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지원 인원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 관점을 옹호하며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업무에서 이해 상충의 외관을 피해야 합니다. 임명은 *교회* 운영 *규정* F-1.0403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위원회 보조원

각 위원회에는 위원회 보조원이 배치되어 위원회 의장단에게 행정 및 절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원회 운영팀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추천 대상자는 총회 위원이 아니어야 하며, 총회 산하 기관의 직원 또는 선출직 구성원도 제외된다.

12. 총회 위원회 회의 절차

a. 총회 위원회 회의는 공간이 허용하는 한 공개로 진행되나, 위원회는 총회 공개회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할 수 있다.

b. 각 총회 위원회는 초기 최대 두 차례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 내 상호작용 역학 관계 형성 및 위원회 절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의에서는 어떠한 안건도 논의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회의는 총회 개회 전에 예정될 수 있다.

c. 위원회의 각 회의에는 예배 시간과 기도할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d. 위원회 회의는 미국 장로교(PCUSA)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된 로버트 의사진행규칙(RONR)*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규모가 너무 커서 본격적인 총회 방식으로 운영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면, *RONR* 49:21에 명시된 소규모 위원회를 위한 의회 절차 규칙의 비공식적 적용 및 수정 사항이 해당 위원회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e. 각 위원회는 제공된 자료나 자문 인력의 활용 방식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각 총회 위원회의 지도부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특정 자료 배포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f. 총회 위원회가 이전 총회에서 임명된 특별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할 때는 최소 30분 이상을 할애하여 보고를 접수해야 한다.

g. 위원회 심의 중에는 공개 청문회와 달리 다음의 사람들만 의장이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
- 위원회 지원 인원
- 위원회 결의안의 발의자 및 서명자
- 특별위원회 및 위원회 보고서 발표자를 포함한 총회 해당 위원회 위원
-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 총회 산하 기관의 선출된 구성원 또는 직원 포함
- 헌법 자문 위원회 대표
- 위원회 다수결로 초청된 인사.

위원회 사회자는 특별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보고를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 이외의 인사가 권고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진술하는 데 할당된 총 시간이 가능한 한 동일하도록 한다.

위원회 위원 이외의 개인이 특정 관점을 옹호하여 위원회에 발언한 경우, 위원회 사회자는 위원회에 다른 관점을 옹호하는 다른 개인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h. 개회 동의안 지지자 또는 위원회 결의안 서명자 중 한 명은 해당 동의안 또는 결의안이 심의될 때, 사전 협의된 발표 형식으로 단독 또는 다른 지지자들과 협력하여 동의안 또는 결의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발언할 권한을 가진다.

i. 자원 인사는 총회 위원회의 판단에 특별한 지식 및/또는 전문성을 제공한다. 총회 기관의 직원, 선출된 구성원 또는 기타 임명자로서, 그들은 특정 안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의해 임명된다. 발언 시, 이러한 인사는 자신의 역할과 총회 기관 중 어느 곳에서든 자신이 맡고 있거나 선출된 기타 모든 역할을 완전히 밝혀야 한다.

j. 의결 사항이 총회 산하 기관의 예산, 사명 우선순위 또는 조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는 적절한 시기에 해당 의결 사항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13. 신규 총회 업무

각 총회 위원회는 총회가 회부한 사항만을 심의한다. 특정 총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총회 위원회도 새로운 안건을 제기할 수 없다.

총회 위원회에서 발의된 새 안건 중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총회의 헌법 해석을 요구하거나, 헌법적 함의를 지닌 사항(교회운영규칙 G-6.04b 및 G-6.02조)은 헌법 자문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의 과정의 일환으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규 안건에 관한 총회 보고 및 권고안은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한 위원회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14. 공개 청문회( )

a. 일정

법안 및 청원 총회 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제출된 위원 결의안을 포함하여, 위원회 심의 대상 사안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마련해야 한다. 공개 청문회는 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다른 경로가 없는 사람들(장로교인이 아닌 사람 포함)이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상임 규칙 4.B.12에 따라 위원회에 발언할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공개 청문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 발언할 자격이 없다.

b. 등록

정기 총회 서기는 총회 첫 회의 30일 전까지 공개 청문회에서 발언을 원하는 자가 발언 등록을 하는 방법과 등록 마감일을 공고해야 한다. 해당자는 발언하고자 하는 안건 항목과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명시해야 한다.

c. 시간 제한

위원회는 공청회 중 개인의 발언 시간 및 해당 공청회에 할당된 총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공청회에 할당된 시간이 발언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지도부는 해당 사안의 양측에서 동등한 수의 발언자를 허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발언권을 거부당한 사람은 발언자 선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15. 총회 법안 및 청원 위원회( )

총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는 총회 소집 후 총회의 분별 과정을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이 위원회는 총회 의장이 임명한 두 명의 공동 의장과 각 총회 위원회에서 선출된 치리 장로 위원이 한 명, 교역 장로 위원이 한 명, 청년 자문 대표 두 명, 신학대학생 자문 대표 한 명으로 구성된다. 각 총회 위원회에서 총회 법안 및 건의안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총회 소집 45일 전까지 각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위원은 선정을 거절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문 대표도 유사한 무작위 선정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a. 의안 회부 책임

총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는 총회가 개회된 후 정식 서기에게 제출된 모든 안건을 회부할 책임이 있다. 제출된 새로운 안건이 총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과 실질적으로 중복될 경우, 해당 안건을 총회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안이 기존 사회 증언 정책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경우, 정관 서기는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차기 총회로 회부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검토할 총회 위원회를 결정합니다.

b. 위원회 간 조정

본 위원회는 다른 총회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안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한 안건이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동시에 검토될 경우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권고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해당 위원회 의장들에게 조언해야 한다.

c. 조정 의제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총회 일정을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총회 참가자에게 배포할 자료 요청이나 일정에 추가될 행사에 대한 요청을 검토한다. 본회의에서 총회의 시간 사용을 감독하며, 업무를 적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토론 시간 제한에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이 업무에서, 총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일 의제를 포함한 다른 모든 안건보다 우선한다.

d. 회의록 검토, 이의 및 항의

총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는 총회 회기 중 및 휴회 직후 총회 회의록을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이 제출한 이의 또는 항의 사항을 검토하며, 총회 *절차서(Book of Order)* G-3.0105b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를 회의록에 포함시킵니다. 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따라, 위원회에 배정된 자문 대의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습니다.

e. 자격 증명 및 윤리적 행동

총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는 총회 위임위원 및 자문위원 윤리 기준에 따라 지시된 바를 수행하거나, 위임위원, 자문위원 또는 기타 총회 참가자의 자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위원회가 총회를 대표하여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에 배정된 자문위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16. 년 총회 위원회 보고서

각 총회 위원회의 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총회의 조치 권고사항을 포함하며,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위원회 표결 기록을 수록한다. 보고서는 본회의 동의 안건(상임규칙 4.C.7)에 포함된 안건과 본회의에서 상정 시 처리 예정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총회에 제출된 초기 예산을 초과하는 총회 기관에 대한 재정적 영향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위원회 지도부와 의장이 지정한 기타 인원이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a. 소수 의견서

총회 위원회 위원 중 최소 두 명은 위원회 권고안과 상이한 견해를 담은 서면 소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의장이 소수 보고서에 명시된 총회 행동 권고 사항이 해당 사안 심의 과정에서 전체 위원회에 제시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서기장은 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이를 총회에 배포한다. 소수 보고서는 대체 동의안으로 심의될 수 있어야 한다.

C. 총회 본회의

1. 위원 및 자문 대표 등록

총회 개회 시 서기는 위원 및 자문 대표를 등록하고, 위원 및 대표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만 사항은 총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에 회부된다.

2. 위원 및 자문 대표( )의 좌석 배정 및 출입

총회가 대면으로 개최될 경우, 정관 서기는 회의 전에 위원 및 자문 대표의 좌석 배치를 결정한다. 중간 평의회 집행 직원 및 정관 서기, 에큐메니컬 대표, 연락 회원들을 위한 좌석도 지정되어야 한다.

본회의 진행 중 위원 및 자문 대표석 출입이 허용되는 자는 위원, 자문 대표, 정규 서기, 부서기 및 보조 서기, 그리고 해당 구역 출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인원으로 한정된다. 정규 서기는 위원/자문 대표석 출입이 허가된 특정 직원 및 총회 보조원에게 특별 출입증을 발급한다. 등록된 중간 평의회 지도자들은 업무 휴식 시간 동안 소속 위원 및 자문 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좌석 구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100명의 위원으로 하며, 이 중 50명은 치리장로, 50명은 교역장로로 구성되어야 하며, 총회 소속 노회의 최소 4분의 1을 대표하는 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교회질서서*, G-3.0503). 정족수 충족 여부는 회의 시작 시 투표 시스템에 로그인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정족수의 지속적 유지는 참여 회원 수로 판단할 수 있다.

4. 토론과 신앙적 분별(Discernment)

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한 사람은 3분을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에서, 발언권을 요청한 다른 모든 위원이 발언할 기회를 얻기 전에는 어떤 위원이든 두 번째 발언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토론에 대한 추가 제한은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될 수 있다. 상임 규칙에 명시되거나 총회에서 승인된 이러한 토론 제한 또는 기타 제한은 자문위원 및 통신회원을 포함하여 의장이 어떤 목적으로든 발언권을 부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다만, 자문위원은 위원 또는 대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헌법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이전 질문 의 동의안

하나 이상의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이전 질문 동의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6. 투표

총회는 일반적으로 전자 투표로 안건을 결정한다. 의장은 만장일치 동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7. 본회의 동의 안건

헌법 개정 또는 해석이 필요한 모든 안건은 총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단, 총회 위원회가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불승인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승인 권고안을 총회 동의 안건에 상정할 수 있다. 총회 위원회가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 기타 모든 안건은 위원회 회의 직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하기 위해 총회 동의 안건에 상정해야 한다.

총회 위원회의 모든 동의 안건 외에도 다음 사항들은 본회의 동의 안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 총회 지명 위원회에서 제출한 이의가 없는 모든 지명안.
- 총회 매뉴얼에 따라 총회 승인이 필요한 직위에 대한 총회 기관 및 단체의 만장일치 추천 승인 건.

어떤 위원이라도 본회의 동의 안건에서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의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관 서기는 위원들이 본회의 동의 안건에서 제외하려는 항목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8. 의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 )

의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상임 규칙 4.B.15)는 각 회의 시작 시, 지난 보고 이후 완료된 업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9. 총회 위원회 보고서

의회 위원회 보고서(상임 규칙 4.B.16)는 일반적으로 해당 보고서가 심의될 회의 직전 회의 종료 시까지 공개되어야 한다.

의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는 정관 서기와 협의하여 위원회 보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하며, 이에는 토론 및 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 보고에 배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의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는 보고 검토 완료를 위한 추가 시간에 대해 해당 위원회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 사회자는 최소한의 의견만 제시하며 권고안 승인을 진행해야 하며, 위원들이 제공한 자료의 내용을 낭독해서는 안 된다.

각 권고안이 이전에 승인되었거나 검토 중인 예산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총회에서 해당 권고안을 검토할 때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총회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직원 및 선출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노력 또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10. 대체 동의안( )

본 상임 규칙의 목적상, 대체 동의안은 본 동의안을 대체하며 본 동의안의 권고사항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체 동의안은 본 동의안이 먼저 제출된 후에만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체 동의안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총회는 먼저 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한다.

b. 본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가 완료되면, 총회는 대체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한다.

c. 본안과 대체안에 대한 수정안이 모두 처리되면, 총회의 표결 안건은 "대체안을 본안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안건에 대한 첫 번째 대체 동의안 심의 후 추가 대체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새 본 동의안에서 이미 수정된 부분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소수 보고(상임 규칙 4.B.16)는 총회 위원회에서 제출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체 동의안으로 취급됩니다. 위원회의 권고안과 소수 보고의 초기 발표는 가능한 한 동일한 길이로 조정되어야 하며, 수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11. 헌법적 문제

총회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토론 중 제기된 헌법 관련 질문은 본회의에 참석한 헌법 자문위원회(ACC)에 회부한다. ACC가 즉각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총회에 조언할 준비가 될 때까지 계류 중인 동의안을 연기하자는 동의안을 접수할 수 있다.

12. 집행 회의

총회는 총회 공개회의 정책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전환할 수 있다. 비공개 회의 중 잔류가 허용된 모든 사람은 위원들에게 요구되는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3. 예산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총회 위원회 회의 이후 업무 처리를 위한 총회 첫 회의에서, 총회는 인당 예산을 검토한 위원회로부터 해당 예산에 관한 보고를 청취해야 한다.

총회 기간 내내 인두세 예산에 대한 최신 정보는 위원 및 자문 대표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총회 마지막 날에는 총회에서 채택된 조치들의 재정적 영향을 반영한 1인당 예산 수정안이 총회에 제출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총회가 신규 조치들의 예상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승인할 경우, 모든 신규 항목은 수정된 1인당 예산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14. 총회 후보추천위원회( )

총회 지명 위원회는 총회 각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총회 산하 기관의 기존 공석에 대한 선거 후보자가 포함된다.

a. 현장 추천

위원들의 추천은 해당 공석이 다른 출처의 추천으로 채워져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 추천을 하는 위원은 총회 소집 후 48시간 이내에 정식 서기에게 추천 대상자의 관련 정보와 채워질 특정 직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될 경우 위원회 추천자의 이름도 포함한다. 정기 서기는 본회의장에서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기 최소 24시간 전에 이 정보를 총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회의장에서 지명이 있을 경우,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총회는 한 번에 한 직책에 대해 복수의 후보자를 다룬다.

2. 총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의 이름은 위원장이 후보로 제시한다. 총회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을 지명하여 해당 후보의 이름을 후보로 제시하도록 한다. 찬성 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3. 후보자가 지명된 후 발언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첫째, 위원 또는 지명된 대리인이 본회의 후보자를 대표하여 발언한다.

    b. 둘째, 총회 지명위원회 위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해당 후보자에 대해 발언한다.

4. 각 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추가 토론이나 논쟁 없이 총회는 투표로 넘어갈 것입니다.

15. 특별 인사말( )

에큐메니컬 파트너의 교제 수장 또는 다른 종교 전통의 동등한 지도자가 참석할 경우, 의장과 상임 서기는 적절한 시기에 각 지도자에게 총회에 인사말을 전할 수 있도록 최대 3분까지 발언 시간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16. 에 관한 사전 공지

개정된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에 따라, 어떠한 동의안에 대한 사전 통지가 요구될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의제 제안서에 포함된 서면 통지;
- 정관 서기(Stated Clerk)가 지정한 절차를 통한 전자 통지 제출; 또는 의장의 인정을 받은 후 본회의에서 구두로 진술하는 방법.

D. 총회 특별회의

교회법규(Book of Order)는 총회 특별회의 소집을 허용합니다(*교회법규*, G-3.0503). 특별회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소집되어야 하며, 다음 정기 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가장 긴급한 사안만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1. 특별 총회 소집

특별회의는 정해진 수의 위원들이 결의안 전문을 첨부한 청원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소집된다.

특별회의 소집 결의안과 그 안건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제 사항은 총회의 책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결의안은 제안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해당 조치 제안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 단순한 토론 목적으로는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
- 해당 사안은 하루나 이틀 간의 회의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 결의안 전문은 서명된 청원서 각 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정관 서기는 소집 회의 기준 충족 여부 또는 제안된 결의안의 구체적 조치와 관련된 모든 질문을 결정하기 위해 의장단 및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헌법 해석을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결의안은 《*교회 질서서*》(*Book of Order*) G-6.02에 명시된 120일 요건이 적용된다. 120일 요건은 의장이 청원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의장은 해당 결의안이 헌법 해석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헌법 자문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2. 서명 확인

교회 질서서 G-3.0503조에 따라, 특별 총회 소집 청원은 총회 직전 정기 총회에 참석한 치리 장로 위원의 4분의 1 이상과 교역 장로 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들은 최소 5개 총회 관할 아래 있는 15개 이상의 노회를 대표해야 한다.

청원서 접수 후 정규 서기는 30일 이내에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청원서에 서명한 각 개인의 현재 미국장로교회(PCUSA) 회원 자격을 확인한다.
- 청원서에 서명한 각 서명자에게 청원서의 서명을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위원장이 결의안에 명시된 요청 목적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 절차 중 위원은 서기에게 통지함으로써 청원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모든 합리적인 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답변하지 않은 위원의 이름은 청원서에서 삭제된다.
- 정기 서기는 확인 절차 결과를 의장단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준비 및 공표 통지

총회 서기장이 해당 청원이 총회 *규정집* 및 총회 상임규칙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증하면, 의장단은 총회 소집 결정을 [총회 사무국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 사무위원회]는 총회가 회기 중이지 않을 때 총회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정할 책임이 있다.

[COGA]는 회의 방식 또는 장소 설정 및 날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별 회의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회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최되어야 한다.

[COGA]는 소집된 회의에 그 경비 지불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특별회의의 안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소집된 회의의 통지는 회의 시작 최소 60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발송됩니다.

E. 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특별행정심사위원회

1.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총회는 기존 기관이 수행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거나 총회에 권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및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교회질서서,* G-3.0109). 특별위원회 및 위원회는 특별한 초점을 가지며, 설립 필요성을 결정할 때 신중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 특별위원회는 총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연구하고 조치를 권고하거나 해당 결정을 수행한다. 향후 총회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권고 사항은 해당 시점에 조치를 요한다.

b. 위원회는 총회가 회부한 사안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위원회 설립 결의안에는 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해당 권한에 대한 제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총회가 특별위원회 또는 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때, 총회 서기는 해당 특별위원회에 배정될 업무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해당 총회 산하 기관(들)에 배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총회 산하 기관(들)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총회 서기는 또한

[총회 사무국 위원회], 총회 대표 위원회, 그리고 해당 제안을 검토 중인 총회 위원회와도 협의해야 한다. 총회 서기는 이 협의 내용에 대해 해당 제안을 검토 중인 총회 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 위원회 또는 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총회에 의견, 지침 또는 대안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재정적 영향은 총회에 제출되는 모든 권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될 때, 해당 위원회의 의장은 총회의 대응 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다른 위원 한 명과 동행하여 총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발표하고 설명할 수 있다.

정관 서기는 특별 위원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직원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 위원회 및 위원회 업무를 위한 자금은 위원회 설립 조치에 다른 출처가 명시되지 않는 한 인당 분담금에서 조달된다.

2. 중간 총회 위원회 행정 위원회

중간 평의회에 관한 총회 행정 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총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노회가 노회 또는 노회의 일부를 조직,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를 승인"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G-3.0502e) 및 노회의 최소 구성 요건에 대한 예외 승인(G-3.0301)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으로 추가 4년 연임이 가능하다.

3. 년 총회에 대한 특별 행정 검토

총회는 노회에 대한 특별 행정 심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교회질서서*, G-3.0502b 및 G-3.0108b). 총회가 이러한 심사를 검토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a. 노회 또는 총회의 제안에 따라 (*교회질서서*, G-3.0302d; G-3.0402; 상임규칙 4.A.5).

b. 총회 산하 기관의 요청에 의해 (상임규칙 4.A.7).

c. 위원들의 결의에 의해 (상임규칙 4.A.11). 이러한 청원, 요청 또는 결의가 총회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경우, 총회는 상임규칙 4.E.1 및 *교회운영규칙* G-3.0109에 규정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특별행정검토(*교회운영규칙* G-3.0108b)를 수행할 수 있다.

d. 총회 정례 서기에게 접수된 서면 검토 요청에 의해 (총회 회기 중이 아닐 경우). 해당 요청은 이의 제기된 부정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노회 내의 다른 노회 또는 당회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이 혐의된 과실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노회가 다음 회의에서 혐의된 과실을 시정하도록 요청받은 후 시정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만 정규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회의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별 행정 심사를 요청하는 서면이 접수되면, 총회 서기는 총회 의장단과 협의하여 해당 요청이 적법한지, 그리고 다음 총회 회의 전에 특별 행정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요청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 의장단은 특별 위원회(상임 규칙 4.E.1)를 임명하여 질서서*(Book of Order)* G-3.0108b에 따라 특별 행정 심사를 수행하게 하며, 해당 위원회는 그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F. 상임 규칙의 개정 또는 정지

1. 상임 규칙 개정 권고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하여, 총회 서기는 상임 규칙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위원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개정안을 제안할 책임이 있다. 제229차 총회(이 개정된 상임 규정에 따라 처음 세 차례 진행된 총회) 이후에는, 이 검토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가 임명한 태스크포스(총회 대표 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가 수행한다.

2. 총회 상임규칙 개정

총회 상임규칙 개정안이 총회에 최소 60일 전에 통지된 의제로 제안된 경우, 총회 상임규칙은 출석하여 투표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규칙 개정 동의안은 토론이 가능하다. 상임규칙 개정은 총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채택한 총회 회기 종료 시 효력을 발생한다.

3. 상임 규칙의 정지

상임규칙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정지될 수 있다:

a. 정칙 정지 동의안은 총회 소집 전에 총회 업무이관위원회가 권고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의안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출석하여 투표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b. 정회 동의안은 회의 소집 후에도 접수될 수 있다.

이러한 동의안은 토론이 불가능하며, 이전 회의까지 통지되어야 하며, 위원 전체 등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제5부 용어

집

A. 기관/총회 기관

단체란 미국 장로교(U.S.A.) 총회에 의해 설립되고 총회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총회 상임위원회, 총회 기관, 미국 장로교(U.S.A.) 법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회의

로버츠 의사진행규칙 개정판(8:6)에 따라, 총회 회의란 본 상임규칙에 명시된 예배와 분별의 사역을 위해 위원, 자문 대표 및 기타 참가자들이 모이는 단일 공식 집회를 의미한다.

C. 의장

본 상임 규정에 걸쳐, 총회 의장 또는 총회 위원회 의장을 언급할 때 *'의장'* 또는 *'의장들'이라는* 용어는 본 규정에 명시된 회의 및 분별 과정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의 공동 지도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선출되거나 임명된 이들의 특별한 선호에 따라, 이는 공동 의장으로서 교대로 봉사하거나,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D. 회기

개정된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8:2)에 따라, 총회 회기는 동일한 프로그램과 안건 하에 여러 날에 걸쳐 개최되는 일련의 회의를 의미합니다.

지침 및 정책

총회

총회

공개 회의 정책*

제209차 총회(1997년)[1]에서 승인됨 제218차 총회(2008년)[2]에서 개정됨

1. 개방과 신뢰의 정신으로 수행될 때 교회의 사역은 강화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내 기관들이 수행한 업무와 내린 결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공개적인 검토에 대한 개방성과 취약성을 지닌 태도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존중할 기본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해당 기관에 대해 공개 회의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2. 총회, 장로교 선교위원회 및 이와 관련된 기관과 작업 그룹의 정책은 그들의 회의가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업무 모임에 관한 별도의 정책이 존재한다. 해당 회의에서 검토 중인 문서는 회의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3. 특정 상황에서 논의 주제의 기밀성이 단체의 공개적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단체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때 다음 요건이 적용된다:

   a. 처리 대상은 재산 협상, 인사, 민사 및 형사 소송(규율 규칙에 따른 사건 포함) 또는 보안 문제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b. 비공개 회의는 신중한 검토 후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만 승인될 수 있다. 이러한 비공개는 시간과 범위가 위 3(a)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c. 비공개 회의에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및 단체가 업무 수행을 위해 초청한 자만 참석할 수 있다.
참석할 수 있다.

   d. 비공개 사유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발표되어야 하며, 회의록에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e. 도출된 결정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공개되어야 한다.
비공개 회의 종료 후.

4. 직원 단체는 정책 수립 권한이나 책임이 없으므로, 그들의 회의는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5. 본 정책의 규정은 방문객 및 교회 및 공공 미디어 대표자(인쇄, 전자, 사진 기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6. 본 정책의 모든 조항은 모든 개인 및 단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7. 공개 회의 정책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질문은 총회 사무국장이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15차 총회(2003)는 공개회의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승인하였습니다:

> 미국장로교(PC(USA)) 총회 평화·일치·순결 신학 태스크포스는 정식으로 소집되고 구성된 회의에서 출석한 태스크포스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 경우, 민감한 신학적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 공개 회의 정책에서 면제된다. (회의록, 2003, 제1부, 23쪽)

[1] *회의록*, 1997, 제1부, 212-213쪽.

[2] *회의록*, 2008년, 제1부, 34, 35, 162쪽.

*제218차 총회(2008)는 공개 회의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승인하였습니다:

PC(USA) 공개 회의 정책 적용 대상 기관들은 공개 회의 일정 수립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PC(USA) 캘린더 웹 페이지에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게시하도록 지시한다.

기관 회의록 작성 지침

제197차 총회(1985)[2]에서 채택됨 제215차 총회(2003)[3]에서 개정됨

일반

1. 회의록은 매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회의록의 원본 서명본은 총회 회의 첫날에 총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3. 총회에서 검토할 모든 회의록은 찬성 또는 반대 투표로 결정된 모든 실질적 결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는 추후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4. 모든 회의록은 총회에 제출되어 검토 및 승인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모든 회의록은 집행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6. 회의록에는 각 회의가 기도로 시작 및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회원 출석 기록과 함께 방문객 및 직원 명단을 포함해야 한다. 참석한 직원 목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8. 회의록은 8-1/2 x 11인치(약 21.6 x 27.9cm) 크기의 산성 없는 영구 보존용 종이에 작성해야 하며, 역사학과에서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9. 회의록은 포스트 바인더나 클램프 바인더와 같은 안전한 바인더에 보관해야 한다.

10. 양면 인쇄된 페이지는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야 한다.

11. 보고서 서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채워진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페이지 하단까지 추가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슬래시를 삽입해야 한다.

12. 승인 후 1년이 경과하면 원본 회의록은 영구 보관을 위해 역사학과에 기탁되어야 한다.

스타일

1. 약어 또는 이니셜은 회의록 말미에 한 곳에서 정의하거나, 각 회의록에서 처음 사용할 때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2. 지우개나 수정액으로 수정된 대량의 오타는 이니셜을 기재해야 합니다.

3. 회의록 참조 및 읽기 편의를 위해 여백에 주제 제목을 기재해야 한다.

[2] *회의록*, 1985년, 제1부, 735–36쪽

[3] *회의록*, 2003년, 제1부, 34쪽, 119쪽

총회 기록 검토 지침

총회 사무국 위원회 승인 2024년 2월 16일

회의록의 내용

다음 사항들은 해당되는 경우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록에는 목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의회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의장을 맡은 사회자의 성명; 그리고 해당 회의가 "정기", "연기된" 또는 "특별" 의회 회의인지 여부 (*로버트 의회 규칙*, 제15장, 제48조).

3. 특별회의 소집 사유 및 요청자(들) 또는 소집자의 이름(총회 자체 규정에 따름)(G-3.0405).

4. 기도로 각 회의를 시작함(G-3.0105).

5. 각 회의의 기도로의 폐회 (G-3.0105).

6. 참석한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노회(G-3.0104).

7. 결석자 명단 및 소속 노회.

8. 정족수가 참석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G-3.0405).

9. 해당되는 경우, 성찬식 거행 기록 (G-3.0401b).

10.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와 포용의 원칙 이행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위원회 보고서 (G-3.0103, G-3.0401).

11. 위원회, 위원회 및 유사 단체의 구성원 명단(총회 기간 중에만 존재하는 단체 포함).

12. 보고서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와 모든 보고서에는 수정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13. 상설 사법 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노회에 내려진 합법적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보고해야 한다.

14. 총회(G-3.0403c)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존 노회의 분할, 통합 또는 기타 결합, 혹은 신규 노회 조직과 관련된 조치.

15. 노회 기록 검토(이의 제기 사항 포함)(G-3.0403, G-3.0108a).

16. 시노드 기관의 보고서(있는 경우) 및 그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G3.0108a).

17. 승인된 총회 예산(G-3.0113).

18. 전체 재정 검토에 관한 완전한 보고서(G-3.0113).

19. 에큐메니컬 관계에 관한 보고서(해당 시)(G-5.01, 5.04).

20. 동료 검토 제출 전에 총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승인했음을 명시.

21. 총회가 회부한 사항을 총회가 검토한 기록 (G-3.0402).

22. 필요 시 정족수 구성에 소집될 수 있는 상설 사법 위원회 전직 위원들의 최근 6년간 알파벳 순 명부(D-5.0206b).

23. 총회가 가입한 재산 및 책임 보험에 관한 보고서(G-3.0112).

24. 총회 회의 사이에 총회 산하 기관/위원회가 취한 조치.

일반 규정

1. 각 총회는 총회 정기 서기에게 총회 마지막 검토 이후 개최된 모든 총회 회의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회의록은 총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회의록에는 정관 및 상임규칙의 개정안과 교회질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책, 또는 해당 문서의 존재 확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일 및/또는 개정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3. 회의록은 총회 서기(stated clerk)가 전자 서명 및 인증해야 하며, 해당 서명은 첨부 문서 앞에 회의록 말미에 기재되어야 한다.

4. 회의록은 PDF 또는 PDF/A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5. 승인 서신에는 최근 이전 회기 또는 회기들의 회의록이 총회에서 검토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외 사항에 대한 조치 시 해당 페이지 참조를 명시해야 한다.

6. 각 총회 회의록 검토는 모든 총회 서기들이 모인 동료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총회 회의록에 대한 서면 검토 결과는 회의록 검토를 담당하는 총회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각 총회 회의록이 검토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동료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총회는 이 검토를 감독하는 총회 위원회에 회의록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7. 총회 서기는 서명된 총회 회의록의 전자 사본과 해당 승인 서신을 보존을 위해 장로교 역사 협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총회 위원회 보고서

1. 노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총회 위원회는 동료 검토 시 선정된 현직 노회 서기 최소 두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노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총회 위원회는 노회 서기들의 보고서를 근거로 총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a. 절차는 정확히 기록되었으며;

   b. 절차가 정규적이며 헌법에 부합하였음;

   c. 절차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d. 절차가 전체 교회의 사명에 충실했으며,

   e. 총회의 합법적 명령이 준수되었는지.

3. 총회 위원회는 각 노회 서기들이 수행한 동료 검토를 통해 각 노회 회의록 서면 검토에서 예외 사항으로 확인된 부정확성이나 미이행 사항에 대해 총회가 취해야 할 권고 시정 조치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함께 신실함을 추구하며:

의견 불일치 시 장로교인을 위한 지침

미국 장로교(U.S.A.) 제204차 총회(1GG2)에서 채택됨

그들의 말을 들어 주며 . . . 대답하기 전에 경청하겠다

요한복음 7:51과
잠언 18:13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것

에베소서 4:15

평화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에베소서 4:3

신뢰와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믿으며:
   - 우리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화를 위해 소통의 창구를 열어둘 것입니다;
   - 우리는 타인을 위협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거나 발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의견이 다른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알아보십시오.
3.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말하고 답변하기 전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4.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과 존중의 정신으로,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직접 우려사항을 나눕니다.
5. 사람들의 동기나 지성, 성실성을 의심하기보다 아이디어와 제안에 집중합시다. 토론 전, 도중, 이후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낙인 찍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의견이 다른 주제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우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7. 다른 관점과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명확히 밝힙시다.
8. 논의가 격렬하고 긴장감이 넘칠지라도 서로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의사 결정 기관에서 모일 때 다음 추가 지침을 따릅니다:
   -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들이 발언하도록 권유하고, 그들의 입장을 진지하게 경청할 것을 약속합니다;
   - 우리가 동의하는 점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합시다;
   -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감정과 우려에 세심하게 배려하며 양심의 권리를 존중하십시오;
   - 다수의 결정을 따르되, 이에 동의하지 않고 변경을 원할 경우 본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10. 우리의 의견 차이를 기도 속에 담되, 우리 관점의 승리를 구하기보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경청하고, 분명히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품으신 비전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도록 기도합시다.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면서 "교회의 평화, 일치, 순결"(*교회질서서*, G-14.0207g [현 W-4.4003])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미국)의 삶 속에서 의견 차이와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려 노력할 때, 위원회, 교회, 노회, 총회, 그리고 교단의 전국적 삶 속에서 존재합니다.

모든 삶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역사는 갈등과 의견 차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들은 초기 교회에서 흔했던 갈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려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은 해롭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큰 고통을 주고 신앙 공동체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교단이 갈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동시에 갈등은 새로운 통찰과 배움,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의견 차이는 주제를 유익하게 조명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성공적인 해결은 또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갈등과 의견 차이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보여주듯, 깨어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셔서 온전함과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의견이 갈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화해, 신뢰, 사랑, 용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각이 제한적임을 깨닫고, 서로를 인정하며 공동체를 강화하고 타인의 관점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민감하기 위해, 기도와 신뢰와 사랑의 정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지침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사회 정책 수립

1. 정의

총회 산하 기관들은 사회 증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 문서를 활용합니다:

a. "정책 선언문"은 교단의 사회적 증언을 이끄는 기본 원칙을 정립합니다. 이 정책 기반에서 전략이 수립되고 프로그램이 정의되며 개인의 사회적 증언이 강화됩니다. 본 문서 2.a.-g.항의 요건에 따라 작성되고 총회에서 채택된 최신 정책 문서가 현행 정책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그룹이 검토 및 고려한 기존 정책 및 선언문은 최신 정책 채택으로 대체됩니다. 정책 선언문 요청 시에는 가장 최근의 정책 선언문을 제공해야 하나, 정보 요청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위해 과거 선언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b. "결의안"은 기존 정책 성명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c. "연구 보고서"는 사회적 관심사, 사회적 증언 정책 또는 사회적 증언에 대한 교회 차원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는 기존 정책 성명서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d. "사회 참여 보고서"는 특정 사회적 관심사와 기존 정책 성명서를 고려하여 장로교의 사회적 증언을 평가합니다.

2. 요구 사항

총회 산하 기관(총회 특별위원회 포함, 위 1항 참조)이 개발한 모든 사회 증언 정책 문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사회증언정책 자문위원회는 총회에 제출할 사회증언정책을 수립하고 권고하는 절차를 담당한다. 다른 기관이 사회증언정책 수립 및 권고 절차에 관여할 경우, 사회증언정책 자문위원회와의 적절한 협의 및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b. 문서를 작성하는 기구(즉, 태스크포스, 연구 그룹 또는 사회증언정책 자문위원회의 소위원회)는 다양한 관점, 전문성 및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c. 사회 증언 정책 문서에는 교회의 각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업무를 안내하는 권고 사항 섹션을 포함할 수 있다. 총회에서 승인된 권고 사항은 장로교 선교부 운영 매뉴얼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실행을 위해 장로교 선교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은 문서 배포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d. 사회증언정책 자문위원회 및 기타 기관의 서술형 보고서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증언을 권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술형 보고서는 사회증언정책 문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 문서는 그 사회 증언 유형(즉, 정책 선언문, 결의안, 연구 문서 또는 사회 참여 보고서)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f. 어떠한 사회 증언 정책 문서도 미국 장로교(U.S.A.) 개별 교인의 양심이 총회 성명이나 권고에 구속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g. 위 1항에 열거된 모든 사회 증언 정책 문서는 정관 서기(Stated Clerk)에 의해 초판 배포되어야 하며, 문서의 성격, 총회에서 승인된 구체적 권고 사항, 그리고 신자의 양심 자유에 대한 확언을 명시한 공식 커버 레터와 함께 발송되어야 한다.

신자의 양심 자유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정책 성명 요건

65페이지 2항 외에도, "정책 성명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사회증언정책 자문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은 정책 선언문이 다루게 될 사회적 쟁점을 정의하는 개요서를 작성, 채택 및 공개해야 합니다. 이 개요서는 장로교 뉴스 사무소, *Monday Morning* 및 기타 적절한 매체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해결할 문제점, 전문 입안서 입수처 정보, 의견 및 제안 제출 요청을 포함한 입안서 요약본(1페이지)을 모든 총회 및 노회에 발송해야 한다. 이 입안서는 모든 노회에 배포되며, 모든 교회에 배포할 수 있는 충분한 부수를 확보하여 노회와 교회로부터의 의견을 장려하고 의견 제출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b. 정책 성명서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c. 태스크포스는 전체 교회가 그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자문, 의견 제시 등)을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회 전체에 공지해야 한다.

d. 태스크포스는

(1) 성경 본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2) 신학적 논의의 지혜;

(3)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지침;

(4) 사회정치학 분야의 통찰 ;

(5) 과거 정책 성명의 전통;

(6) 교회 구성원 및 모든 통치 기관의 조언;

(7) 가난한 사람들, 기존 정책의 피해자들, 그리고 교회 협의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들의 통찰; 그리고

(8) 에큐메니컬 파트너들의 자문.

e. 태스크포스는 정책 성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1) 성경 학문을 바탕으로 권고하는 사회적 증언 정책을 설명하고;

(2) 신학적 성찰을 통해 권고하는 사회 증언 정책을 정의하며;

(3) 미국 장로교(PCUSA)의 신앙고백과 일치하며;

(4) 과거 총회에서 채택된 관련 정책 선언문과 교회 및 사회가 본 정책 선언문 개발에 참여한 방식을 보고하며;

(5) 해당 증언을 촉발한 상황적 배경을 상세히 기술한다;

(6) 그 지침이 전제하는 윤리적 규범을 명시하며;

(7) 교회와 그 통치 기관 및 구성원들이 실천해야 할 사회적 증언을 설명하며;

(8) 사회가 변화해야 할 방식을 기술한다.

f. 태스크포스는 정책 성명서의 요약본(최대 1페이지)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1) 문서 작성 배경 설명;

(2) 문서의 결론을 개요로 제시하며;

(3) 문서의 활용 방안, 교회에 미칠 영향, 공공 질서에 가져올 결과를 제안한다.

g. 태스크포스는 총회의 심의를 위해 일련의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권고안에는 정책 성명서 배포 전략이 포함될 수 있다.

h. 사회 증언 정책 자문 위원회는 66페이지 3.a항에 명시된 대로 정책 성명서의 최종 수정 전 초안을 협의 목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사회증언정책 자문위원회는 포용성과 전문성을 위해 협의에 참여하는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

(2) 협의 결과 제안된 정책 성명서의 수정안을 포함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증언정책 자문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사회 증언 정책 자문 위원회는 제안된 정책 성명을 수정하거나, 제안된 정책 성명을 태스크포스로 환송하거나, 원본 정책 성명을 재확인할 수 있다.

i. 정책 성명은 정식 서한과 함께 배포되며, 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연도) (번) 총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할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본 정책 성명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기독교 교회와 그 사역 대상 사회를 위한 지침과 교훈으로 제시됩니다. 본 성명서는 총회 산하 기관 및 직원의 절차와 프로그램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른 통치 기관(당회, 노회, 총회)의 검토와 연구를 권고합니다. 모든 교회와 미국장로교(U.S.A.) 교인들의 자유로운 기독교 양심에 따라 기도하며 연구하고, 대화하며,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4. 결의안 요건

65쪽 제2항 외에도, "결의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결의안은 그 근거가 되는 정책 선언문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b. 결의안은 정식 서한과 함께 배포되어야 하며, 해당 서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 장로교회의 (연도) (번호) 총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할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본 결의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기독교 교회와 그 사역 대상 사회를 위한 지침과 교훈으로 제시됩니다. 본 결의안은 총회 산하 기관 및 직원의 절차와 프로그램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른 통치 기관(당회, 노회, 총회)의 검토와 연구를 권고합니다. 모든 교회와 미국장로교(U.S.A.) 교인들의 자유로운 기독교 양심에 따라 기도하며 연구하고, 대화하며,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5. 연구 문서 요건

65쪽 제2항 외에도, "연구 문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연구 문서는 총회의 심의를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b. 연구 문서는 참고 문헌 및 해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자료는 기독교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윤리적 입장을 반영하고 대표해야 한다.

c. 연구 문서는 특정 윤리적 입장에 대해 일관되고 철저한 논증을 제시할 수 있다.

입장에 대해 일관되고 철저한 논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연구 문서는 본문 또는 부록에 다른 윤리적 입장을 공정하게 제시해야 한다.

d. 연구 문서는 응답을 요청받는 대상, 연구 가이드, "사용자 친화적" 응답 양식, 응답 접수 담당 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완료까지 최소 12개월의 기간을 허용하는 일정을 명시한 커버 레터와 함께 배포되어야 한다.

e. 연구 문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 표지 서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총회 연구 문서는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 내 연구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장로교(PCUSA)의 사회 증언 정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을 지시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f. 연구 문서는 연구 과정의 의도된 결과를 명시하기 위해 위 단락에 다음 중 하나를 추가해야 합니다:

(1) 본 연구 문서는 연구와 토론 자체를 목적으로 배포됩니다; 또는

(2) 본 연구 문서는 정책 성명서 수립을 알리고 준비를 돕기 위해 배포됩니다; 또는

(3) 본 연구 문서는 [연도]년 [회차] 총회에서 채택된 정책 성명서 [명칭]의 개정을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배포됩니다.

g. 연구 문서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연구 문서 최초 배포일로부터 최소 18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총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6. 사회 참여 보고서 배포

65페이지의 제2항 외에도, "사회 참여" 보고서는 공식 커버 레터와 함께 배포되어야 하며, 해당 커버 레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회의 사회 참여 보고서는 특정 사회 문제와 이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장로교(PCUSA)의 사회 증언 정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을 지시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7. 지침

교회의 사회적 증언은 다방향적이고 다각적이다. 총회의 사회 정책을 준비하는 기관들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의 진술들은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장려한다.

a. 어떠한 사회 증언 정책도 미국 장로교(U.S.A.) 개별 교인의 양심을 구속할 수 없다.

b. 사회 증언 정책 문서는 평의회 회의록이다. 출판을 위해 회의록에서 발췌될 수 있다. 발췌된 경우, 다른 회의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토론의 성격과 최종 투표 결과는 무관하다.)

c. 사회 정책 문서는 배포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즉, 모든 통치 기관, 미국 대통령, 세계개혁교회연합 총회장 또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배포).

d. 정관 서기 및 각 부서 또는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공식적인" 장로교 사회 증언이 필요한 새로운 선교적 요구에 대응하여, 가장 최근의 총회 사회 증언 정책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e. 장로교 선교국은 *교회질서*서 G-3.0106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지역 사회정책 개발에 관한 자문 요청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회증언정책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자문에 참여하여 총회를 대표한다.

f. 모든 통치 기관은 서신 교환 공동체로서 사회 증언 자료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는 사회 증언 정책 개발 관련 서신 및 지원 문서를 사회 증언 정책 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도 원칙 노회 협력 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시험에 관한

명칭: 미국 장로교(PCUSA)의 이 상설 위원회는 '*장로회 후보자 시험 협력 위원회*'라 칭한다. 편의상 이 위원회를 PCCEC로 지칭할 수 있다.

목적: PCCEC의 목적은 1965년 미국 연합장로교회 총회가 위원회를 설립하며 정한 바와 같습니다:

> "안수 후보자 심사를 담당하는 노회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모든 노회 간에 보다 공정한 기대 기준을 마련하며, 후보자들에게 안수 시험 준비를 위한 보다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후보자 시험에 관한 노회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총회에 보고할 것." (*회의록,* UPCUSA, 1965, 제 1부, p.
>
> 113; 전체 보고서 및 조치 사항은 pp. 104–118 참조)
>
> 역사적 참고: 유사한 위원회가 1976년 미국 장로교회(PCUS)에 의해 설립되었다. 1983년 PCUS와 미국 장로교회(UPCUSA)의 재통합 당시, 후속 위원회가 재통합 교회의 헌법에 포함되었다.

PCCEC의 지속적인 업무는 총회 및 여러 노회에 의해 정식으로 개정된 최신 교회질서서(*Book of Order)*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현재의 위임은 G-2.0607d 조항에 근거하며, 이는 총회에 "노회가 설립한 기관이 작성하고 시행하는" 표준 안수 시험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책임: PCCEC는 다음을 담당한다:

- 총회에서 승인한 표준 안수 시험을 준비하는 것. 현재 이 시험은 다섯 가지 과목 영역으로 개발됩니다:

  —성경 내용
  —개방형 성경 주해(구약/히브리어 및 신약/그리스어 본문 포함)
  —신학적 역량
  —예배와 성례
  —교회 정치

  PCCEC는 미국 장로교(PCUSA)의 다른 기관 및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이 표준 안수 시험의 시험 영역, 명칭 또는 형식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된 변경 사항은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목회자의 삶과 사역에서 성경, *신앙고백서*, *교회질서서에* 대한 통합적·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입니다. 시험 응시자들은 개혁주의 신학 전통 내에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지시받게 되며, 이는 신앙고백서와 존 칼빈의 신학과 광범위하게 일치하는 신학으로 이해됩니다.

- 시험 문제가 시행될 때까지 그 기밀을 유지하고, 성경 내용 시험 문제의 기밀을 무기한으로 유지하는 것. 기밀 유지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예: 민감성 검토자), 또는 사역 준비/시험 사무국 직원 외에는 누구도 시험 문제의 초안 또는 최종 버전을 시행 전에 열람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시험 시행.
- 채점자들을 조직하고 협력하여 시험을 평가합니다.
- 평가자들이 시험을 신뢰성 있게 평가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각 시험의 최종 평가 기록 유지.
- 평가 결과를 응시자, 신학교, 노회에 배포합니다.

- *응시자를 위한 핸드북을* 제공하여 각 시험과 시험 등록 및 응시 절차를 설명합니다.
- 성소 사무국 및 신학 교육 위원회 내 부서와의 협력.
- 표준 시험의 성격, 형식, 효과성 및 시행·평가 방식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PCCEC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역 준비/시험 담당 부서 직원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책임성: PCCEC는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부여받은 총회에 책임을 진다. PCCEC는 지속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명 사무처를 통해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장로교 선교 기관에 책임을 진다. PCCEC는 여러 방식으로 미국장로교회(PCUSA) 노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돕는데, 무엇보다도 노회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노회는 시험 평가를 위한 독자(readers)를 선출하며, 이들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각 노회에 보고하도록 적극 권장됩니다. 평가 과정에 경험이 있는 이들은 노회 내 신자 및 후보자 감독 위원회에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총회는 미국 장로교회(PCUSA)의 치리장로 또는 말씀과 성례의 목사로서 총 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 구조에 대한 변경은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필요로 한다.

- 12명의 위원은 총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되며, 한 차례 더 연임될 수 있다. 이 직책의 후보자는 총회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어야 하며, 필요한 전문 분야, 성별 및 인종/민족적 대표성, 그리고 PCCEC 내 치리 장로와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 간의 대략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6개 지역 독서 모임 각각은 (단계적 일정으로) 두 명의 회원을 선출하여 해당 모임의 공동 주관자 및 PCCEC 위원으로 활동하게 하며, 가능하면 말씀과 성례의 목사(목사)와 치리 장로로 구성한다. 각 주관자/위원은 4년 임기를 수행하며 추가 임기 재선출 자격이 있다.

회의: PCCEC는 향후 시험을 개발 및 검토하고 필요한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연례 회의와 최소 한 번의 독서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임원진: PCCEC의 임원진은 위원장 및 서기로 구성되며, 매년 전체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PCCEC의 의장 및 서기와 특정 시험을 담당하는 여러 작업 그룹의 위원장으로 구성됩니다. 지정된 총회 직원은 집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집행위원회는 PCCEC 연례 회의와 함께 개최되며, 필요 시 추가로 소집됩니다. 집행위원회는 전화 회의 또는 기타 전자 매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다음 대면 회의 또는 전화 회의에서 확인 및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작업 그룹: PCCEC 구성원은 대략 동일한 규모의 작업 그룹으로 나뉜다. 각 작업 그룹은 하나 이상의 표준 안수 시험에 대한 문제 개발 및 평가 기준 수립을 담당한다. 구성원은 각 구성원의 개인적 관심사와 전문성, 그리고 각 작업 그룹의 상대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가 배정한다.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특정 작업 그룹이나 독서 그룹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 컨설턴트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 성경 내용 전문가: 성경 태스크 그룹은 두 명의 성경 전문가가 지원하며, 이들은 새로운 성경 내용 문제를 작성하고 매년 두 가지 형태의 성경 내용 시험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기 위해 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세계 언어 전문가: 미국 장로교(PCUSA) 소속 적격 회원들이 총회에서 지정한 다른 언어(예: 한국어, 스페인어)로 시험을 번역하도록 지정될 것입니다.

독서 그룹: 시험을 평가하는 독자들은 각 노회에서 선출되어 교회 전체를 섬깁니다(G-3.0302b). 각 독서 그룹은 자체 지도부(소집자)를 선출하며, 이들은 PCCEC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독서 그룹 운영 절차와 과정은 *소집자 핸드북에*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 각 태스크 그룹의 임원 및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PCCEC 연차 총회에서 선출되며, 이는 PCCEC 재선출 자격이 없는 회원들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차 총회 사이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석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자 방식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충원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출된 임원은 다음 정기 총회 종료 시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정기 총회에서 통상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동일 직위에 재선될 자격이 있다.

재정: PCCEC의 업무는 두 가지 출처, 즉 총회 *인두* 예산과 시험 등록과 연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PCCEC는 정기적으로 이 수수료를 검토하고 향후 연도에 적용할 적절한 수수료를 결정할 것입니다.

의사 운영 권한: PCCEC의 모든 회의는 미국 장로교(PCC) 헌법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신 개정판 *로버츠 의사진행규칙(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에 따라 진행됩니다.

개정: 본 지침은 PCCEC 연차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으나, 본 지침 내 명시된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총회에 파견된 위원을 통해 노회가 추가 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집행위원회는 PCCEC 전체의 검토를 조건으로, 미국 장로교(PCUSA) 헌법 변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편집적 수정을 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정일: 2010년 4월 16일

개정: 2011년 4월 7일

2011/2013년 교회법규 준수 편집 수정, 2011년 8월, 2012년 2월

미국 장로교(PCUSA)의 종교 간 관계에 관한 입장

서론

미국 장로교회(PCUSA)는 오랫동안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옹호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그리스도의 보편적 명령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39)의 구체적 실천으로 여겨 왔습니다. 본 선언문은 이러한 전통을 재확인합니다.

미국 장로교회(PCUSA)는 종종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이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왔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자는 신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일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더 나아지기로 결심합니다.

미국 장로교회(PCUSA)는 더 나은 방법을 두고 항상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는 종종 격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회의 모든 영역은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관계 맺도록 부름받았습니다.[1]

우리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에 대한 존중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그분 자신, 종교적 평화에 대한 명백한 필요성, 가난과 결핍이 만연한 세상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도 연대하라는 성경의 부르심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갈라놓는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신학(다원주의와 배타주의 모두), 잘못된 목표(통계적 성장에 대한 과도한 강조 등), 그리고 승리주의적 태도가 그 예입니다.

미국 장로교회(PCUSA)는 다양한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적 배경과 가르침

종교 간 상호 존중은 개인의 가장 깊은 종교적 신앙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장로교인들에게는 성경 해석, 교회의 신앙고백문,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교회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구약성경, 즉 히브리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인, 모압인,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 등 여러 민족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종교적 이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창세기 12-17장), 요셉(창세기 37-50장), 선지자들, 모계 조상들, 그리고 지역 내 다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니느웨(요나 3장)와 같은 도시들과 아시리아와 이집트(이사야 19:23-25)와 같은 제국들에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풍부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창세기 1:26-27), 모든 사람은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창세기 9:8-17), 이방인은 환대해야 합니다(레위기 19:33-34),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시편이 반복해서 말해주듯이, 예: 시편 47:8).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의 다양한 문화권으로 퍼져 나가면서, 그들은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 로마 황제 숭배, 영지주의 가르침, 그리고 신비 종교들의 도전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약성경의 기록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지침이 되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대계명은 우리 모든 관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복음서 저자들과 서신서 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언어를 확장하여 설명합니다(예: 요한일서 3장, 5장).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많은 가르침은 바울의 서신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아테네인들에 대한 설교는 종교 간 관계에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많은 이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선교사로서 바울은 매우 다양한 종교들을 접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곳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어떤 주장을 하는가?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바울의 답변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그리스도인의 환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모두 존중하라는 것이었다.

이 구절들은 다른 성경 본문들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모든 언급이 사랑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종교 신전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신명기 12:2-3),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교적 사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고린도전서 1:22). 일부 기독교인들은 비슷한 발언을 인용하여 타인의 종교를 경시하는 것을 용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경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물론 장로교 전통의 모든 종교적 자료가 오늘날의 종교 간 맥락을 다루기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백서* 일부를 살펴보십시오. 예상할 수 있듯이, 고백서에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살고 있는 종교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고백서에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오늘날의 맥락에 부적합한 논쟁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제2 헬베티아 고백서』는 우리 유대교 및 이슬람교 이웃들의 신앙과 관행에 대해 직접적인 부정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고백서,* 5.014, 5.019–5.020, 5.176, 5.225).

종교 간 관계와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정 텍스트들과 우리 종교적 이웃들의 관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므로, 교회는 우리가 종교적 이웃들에게 끼친 해악에 대해 회개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판단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만, 이웃과 우리 자신 사이에 분열이라는 병든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도록 결코 잊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무슬림에 대한 유해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PC(USA))는 지금까지 유대인과 무슬림과의 관계에 종교 간 협력의 대부분을 투자해 왔지만, PC(USA)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1967년 신앙고백은 장로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이 고백은 교회가 다른 종교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것을 논한다. 교회는 다른 종교 전통을 접할 때 "다른 종교와 자신[원문 그대로]의 종교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모든 종교를 열린 마음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신앙고백서,* 9.42). 이 신앙고백은 교회에 더 큰 화해의 정신을 촉구하며, 그 일부는 인간적 차이의 수용을 포함한다.

미래를 위한 기초

미국 장로교회(PCUSA)는 종교적 다원성이 북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지난 40년 이상 동안 종교 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종교 간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전통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예를 들어 이슬람교보다는 무슬림과의 관계를 우선시해 왔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성명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교회들에게 *지침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언문들이 제시한 지침과 방향은 1988년 설립된 종교간 관계 사무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 왔으며, 이 사무국은 그 이후로 장로교인들의 종교간 교류 노력을 확증하고 격려하는 촉매제이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역대 총회들의 이러한 조치들은 오늘날의 종교간 협력 사업의 토대가 되는 여섯 가지 기본 구성 요소를 확립하였습니다:

기초 요소 #1: 교회. 우리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미국장로교회(PCUSA)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온전함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징이자 수단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 타인과 협력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미국 장로교회(PCUSA)는 『신앙고백서 요약』(1991)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주권적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으셨으니... 한 공동체로 살게 하심이라"(*고백서,* 10.3, 29-32절). 이 선언의 교회적 함의는 「교파 간 대화의 장로교 원칙」(제211차 총회[1999]) 중 하나를 형성한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복잡한 사회에서 세계의 복지와 정의, 평화, 창조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인류와 모든 창조계의 온전함과 일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징이자 수단이라는 믿음 안에서 이를 실천합니다."

기독교 교회는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인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선물을 가시화합니다. 이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구성 요소 #2: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협력. 장로교인들은 가능한 한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협력의 맥락에서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미국 장로교(PCUSA)의 종교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은 에큐메니칼적 헌신과 깊이 연관되어 왔습니다. 제199차 총회(1987)는 "가능한 한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채널과 조직을 통해"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이들과의 교류를 촉구했습니다(*회의록,* 1987, 제1부, p. 494, "이슬람에 관한 연구", B.3.e.). 이는 양심상의 차이로 인해 별도로 행동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룬드 원칙을 종교 간 관계로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구성 요소 #3: 사명, 대화, 전도. 장로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개방과 신뢰의 정신으로 타인에게 다가갑니다. 따라서 교회는 대화적(즉 상호작용적) 관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헌신을 나누고 또한 타인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바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진정한 증언의 적절한 형태임을 확언합니다.

재결합한 제195차 총회(1983)는 「선교와 복음화: 에큐메니칼 선언」(세계교회협의회, 1982년)을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와 복음화에 대한 기본적 헌신의 신실한 표현」으로 확인하였다 (*회의록,* 1983, 제1부, p. 436).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동서, p. 551, 7.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의 증거, 41)고 선언하며, "참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타인의 고유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확증하는 데 있다"(동서)고 명시하였다. 새로운 세계교회협의회 문서(2013)는 이 자유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데서 비롯된 인간 존엄성에서 흘러나온다(창세기 1:26)"고 말한다("함께 삶을 향해: 변화하는 환경 속의 선교와 복음화", 96항).

모든 증언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분별력에 이끌려야 하며, 말하기와 듣기 모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1) 다른 교리의 인위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굽히거나 수정하지 않을 때; (2)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교로부터 배울 때; 그리고 (3) 진정한 대화의 일부로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회의록,* 1987, 제1부, p. 452,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전통 속 계시의 본질," IX.F., 종교 간 대화 속의 그리스도인들).

기초 요소 #4: 평화, 정의, 생태.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평화, 정의, 피조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른 종교인들과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경험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체적인 윤리적 관심사를 탐구하고 이를 위해 함께 행동할 때 가장 유익한 종교 간 관계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1987년 장로교인들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체적인 윤리적 관심사를 공유하고, 행동의 종교적 동기를 상호 인정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연합할 수 있을 때 가장 유익한 종교 간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권고를 받았다(*회의록*, 1987, 제1부, p. 452,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전통 속 계시의 본질", IX.F., 종교 간 대화 속의 기독교인들).

인간의 복지에 관한 실질적 측면은 옹호와 행동에 관한 일련의 권고로 이어졌다. 「미국 장로교(PCUSA)의 종교 간 기구 참여 지침」(제204차 총회[1992])은 "목적이 영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종교 기구와의 관계 구축을 권고하며, "정의, 평화, 창조물의 온전함을 위한 공동 작업을 가능케 한다"(회의록, 1992, 제1부, p. 600, 권고 6.c.).

영성에 기반을 두고 정의, 평화, 창조물의 온전함을 위한 공동 작업을 가능케 하는" 다종교 기구와의 관계 구축을 권고하였다(*회의록*, 1992, 제1부, p. 600, 권고안 6.c.).

기초 요소 #5: 겸손한 증언.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증언을 촉구합니다. 증언의 형태가 선교, 대화, 전도, 평화, 정의, 환경 문제 등 무엇이든, 교회는 타인을 심판하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인식하는 태도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았음을 확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하시는 방식에 대한 진술은 장로교인들에게 증거함에 있어 겸손한 절제를 촉구해왔다. 「선교와 복음화: 에큐메니컬 선언」(43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일하시나 그 방식은... 우리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과 그가 [*sic]* 인류와 교제하시는 방식을 분별하려 노력한다"고 선언했다(*회의록,* 1983, 제1부, p. 551). 그러나 "연구 교리문답"(질문 38에 대한 답변)은 "구원의 한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한다(*회의록,* 1998, 제1부, p. 613).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에 관한 성명서(제214차 총회[2002]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항목, *회의록*, 2002, 제1부, p. 525)에는 겸손한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은혜와 사랑과 교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언하고 있다. 겸손은 타인에 대한 판단적 태도를 거부하게 한다. 미국장로교(PC(USA)) 전도 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항목, 제203차 총회[1991])는 이렇게 기록한다: "우리의 기독교적 확신이 타인의 신앙과 마주할 때, 우리는 판단으로 응답하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인식하며 응답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회의록,* 1991, 제1부, 676쪽).

구성 요소 #C: 미완의 결론. 장로교인들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결론이 미완성된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리고 인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인간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 간 관계의 한 요소는 우리의 결론이 미완성 상태로 남을 것을 받아들이는 헌신입니다.

관계의 영역

종교 간 교류는 삶의 한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의 함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종교 간 이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해야 할 아홉 가지 삶의 영역이다. 이 영역들과 제시된 제안들은 기본 원칙들의 정책적 함의를 실행함에 있어 주목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들이다. 각 영역은 교회 기관, 교회 공동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지침으로 마무리된다.

1. 인간의 필요

인간의 필요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종종 세계의 종교들은 기아, 자연재해, 빈곤, 질병과 같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호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종교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따로 행동할 때보다 함께할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역사적 종교적·문화적 특권이라는 우리의 입장에서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종교 간 협력으로 인간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급한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공동체들과 협력할 수 있을까요?

행동 지침:

- 신학교와 대학 캠퍼스,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자기 성찰에 참여하여 기존 빈곤 구제 패러다임의 한계점을 검토하라.
- 소외되고 대표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라. 그들 중 다수는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앞장서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 전통의 사람들과 기관들을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 인식하자.
-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이웃들로부터 인도적·영적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수혜자가 되며,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인식하라.

2. 사회 정의

오늘날 세계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종교 간 활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강제 이주, 인권 침해, 부당한 투옥, 군국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글로벌 도전은 세계 어느 한 집단이나 단일 종교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계 종교들의 협력 없이는 사회 정의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행동 지침:

- 과거와 현재 교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회개를 포함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 종교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십시오.
-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존 다종교 단체에 모든 수준에서 참여하십시오.
- 미국장로교(PC(USA))의 모든 기관이 적절한 경우 종교 간 협력의 틀 안에서 사회 정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라.
- 사회적 정의가 필요한 이들, 특히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이들이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라.

3. 선교와 전도

선교와 전도는 개혁주의 전통의 핵심이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적 종교 간 대화는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의 미덕을 증진시킨다. 이는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고린도후서 3:1-3) 우리가 타인이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편지'로서의 의미에서 적절한 증언의 형태이다. 우리는 모든 다양성의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기에 증언한다.

선교와 전도, 대화를 통한 증언을 고려함에 있어, 우리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문서인 「함께 생명을 향해: 변화하는 환경 속의 선교와 전도」를 연구 대상으로 권고합니다. 이 문서는 "진정한 전도는 삶과 행동의 대화, 그리고 '대화의 정신', 즉 '존중과 우정의 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도는 가장 깊은 신념의 선포뿐만 아니라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타인에게 도전받으며 풍요로워지는 과정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함께 생명을 향해」, 95항).

종교 간 교류의 맥락에서 우리는 인간적 한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임을 인지하며 겸손히 신앙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만큼 유창하게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대화 속에서 신앙을 표현해야 하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초월한 진리를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시는 바는 타인과의 평화롭고 풍성한 관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천 사항:

- 교회에게 대화와 복음 전파의 관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십시오.
-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숨겨진 의도를 갖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 모든 선교와 전도 사역에 겸손한 증인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4. 갈등

세상의 너무 많은 갈등에는 종교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종교는 정부와 비정부 단체 모두에 의해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하게 하거나, 종교적 차별을 행하거나, 박해 행위에 가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이용됩니다. 너무 자주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사랑과 정의라는 우리 전통이 옹호하는 가치에 반하는 갈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관하며 지켜보기만 합니다.

행동 지침:

- 모든 인간 활동의 수준에서 정의와 평화를 옹호하며, 특히 종교 간 평화 구축 노력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 화해를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파괴적인 종교 간 갈등을 식별하고 저항하라.
-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그러한 공모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변화하도록 촉구한다.
- 우리의 종교적 이웃들로부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 종교적 박해를 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적절한 경우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십시오.

5. 가족

종교가 다른 가정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가정들은

여러 이야기와 전통을 넘나들며 의미 있는 종교적 표현을 찾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의견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의견 차이와 분열을 해결하고 자녀 양육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며 마주하게 될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

- "원가족", "생애 주기 의식", "결혼식 계획", "죽음과 슬픔", "명절 관습", "자녀와 신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기"와 같은 주제에 관한 중요한 대화에 전체 교회를 참여시키십시오.
- 영적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종교적 가치관, 신념, 실천을 명확히 표현하고 가정 생활 속에서 이를 신실하게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습니다.

6. 교육

종교적 다원주의 환경에서 교육이 직면한 도전은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닌 가정과 이웃 종교인들에 대한 사고를 이끄는 사고 습관에 대해 자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종교 전통의 역사, 신앙, 실천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행동 지침:

-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으로 살아온 경험을 포함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더 넓은 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십시오.
- 다층적, 종교 간 교류의 기회를 개발하라. 여기에는 지역, 광역 또는 지역 차원의 종교 간 네트워크 회의가 포함될 수 있다.
- 종교 간 대화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교회 구성원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통합된 일상적 관행이 되도록 노력한다.
- 종교 간 상호작용을 잘 수행하는 교회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한다.
- 교회 지도자들에게 종교 간 협력 사역을 훈련시켜 교회에 이를 소개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 미국장로교(PC(USA)) 소속 신학교들이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세상에서 사역할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교육과정을 확대하도록 장려하십시오.
- 선교와 전도, 그리고 종교 간 활동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라.

7. 지역사회

미국 전역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는 종교적·문화적 다원주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비기독교인, 비백인, 비서구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종교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슬람 공포증의 증가를 주목하십시오. 종교적 폭력은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경이 권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본보인 이웃 사랑 정신을 저해합니다.

행동 지침:

- 종교적 경계를 넘어 공동체 연대를 구축하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종교와 종교 공동체의 다양성에 관한 공공 교육을 촉진합니다.
- 모든 이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옹호한다.

8. 교회 공동체

많은 교회들이 인종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다원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다양성은 계속해서 도전 과제를 만들어 낸다: 우리 아이들은 비기독교인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우리 아들딸들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른 종교를 가진 이웃들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그들의 종교 행사에 초대한다.

이러한 기회와 도전 속에서 교회는 다른 종교 공동체와 교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일방적인 증언 방식으로 관계 맺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웃의 종교적 탐구를 존중하는 우정과 동료애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행동 지침:

- 종교 간 관계를 위기나 갈등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만 삼지 말고, 환대와 이웃 사랑의 표징으로 삼으십시오.

- 초대를 받으면 이웃의 예배 장소를 방문하고, 우리 예배 장소에도 이웃을 초대하십시오.

-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종교적·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들 전통의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준비시키십시오.
- 다양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탐구하라.
- 상호적인 대화와 관계의 방식을 모색하라.
- 다른 종교 공동체와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여 두 교회가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을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종교 간 연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9. 직장

오늘날 직장 내 종교 간 공존 현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종 직장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종교적 차이를 넘어 협력하도록 요구받는 공간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직장 환경에서 다른 종교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표현할 기회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명절 관습 존중, 기도 시간 및 공간 제공, 종교적 복장 허용, 신앙 물품 허용 등이 포함됩니다.

실천 사항:

- 개인의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을 선택할 자유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며, 고용주가 직원들의 종교적 관습과 의식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동료들 간의 더 깊은 협력과 존중을 허용하라; 존재하는 편견과 증오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종교 공동체 간의 신뢰는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 속에서, 특히 갈등의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서로를 오해하고 실망시키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이들에 대한 헌신의 틀 안에서만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에 충실할 수 있다. 다음은 긍정적인 종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확인하는 선언이다.

종교 간 헌신에 관한 확언

우리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명이 우리 모든 관계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7, 39).

우리는 고백합니다

미국 장로교회(PCUSA)가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해왔으나, 종
종 그러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나아지기로 결심합니다;

이기적인 신학과 목표, 승리주의적 태도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나아지기
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고백서 일부와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적 유산이
유산의 구시대적 관점이 다른 종교인들과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초래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나아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우리 자신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개방과 신뢰의 정신으로 타
인에게 다가갈 것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평화, 정의, 그리고 피조물의 지
속 가능성을 위해 일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고,
선교와 복음 전파에 참여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가정을 강화
하고,
더 큰 이해를 위한 교육 실천, 다양한 공동
체 육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대를 소중히 여기며, 직장에서는 서
로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릅니다. 우리가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참고: 본 문서 전반에 걸쳐 종교 및 종교적 관행은 조직화된 종교, 민속 종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천되는 토착 종교 및 영성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참고

미국 장로교 총회는 1789년 5월 21일 필라델피아 제2장로교회에서 "미국 장로교 총회"라는 명칭으로 조직되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유일한 현직 회원이었던 존 위더스푼 목사가 초대 의장을 맡았으며,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담당했습니다. 총회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동안, 새 헌법에 따라 소집된 제1회 미국 의회도 같은 도시에서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조직화된 장로교는 1706년경 "노회(The Presbytery)" 설립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노회"는 1717년까지 가장 포괄적인 통치 기관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 기록은 불완전하지만, 1706년 12월 26일 노회 회의 기록이 남아 있다. 1717년, 17명의 목사를 명부에 올린 노회는 총회로 변모하여 롱아일랜드, 필라델피아, 뉴캐슬, 스노우힐의 네 노회로 분할되었다.

미국 독립 전쟁 이후 전국적 차원에서 조직된 여러 교단 중 하나가 장로교였다. 1788년, 총회는 뉴욕·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등 4개 총회로 구성된 총회(General Assembly)를 조직했다. 이 신생 교단은 16개 노회, 177명의 목사, 419개 교회를 포함했다. 1789년 첫 회기 이후 총회는 매년 개최되어 왔다.

초대 총회에는 23명의 목사와 11명의 장로가 위원을 맡았습니다. 현재 총회에는 약 280명의 장로, 280명의 목사, 140명의 자문 대의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수십 년 동안 북미 장로교 가족의 삶에는 분열과 연합이 공존했습니다. 1810년에는 컴벌랜드 장로교회가 별도의 교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837년에는 교회가 구파(Old School)와 신파(New School)로 분열되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비극은 양측 모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861년 남부의 구파 노회들은 분리하여 남부연합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the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를 설립했으며, 4년 후 미국 장로교회(PCUS)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신파 계열의 남부 노회들은 이미 1857년에 분열하여 1858년 남부 연합 총회(United Synod of the South)를 설립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통합을 이끄는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1864년 남부 연합 장로교회와 남부 연합 총회가 합류한 것이 그 시초였다. 전투가 끝난 직후 북부의 신학파 노회들도 재통합되었다. 1906년에는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상당 부분이 미국 장로교회로 복귀했다. 또 다른 분파 역시 더 큰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1858년 연합개혁장로교회와 북미연합노회가 통합하여 북미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1958년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와 합쳐져 미국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UPCUSA)를 형성했다.

1861년에 시작된 주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노력 끝에, 1983년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과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재결합하여 미국 대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개혁교회 계열의 일원인 미국장로교회(PCUSA)를 형성했습니다. 이 교회는 앞서 언급된 선조 교회들뿐만 아니라 1920년 미국장로교회와 연합한 웨일스 칼빈주의 감리교회도 통합했습니다. 재통합된 교회는 상기 연합에 참여한 교회들과 공통된 뿌리를 공유하는 켄터키 장로교회(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미국 이민자 집단 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설립한 교회들—미국 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 연합 그리스도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헝가리 개혁교회(Hungarian Reformed Church) 등 여러 교회들—과도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 교회는 다른 개혁 교회들(자신의 교제에서 떠나 별도의 교단을 형성한 여러 교회들을 포함) 및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부인 더욱 다양한 교단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200년 역사 동안 목회자들이 가장 자주 의장직을 맡았으며, 1900년 이후 32명의 장로가 이 직책에 선출되었다. 지난 21년간 여성과 유색인종이 의장으로 선출된 사례는 아홉 차례에 이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에들러 G. 호킨스는 1964년 미국연합장로교(UPCUSA)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미국장로교(PCUS) 총회 역시 1974년 로렌스 보텀스를 의장으로 선출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장을 배출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는

1971년 UPCUSA 총회에서 선출된 로이스 H. 스테어와 1978년 PCUS 총회 의장 사라 버니스 모즐리입니다. 1976년 UPCUSA 총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텔마 C.D. 애데어를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983년 재통합된 교회들을 섬긴 45명의 정규 서기 중 두 명을 제외한 모두가 목회자였습니다. 존 프리젤은 1872년 컴벌랜드 장로교회 총회 서기로 선출되었으며, 윌리엄 P. 톰슨은 1966년 UPCUSA 총회 서기로 선출되었습니다. 제임스 E. 앤드루스는 1984년 재통합으로 장로교회(미국)가 설립된 후 서기로 선출되었습니다.

총회 상임위원회, 옹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와 위원회 검토 기준

[제216차 총회(2004) 승인]

A. *절차*

검토 대상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책임

1. 지난 6년간의 검토 기준에 기반한 자체 업무 평가.
2. 해당 자체 평가 보고서는 총회에서 검토될 예정인 총회 개최 120일 전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위원회 또는 위원회 대표들은 총회 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자체 평가에 답변을 포함하고, 해당 업무에 적용되는 기준을 탐구하는 추가 질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자체 평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 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

B. *총회 사무국의 검토 책임*

1. 총회 사무국(OGA)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 지도부와 협의하여 연구 서비스 사무국이 설문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을 감독할 것입니다.
2. 평가 과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위원회 지도부와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3. 자체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
4. 총회 사무국 위원회(COGA)와 총회 사무국 평의회(PMA)는 각 총회 후 검토 절차를 평가할 것입니다.

C. *총회 검토 위원회의 업무*

1. 검토 임무는 지정된 총회 위원회에 부여됩니다.
2. 총회 위원회의 검토는 특정 질문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자체 평가, 설문조사, 위원회 또는 위원회 지도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3. 추가 연구를 위해 회부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4. 총회 위원회는 청문회 등을 개최할 것이다.
5. 의회 위원회는 검토 대상인 총회 상임위원회, 옹호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 대표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6. 총회 위원회는 검토 대상인 각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다루기 위해 소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7. 검토 위원회는 위원회와 위원회의 구분을 존중할 것이다.
8. 총회 위원회는 권고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기준

A. *사명과 협력에 대한 충실성*

1. 각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교회가 설립하였으며 특정 영역에서 교회의 사명을 섬기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각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PC(USA)의 삶 속에서 자신의 섬김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충실성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2.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기본 운영 과정은 총회에서 부여한 설립 결의문, 헌장 또는 권한 위임장에 명시된 사명과 책임 절차에 충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나 위원회가 관여하는 사역과 자원에 대한 교회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3.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책임과 기회가 중복되는 분야에서 교회의 다른 기관이나 위원회와 실질적인 협력을 보여야 합니다.

4.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총회로부터의 지시와 요청에 적시에 응답해야 한다.

B. *사역의 효과성*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사역은 총회 또는 헌법적 위임과 일치해야 한다.

1.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자체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평가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교회 전체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전략을 채택합니다.

4.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사명 달성을 위해 최신 및 신기술을 활용합니다.

5.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역사적 사명과 PC(USA)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 및 맥락을 고려하여 업무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회 기관 심사 기준

목적

미국 장로교회(PCUSA)는 '교회의 일치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명에 대한 신실함 속에서 그 표현을 찾는다'(G-4.0201)는 이해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칙에는 상위 통치 기관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역들을 검토할 의무가 포함됩니다(G.-4.0301f). 검토 절차의 목적은 총회 산하 기관들의 사역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는 해당 기관의 사역이 미국장로교회 전체의 사명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노력, 그리고 검토 기준에 따른 해당 기관 프로그램의 질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절차 시기 및 검토 위원회 구성

총회 기관에 대한 검토 절차는 세 차례의 총회 주기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총회에서는 위원회가 연금위원회, 미국장로교 재단, 장로교 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Inc.)의 업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두 번째 총회에서는 위원회가 장로교 출판사, 총회 사무국, 장로교 선교 기관의 업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A 법인/행정 서비스 그룹은 모든 기관 검토와 함께 검토되며, 현재의 서비스 계약도 포함됩니다. 주기 내 세 번째 총회에서 위원회는 여섯 기관, A 법인/행정 서비스 그룹 및 기타 통치 기관들이 총회 사명 지침을 협력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총회 지명위원회는 위에서 설명한 6년 주기 일정에 따라 각 총회 회의에 선거를 위해 적절한 위원회와 검토를 수행할 의장을 지명할 것입니다. 기관 검토 위원회의 책임은 해당 기관이 검토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총회에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관 검토 위원회는 프로그램 개선 분야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관 검토 위원회의 역할은 해당 기관의 교회 관계, 정책 및 실행, 타 기관과의 협력 역사,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지도부 직원 및 운영 이사회 또는 위원회와 직접 면담할 것이다. 기관 검토 위원회는 총회 기관들 간 및 교회 전체 내 강력한 생명력 있는 연결에 대한 총회의 관심이라는 맥락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관 운영 이사회는 기관의 내부 관리 및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관 검토 위원회의 역할은 기관과 총회 간의 유대 강화, 교회의 핵심 사명, 그리고 기관 운영 이사회 및 집행 지도부의 PC(USA)에 대한 기본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관 검토 위원회는 검토 대상 기관의 성공적인 사역을 교회 전체와 함께 축하해야 하며, 직원 대표 문제에 관해서는 총회 대표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기관 검토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보고하는 총회 위원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합니다.

인력 배치 및 자금 조달

인력은 검토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 필요한 자금은 1인당 소득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매뉴얼

검토 과정에서 기관 검토 위원회와 기관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매뉴얼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검토 절차와 기관 검토 위원회를 위한 보고서 형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해당 형식은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기관 검토 위원회와 기관 간의 대화 기회를 개요로 제시할 것입니다. 매뉴얼은 기관 검토 위원회 전체의 조직 구성과 검토 과정에서 개별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개별 기관 검토 기준

A. *교회와의 관련성*

1. 각 기관은 교회가 설립하였으며, 특정 영역에서 교회의 사명을 섬기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해당 기관은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PC(USA)의 삶 속에서 섬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 해당 기관의 기본 업무,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총회에서 부여한 설립 문서, 헌장 또는 위임장에 명시된 사명과 책임 절차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줍니다. 해당 기관은 교회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업무와 자원에 대한 교회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3. 적절한 경우, 기관의 인쇄물은 해당 기관이 PC(USA)의 일부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4. 해당 기관은 PC(USA) 총회 정책 선언문과 헌법을 준수합니다.

5. 해당 기관은 행정 담당자 및 총회 지명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성되는 이사회에 미국장로교(PC(USA))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사를 포함한다.

6. 해당 기관은 총회의 지시와 *요청에*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7. 이 기관은 교단의 회원 수를 늘리고 교회의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연령과 인종, 계급, 성별, 성적 지향성을 포용하며 교회의 문을 하나님의 놀라운 다양성 앞에 활짝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B. *정책 및 프로그램 효과성*

1. 이 기관은 그 책임이 PC(USA)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2. 이사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명확하게 식별되며, (a) 기관의 사명, (b) 기관의 현재 전반적인 상황, (c) 이사로서의 구체적인 책임, (d) 교회와의 법적 관계, (e) 총무 또는 최고 책임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기관은 모든 관련 외부 규제 기관 및 인증 기관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며, 여기에는 직원 채용 시 참여 및 대표 원칙에 관한 총회 대표위원회와의 협의 및 검토, 그리고 '교회 전체 차원의 평등 고용 기회 및 적극적 조치 계획' 또는 후속 지침의 준수가 포함됩니다.

4. 해당 기관의 재정 업무에 대한 연례 감사는 자격을 갖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수행됩니다.

5. 해당 기관의 이사회는 최고 책임자 또는 사장의 선임 및 평가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6. 기관장 또는 최고 책임자와 이사회는 직원들이 업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한 기술, 자격증 및 경험을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직원 개발에 대한 기대를 담은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7. 기관은 장기 및 단기 계획 수립 프로세스와 서비스 제공 측정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효과성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8. 기관은 이해관계자와의 고품질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9. 해당 기관은 미래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구조화되어 있으며, 사명 달성을 위해 현재 및 신기술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C. *협력*

1. 해당 기관은 단순한 소통과 협의를 넘어 진정한 협력으로 나아가며, 적절하거나 총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다른 기관들과 의제 및 업무를 공유하여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해당 기관은 중간 협의회 기관을 포함한 다른 기관 및 PC(USA) 구성원들과 개방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정보 접근을 제공합니다.

3. 해당 기관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 노력과 관련된 잠재적 이점과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4. 기관은 운영상의 과제에 대해 다른 기관의 자산, 자원 및 강점에 의존하여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D. *기관들의 공동 업무 검토 기준*

미국 장로교회(PC(USA)) 전체와 그 여섯 기관에 대한 검토는 총회(General Assembly)의 사명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여섯 기관 및 기타 협의회들이 협력하여 일하는 효과성에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총회 선교 지침 이행에 있어 기관 및 기타 협의체의 효과성 검토는 다음 영역에 중점을 둡니다:

1. 기관 간 협력의 효과성과 협력 장애 요인;

2. 기관들의 총회 및 상호 간 책임성;

3. *교단* 헌법 F-1.0404조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개방성에 비추어, 각 기관 및 기관 전체가 총회의 사명 지침에 응답하는 방식;

4. 기관들의 개별적 및 집단적 자원 관리와 효과적 활용;

5. 교단의 회원 수 증가와 교회의 위대한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연령과 인종, 계급, 성별, 성적 지향의 표현을 포용하며 교회의 문을 하나님의 놀라운 다양성 앞에 활짝 열기 위한 그들의 노력.

총회 위임위원 및 자문 대표를 위한 윤리 기준

1. ***기초.*** 총회 위임위원 및 자문위원의 윤리적 행동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소명과 성경의 증언에 기초합니다. 총회 위임위원 및 자문위원은 *미국 장로교(PCUSA) 안수직을 위한 윤리적 행동 기준에서* 특별한 지침을 찾아야 합니다. 총회 위임위원 및 자문위원으로서의 특별한 사역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총회의 본질과 위임위원 및 자문위원이 총회에서 수행하는 역할로부터 특별한 윤리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임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특별한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는 우리 교회 정치의 기초 원칙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 미국 장로교회(PCUSA)는 "의회에 모인 장로들에 의한 공유된 권력"(*교회질서서*, F-3.0208 C F-3.0202)을 행사하는 장로들에 의해 통치됩니다.

b. "장로들은 단순히 회중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대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교회질서서*, F-3.0204).

c. "의결은 토론과 분별의 기회를 거친 후 투표를 통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다수결로 결정한다"(*교회질서서*, F-3.0205).

모든 위원 및 자문 대의원은 이러한 원칙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의 구체적인 측면은 아래에 명시한다.

2. ***독립적 판단.*** 모든 위원 및 자문 대의원은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독립적 판단의 행사를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와 독립적 판단의 행사에 대한 외관상 저해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a. 정의. '독립적 판단의 훼손'이란 위원 또는 자문 위원이 총회 결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타인에 대한 개인적 이익 추구 또는 의무 이행과 같은 동기로 인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개인적 이익이란 현재 또는 잠재적, 직접적 또는 간접적 금융적 이익 또는 기타 개인적 이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총회 회의 중뿐만 아니라 개인이 위원 또는 자문 대표로 선출된 이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b. 독립적 판단의 잠재적 훼손. 위원회 지도부 직책에 임명될 것을 요청받은 위원은 해당 임명을 수락하기 전에 자신의 독립적 판단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사안 및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위원 또는 자문 위원은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처리 중인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독립적 판단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사안 및 관계를 서면으로 즉시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총회 결의에 대한 금전적 이해관계, 총회에 상정된 권고안 또는 제안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거나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공된 선물이나 여행의 수락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개 사항은 총회 법안 및 개회안 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을 경우, 위원 또는 자문 대의원은 최소한 자신의 독립적 판단이 훼손될 수 있다는 외관이라도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본 기준에 따라 해당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c. 선물 및 관계 구축. 부적절함의 외관조차 피하기 위해, 위원 또는 자문 대의원에 대한 어떠한 선물, 사례금, 특별 혜택 및 접대도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는 위원 또는 자문 대의원이 수락해서는 안 된다:

미국 장로교회(PCUSA) 산하 단체에 상품, 자재 또는 서비스를 판매, 공급 또는 수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또는 총회에 상정된 권고안 또는 의안의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어떠한 선물, 사례금, 특별 혜택 또는 접대도 수락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 조항은 미국 장로교(PCUSA) 산하 단체와 그러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포함한다. 이 규칙에는 네 가지 예외가 있다:

(1)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교회, 중간 평의회, 협력 교회 또는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선물, 식사, 외출 및 관계 구축 활동. 위원이거나 자문 대의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전적 선물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2) 개별 총회 위원이 아닌 총회 자체에 주로 이익이 되는 선물(예: 기프트 카드, 호텔·컨벤션·컨퍼런스에서 총회 공식 업무와 관련하여 총회에 제공하는 무료 숙박권 등).

(3) 개별 위원 또는 자문 대표에게 드리는 가치가 50달러 미만인 소액의 선물(예: 꽃이나 식품 등). 선물이 다른 위원이나 자문 대표 또는 총회 참가자들과 공유되는 경우(*예:*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식품), 해당 선물은 개별 위원이나 자문 대표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총회 업무와 관련된 오찬, 만찬, 외출 및 관계 구축 활동은 수락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라 허용된 활동으로 인해 위임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 100달러 이상의 가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임위원 또는 자문위원은 즉시 이를 서면으로 미국장로교(PC(USA)) 총회 법률고문 및 총회 법안·제안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에는 활동 내용, 금액, 제공자(개인/단체)의 명칭, 해당 개인/단체가 미국장로교회(PC(USA)) 산하 기관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총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해당 개인/단체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총회 법안 및 청원 위원회는 본 조항(4)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 보고서를 포함하는 기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d. **절차 및 해결**. 위원 또는 자문 대의원의 독립적 판단을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모든 공개, 보고 또는 질의는 즉시 서면으로 총회 법안 및 건의안 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는 정규 서기 및 총회 법률 고문 또는 적절히 지정된 자와 협의한다. 협의 후, 총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는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총회는 위원 또는 자문 위원의 행위가 해당 위원 또는 자문 위원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3. ***총회 정보의 기밀성.*** 총회가 비공개 회의로 소집되는 드문 경우에, 위원 또는 자문 위원은 해당 회의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 중 총회 외부에서 알려지지 않았거나 공개적 수단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상임규칙 F.5.g).

4. ***심의 과정의 보존.*** 각 위원 및 자문 위원은 다른 위원 및 자문 위원의 심의 과정 참여 권리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a. **휴대전화.** "총회 및 총회 위원회 회의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된다. 해당 회의 중에는 무음 모드로만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다"(상임규칙 F.5.e.).

b. **시위.** "개별 또는 단체에 의한 자발적 또는 계획된 시위는 총회가 열리는 건물 내부에서 금지된다"(상임규칙 F.11.b.).

5. ***위반 사항.*** 총회 진행 중 본 기준 위반 혐의는 총회 법안 및 청원 위원회에 제기되어야 한다. 총회 법안 및 건의안 위원회는 피고발자에게 합리적인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피고발자에게 적법한 절차(RONR §61)를 거친 후 본 기준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 법안 및 건의안 위원회는 해당 위원 또는 자문 대의원을 견책하기 위한 동의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총회 법안 및 결의안 위원회가 총회에 견책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총회에 항소할 수 없다. 본 정책 위반 또는 미준수 시 해당 위원 또는 자문 대의원을 관할하는 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6. ***개정.*** 본 기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총회 법률고문과 협의하여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본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이며 필요한 기준 변경을 권고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7. ***지정자.*** 본 기준이 특정 임원 또는 직책에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책은 총회 법률고문 또는 그 지정자를 통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미국 장로교(PCUSA)의 권리 포기 없음.*** 본 기준의 어떠한 내용도 미국 장로교(PCUSA)가 법률 및/또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될 권리, 민사 법원 또는 정부 기관의 관할권 부재에 대한 주장, 항변 또는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 ***교육.*** 총회 위원 또는 자문 대의원이 본 기준 및 관련 양식과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자료는 총회 각 회의 전에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다. 총회 법안 및 청원 위원회에 배정된 위원들은 본 정책에 따른 그들의 책임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문화적 역량 기준

PC(USA) 기관 검토 기준

간략한 정의:

> 문화적 역량: 조직의 정책과 관행,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 조직이나 개인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문화적 역량은 다양성을 조직 내 문제라기보다 강점으로 정의한다. 이는 문화, 헌신, 관행 및 기술을 다루는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조직 변혁을 위한 과정이다.

문화적 역량은 다양성의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이 번성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접근법이며, 의도적인 체계적 변화를 위한 과정이다. 이는 변화를 위한 도구 세트와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재능을 키우는 공동체 비전을 포괄한다. 문화적 역량 구현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 조직 내 정책과 *실천*, 그리고
-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

변혁적 도구로서 문화적 역량은 기존 조직 구조 내 핵심 가치, 규범 및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이 진정성 있게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면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리더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문화적 숙련도의 도구는 전략이나 기법이 아닙니다. 이는 조직 내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조직 관행과 개인 행동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 연속체: 건전한 정책과 비생산적인 정책, 관행 및 개인의 행동 양상을 모두 설명하는 언어 체계.
- 핵심 요소: 문화적 숙련도를 향한 성장을 측정하고 계획하기 위한 행동 기준.
- 장벽: 변화에 대한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의사항.
- 가이드라인 원칙: 접근법의 기본 가치.

연속체는 변화 과정이 유동적이며 균일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문화적 숙련도 연속체에는 차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나타내는 여섯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 관행 및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용어를 제공합니다.

관행 및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어휘를 제공한다. 조직과 개인은 언제든지 연속체상의 여러 지점에서 관행을 가질 수 있다.

- 문화적 파괴성은 '타자'로 규정된 문화나 차이의 흔적을 제거하고 배제나 분리를 실행한다.
- 문화적 무능력은 '타자'로 규정된 문화나 차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규범적 문화로의 동화를 요구한다.
- 문화적 무관심은 타인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차이를 하찮게 여기며 조직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긴다.
- 문화적 예비 역량은 차이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며, 조직 내에서 다양성을 건설적으로 통합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이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적응의 필요성에 대한 초기 인식을 반영한다.

- 문화적 역량은 상호작용적 방식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통합하기 위한 개인의 기술과 조직의 역량을 구축하며, 문화적 차이를 환영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 문화적 숙련도는 차이를 소중히 여기며, '타자'로부터 배우고자 노력하며,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집단의 완전한 참여와 기여를 육성합니다.

문화적 역량의 *핵심 요소들은* 개인 역량과 조직적 관행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조직 변화는 개인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 문화적 지식 평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조직 규범을 인식하고, 타문화에 대한 자신의 지식 수준, 차이에 대한 반응 방식, 그리고 다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인지하는 것.

- 다양성 존중: 대화,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 과정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이나 조직의 규범적 문화와 다른 문화적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과 적응을 합니다.

- 차이의 역학 관리: 조직 문화 내에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며, 모든 구성원이 접근 가능한 문제 해결 및 갈등 해결 전략을 개발한다.

- 다양성에 적응하기: 조직 내에서 경험과 문화적 관점의 차이를 규범적 관행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과 존재 방식을 발전시킵니다.

- 문화적 지식 제도화: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학습, 문화 간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능력 개발이 조직 문화와 전문적 탁월성의 기준으로 내재화된다.

- 문화적 숙련도 영역의 *장벽은* 모든 조직에서 다양한 정도로 존재한다. 효과적인 변화 전략은 변화를 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장벽은 또한 조직 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각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적응 필요성에 대한 무지(변화에 대한 저항): 기존 조직 문화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변화 압박을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반응하거나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항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직 내 적대적 관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억압 체계: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계급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등은 역사적으로 조직 내부 문화와 사회 외부 문화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억압 체계는 비지배 집단 구성원에게 장벽을 만들고 지배 집단 구성원에게 부당하게 특권을 부여한다. 조직이 외부 체계로부터 받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개인적 행동과 별개로 이러한 체계적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은 조직 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이다.

- 특권과 권리 주장의 전제: 한 집단이 주변부로 규정되어 시스템 내에서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할 때, 그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은 정의상 지배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귀속된다. 이러한 체계적 억압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면 특권과 권리 주장이 규범적이라고 전제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 인식은 주변화된 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조직 변혁을 위한 도덕적 동력을 약화시킨다. *지침 원칙은* 문화적 역량 구축의 핵심 가치와

문화적 역량이 구축되는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와 가정을 제시합니다. 이는 억압 체제를 지속시키는 데 문화가 차지하는 중대한 역할, 심층적 체계적 변화를 시도하는 복잡성, 그리고 문화가 변화와 변혁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합니다.

- 문화는 개인의 삶과 조직의 삶에서 지배적인 힘이다. 조직 내에서 조직 문화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 사람들은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받습니다.
- 집단 정체성을 인정하라. 사람들은 집단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을 모두 지닌다. 개인이 참여하는 집단 정체성은 그 개인에게 중요하다.
- 문화 내 다양성은 중요하다. 문화 집단은 균질하거나 단일하지 않다. 문화 집단 내 개인들은 고유한 개체들이다.
- 독특한 문화적 요구를 존중하십시오. 문화는 삶의 모든 측면을 형성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은 조직 생활에 다양한 요구를 가져옵니다. 문화적으로 능숙한 조직에서는 지배적 문화가 비지배적 집단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출처: *Cultural Proficiency: Tools for School Leaders.* Nuri-Robins 외:
https://www.aesa.us/about/Resources/CulturalProficiencyforLeaders.pdf; 및 *The Cultural Proficiency Framework.* Nuri-Robins 외:
http://www.teacherleadership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5/03/Cultural- Proficiency-Framework.pdf.

6개 기관의 문화적 역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접근법 평가 및 검토

각 기관이 문화적 역량 구현을 위해 작성한 6개년 계획은 해당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 문서가 된다.

6개년 계획은 인종 평등 옹호 위원회(REAC)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하며, REAC는 승인 전에 여성 및 성별 문제 옹호 위원회(ACWGC) 및 총회 대표 위원회(GACOR)와 협의할 것이다.

고용 및 구매에 관한 적극적 조치 목표는 1985년 교회 전체 평등 고용 기회 및 적극적 조치 계획과 1984년 소수자 공급업체 정책에 의해 설정됩니다. 이는 2014년 GACOR에 의해 검토 및/또는 개정될 때까지 교회의 정책 목표입니다.

6개년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고 경영진의 헌신 표현은 다음을 통해 입증됩니다:
    a. 사명 및/또는 비전 선언문 (*교회법규집* G-3.0103, F-1.0403 참조),
    b. 경영진 회의에서의 정기적 논의,
    c. 문화적 역량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 역량 개발 교육,
    d. 문화적 역량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 성과 평가.
2. 문화적 역량 목표에 대한 직원 지원을 촉진하고 기술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전략.
3. 문화적 역량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문화의 전환을 촉진하고 직원 인식을 보장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4. 조직의 모든 수준(고위 경영진 포함)에서 적극적 고용 조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채용, 교육, 승진 및 유지 전략.
5. 소수자 공급업체 정책 및/또는 공급업체 다양성 목표에 대한 직원 준수 및 지지를 촉진하기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
6.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지원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6개년 계획은 3개의 2년 주기로 설정된 측정 가능한 목표와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

각 기관은 GACOR에 2년마다 고용 데이터(예: 인종, 민족, 성별별 급여, 직종, 퇴직, 신규 채용, 승진 현황)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GACOR는 문화적 역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이 데이터를 REAC 및 ACWC와 공유할 것입니다.

2년마다(총회 회의 주기와 일치하여) REAC는 각 기관이 교회 전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문화적 역량 목표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을 모니터링합니다.

REAC는 OGA 기관 검토 위원회가 수행하는 6년 주기 기관 검토와 동시에 각 기관에 대한 상세 평가를 실시합니다.

REAC는 검토 과정 초기 단계에서 각 OGA 기관 검토 위원회와 협의할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U.S.A.) 아동/청소년/취약 성인 보호 정책 및 절차

정책 적용 선언문

미국장로교회(PC(USA)) 총회 [“PC(USA)”] 및 총회 산하 모든 기관(“기관”)의 정책은 교회 회원, 교회 직분자, 비회원 직원 및/또는 계약자, 그리고 교회 내 교회, 평의회 및 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이 아동, 청소년 및 취약 성인과 관련된 모든 상호작용에서 가장 강력한 정직성, 안전성, 양육 및 돌봄의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정책은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 성인이 참여하는 총회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배포

본 아동/청소년/취약 성인 보호 정책 및 절차(이하 "정책") 사본은 모든 기관, 협의회 및 단체 사무실에 인쇄본 또는 전자 문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정책은 교회, 중간 평의회 및 관련 기관을 위한 지침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미국 장로교(PC(USA)) 총회의 정책이며, 총회 사무국, 장로교 선교 기관, 행정 서비스 그룹 및 총회 산하 기타 4개 기관을 포함한 총회 기관 및 단체의 정책입니다. 미국 장로교(PC(USA))의 다른 협의회 및 조직은 본 정책을 지침으로 삼아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정책과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에서 기관이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협의회가 본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할 때 해당 협의회도 동일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정책 근거

아동·청소년·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시행과 문서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대와 방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교회는 그들의 안전과 양육을 책임질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열린 품을 반영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오 복음서 19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도록 내버려 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수준의 평의회와 모든 기관에서 그리스도의 품을 반영하는 안전과 양육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유형의 학대는 피해자/생존자의 삶에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 학대와 방임이 발생할 때 교회 전체는 피해자/생존자와 그 가족과 함께 고통합니다. 학대와 동반되는 상처, 고통, 불신으로 인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차원에서 신뢰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정적 손실과 정직성의 상실도 겪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에서 발생하는 측량할 수 없는 영적,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피해로 인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점입니다.

- *교회질서서는* "교회 전체는 보편 교회를 대표하여 세례받은 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양육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며, 장로교인들은 이 세례 서약이 중대한 것임을 믿고, 어린이,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포함한 교회의 돌봄을 받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고 이해한다(*교회질서서,* W-3.0403).

- 어린이, 청소년, 취약한 성인은 교회 내에서 돌봄과 봉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는 공동 수혜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15-16에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시며 이를 본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하듯,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품에 안고 축복하며; 그들이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양육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체가 미성년자를 돌볼 때 따라야 할 절차

단체가 회의, 행사 또는 컨퍼런스에서 미성년자를 돌보고 감독할 때(단체가 부모나 보호자에게 미성년자 돌봄 비용을 상환하는 회의, 행사 또는 컨퍼런스는 제외),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의

각 주마다 아동/청소년/취약 성인 학대의 정의에 관한 자체 법률이 존재합니다. 본 정책은 미국 장로교(U.S.A.) 총회 산하 모든 기관이 각 행사/활동 장소와 관련된 주 법률을 검토하고 숙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본 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그 용도에 관한 포괄적인 목록입니다.
본 정책의 목적상:

아동: 아동은 만 0세부터 11세까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청소년은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만 0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담당자: 총회 기관이 후원하는 아동 및/또는 청소년 관련 행사나 활동에 어떠한 수준에서든 참여하는 모든 사람(자원봉사자, 유급 직원 또는 계약직 포함). 여기에는 본 정책이 적용되는 회의, 행사 및 활동에 미성년자를 동반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도 포함됩니다.

취약 성인: 동의할 수 있는 발달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

취약 성인 학대: 취약 성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방임 및/또는 성적 추행 또는 학대, 성적·심리적·정서적 학대, 착취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또는 불作為.

아동/**청소년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추행 또는 학대, 성적·심리적·정서적 학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착취를 초래하는 행위 또는 방치.

성적 학대: *교회 질서서에서* 성적 학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타인에 대한 성적 학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를 수반하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1)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동의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행위; 또는 (2) 강압, 위협, 강요, 협박 또는 성직 또는 직위의 남용을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된 경우" (*교회법규,* D-10.0401c).

기술 오용: 성직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성적 암시적 메시지나 이미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타인을 성희롱하거나 학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술 사용을 포함한다. 교회 소유지에서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 행위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아동 학대로 간주된다. 교회 또는 교회 기관 소유의 기술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역 활동 범위 내에서 개인적 사생활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PMA: 장로교 선교 기관.

OGA: 총회 사무국.

아동 안전 대응팀: 아동 안전 대응팀은 총회 산하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에서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혐의 및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총회 산하 기관 소속 또는 임명된 최소 3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이 팀들은 총회 산하 기관이 후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즉시 연락 및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부적절 행위: 제219차 총회(2010)에서 제정되고 총회 사무국 위원회(2013)에서 개정된 '성적 부적절 행위 정책 및 절차'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성적 부적절 행위는 본 정책에서 다음을 포괄하는 총칭으로 사용됩니다:

아동 성학대; 아동이 성인 또는 제3자의 성적 자극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아동과 성인 간의 접촉 또는 상호작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과 성인 간의 성적 행위는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강제로 간주됩니다. 미국 장로교회(PCUSA)에서 아동 성적 학대의 정의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질서서(*Book of Order)*에 정의된 성적 학대: "타인에 대한 성적 학대란 (1)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동의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자와 관련된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범죄 행위, 또는 (2) 강압, 위협, 강요, 협박, 또는 성직 또는 지위의 남용을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말한다" (*교회질서서,* D-10.0401c).

본 정책에서 성희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구 및 기타 성적 성격의 언어적·신체적 행위는 다음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a. 해당 행위에 대한 수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 조건이나 기관 내 지위 유지 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우;

b. 해당 행위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가 해당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

c. 해당 행위가 위협적, 적대적 또는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목적이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또는

d. 개인이 원치 않는 성적 농담, 원치 않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남성, 여성 또는 아동을 모욕하거나 비하하고/또는 성적 착취하는 성적 시각 자료의 전시를 당하는 경우.

강제, 위협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또는 성적 접촉.

성적 행위는 타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쾌하거나 집착적·성적 암시적 언어 또는 행동, 용납할 수 없는 시선 접촉, 원치 않는 접촉 또는 애무 행위를 의미한다.

성적 부정행위는 전문적 사역 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적 활동으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그로 인해 전문적 사역 관계에서 비롯된 직위나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심사, 교육 및 신원 조회

유급 직원, 계약직 또는 자원봉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담당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관 기관은 작성 완료, 서명 및 승인된 신청서와 신원 조회 동의서(행사 정책을 읽었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서류 포함)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최소 두 명의 추천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모든 아동/청소년 담당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담당하는 가장 연령이 높은 청소년보다 최소 4세 이상 연상이어야 합니다.

3. 신청자의 포괄적 배경 조사(범죄 경력 조회 포함)에 대한 동의. 해당 단체는 보험 적용을 통해 보험사와 협의하여 특정 행사에 적합한 배경 조사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체는 모든 아동/청소년 사역자의 배경 조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조사는 행사 6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제한은 주최 단체의 보험사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요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담당자의 경우, 보험사 기준에 따라 연 1회의 신원조회만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모든 아동/청소년 종사자(유급, 계약직 또는 자원봉사자)는 행사 개최 1년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기관에서 제공하며, 행사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철저히 다루고 학대 예방 방법 및 상세한 신고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관은 타 기관과 계약하여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추가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취약성인 학대 및 방임의 구성 요건
- 학대와 방치의 징후 및 증상을 인식하는 방법.
- 학대 정의 및 신고에 관한 주 법률.
- 의무적인 범죄 경력 조회 및 해당 파일의 보안.
- 지원 및 심사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 미성년자와의 적절한 경계 설정, 특히 성인/아동/청소년 비율, 교통편, 기술 사용에 관한 사항.
- 숙박 행사가 계획된 경우, 적절한 숙소 배정 및 화장실/샤워 시설 사용과 관련된 경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각 행사에 안전한 아동 대응팀(Safe Child Response Team)의 배치 및 연락 방법.
- 총회 산하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과 직접 일하는 모든 유급 직원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기타 관련 사항.

5. 다음과 같은 특정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아동/청소년 복지사로 근무할 수 없다:

- 살인죄;
- 중상해;
- 마약 또는 규제 물질의 소지, 사용 또는 판매 관련 범죄;
- 성적 학대;
- 성폭행;
- 청소년 상해;
- 근친상간;
- 청소년에 대한 음란 행위;
- 청소년의 성적 행위 또는 성적 공연 유도;
- 아동 포르노 소유 또는 유통;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의 판매, 배포 또는 전시;
- 청소년에게 유해한 고용;
- 청소년 유기 또는 위험에 빠뜨림;
- 납치 또는 불법 감금;

-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 또는 음란한 노출; 그리고 청소년 유인;
- 성적 비행 또는 성적 학대를 수반하는 모든 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비행 또는 학대가 포함된 경우;
- 성적 목적으로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예: 미성년자의 나체 또는 성적·부적절한 자세 사진 수집·유포 등 아동 포르노 그래피);
- 폭행 또는 위험에 빠뜨림 등 폭력 사용을 수반하는 모든 범죄;
- 납치 및 유괴를 수반하는 모든 범죄;
- 음주운전과 같은 음주 관련 범죄.

또한, 위원회 또는 총회 기관이 아동/청소년 종사자가 상기 범죄 또는 관련 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종사자는 어떠한 역할로도 아동/청소년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6. 지방, 주 또는 연방 법원 또는 교회 절차에서 본 정책에 명시된 정의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동/청소년 사역자로 활동하거나 고용될 수 없습니다.

7. 총회 산하 기관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해당 기관이 다른 교회 평의회 소속 미성년자를 초청하여 아동/청소년 사역자가 감독할 경우, 해당 청소년 사역자를 선발하는 평의회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의회가 성추행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교회 질서서나 지역 교회 또는 노회의 정책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아동/청소년 담당자로 파견하지 말 것.

b. 해당 인물이 행사에서 근무할 예정인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사역자로 활동하도록 파견하지 말 것.

c. 교회 생활의 모든 수준에서 총회 기관의 미성년자 행사를 조직하거나 해당 행사에 아동/청소년 사역자를 파견하는 데 협력하는 평의회는 본 정책에서 총회 및 그 기관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심사, 훈련 및 신원 조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8. 총회 기관이 아동/청소년 담당자의 감독 하에 시의회 소속 미성년자를 초청하는 미성년자 행사를 주최할 경우, 총회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아동/청소년 담당자를 파견하는 지방회에 아동/청소년 담당자 확보를 위한 모범 사례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b. 아동/청소년 사역자를 파견하는 지방회에 대해, 해당 지방회가 잠재적 아동/청소년 사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요건 및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는 아동/청소년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범죄 기록에 대한 신원조회 평가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c. 배경 조사를 수행할 시기와 어떤 배경 조사 제공업체를 이용할지에 대해 협의회에 지침을 제공한다.

d. 총회 기관의 조직위원회 또는 직원 중 한 명을 지명하여 각 협의회로부터 제출된 배경 조사 결과를 수령할 담당자로 지정하고, 해당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합니다:

i. 수신된 모든 신원조회를 검토하고;

ii.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인물이 아동/청소년 복지 종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야 함을 확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 종사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범죄 유죄 판결을 식별할 것;

iii. 해당 직원이 아동/청소년 종사자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배경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해당 인사를 선발한 위원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통보할 것;

iv. 각 잠재적 자격 박탈 사유가 있는 배경 조사 및 관련 우려 사항을 총회 기관에 보고하여, 해당 배경 조사가 문제시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 종사자로서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공식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기록의 기밀성

해당 기관은 모든 아동/청소년 사역자 지원서, 신원조회 결과 및 관련 정보를 기밀 유지되고 안전하게 보관된 파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고

각 후원 총회 기관은 금지된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를 공지하고 행사장 내 공개 장소에 해당 서류를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위반을 의심하거나 인지한 사람은 해당 총회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의 지도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이 어떠한 유형의 미성년자 학대를 의심하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총회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의 성인 지도자에게 이를 알릴 것을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 학대에 대한 지식이나 의심을 가진 사람은 주 법률에 따라 해당 학대를 즉시 민사 당국에 신고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성인 지도자는 해당 위반 사항을 총회 서기, 부서기, 보조 서기 또는 행사 주최 총회 기관이 지정한 다른 지도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본 항에 따라 정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즉시 지정된 대응팀과 공유해야 합니다.

아동 안전 대응팀

총회 산하 기관이 계획한 미성년자 대상 모든 회의, 회의, 행사 또는 활동에서, 주최 기관이 훈련시킨 안전 아동 대응 팀이 행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하며 대기해야 합니다. 이 팀은 주최 기관이 선정하여 파견한 직원 또는 임명된 구성원 최소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총회 산하 기관이 선정하고 확보한 변호사는 모든 행사에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대응팀은 본 정책의 내용과 함께, 주최 기관 및 해당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역자, 치리장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학대 혐의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장로교(PCUSA)의 '질서서(Book of Order)' 내* 징계 규칙에 따른 확립된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 학대 또는 방임 혐의가 아동/청소년 종사자나 행사 참가자에게 제기된 경우, 안전아동 대응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즉시 관련 피해자로 지목된 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2. 신고 내용이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대응팀은:

   a. 해당 혐의를 주 법률에 따라 민사 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b.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c. 해당 혐의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험사에 통보한다.

3. 조사 완료 시까지 피의자를 미성년자와의 접촉에서 일시적으로 격리하거나, 혐의가 해결될 때까지 행사에서 퇴출시키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4. 총회 기관의 지정 담당자에게 즉시 혐의 신고 사실을 통보하십시오.

학대/방임 사건 발생 시, 각 행사 기간 내내 대기 중인 변호사를 포함합니다. 해당 변호사는 총회 기관이 각 후원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혐의에 대비해 사전에 확보한 인력입니다. 가능한 모든 언론 요청은 지정된 담당자 또는 부서가 대기 중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며, 관련자 모두의 사생활과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각 행사 전 OGA 및 PMA와 협의하여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자원을 확인하고, 해당 자원을 모든 행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는 학대의 참혹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영적, 심리적, 정서적 필요와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즉각적인 자원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6. 보고 대상이 교역 장로인 경우, 대응팀은 해당 교역 장로의 소속 노회 서기에게 서면 혐의 진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서면 혐의 진술서는 *《교회질서서: 미국장로교회(U.S.A.) 헌법》 제2부에 따른* 징계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개시한다.

7. 보고 대상이 치리 장로인 경우, 대응팀은 해당 장로에 대한 범죄 혐의가 접수되어 *《교회질서서: 미국장로교회(U.S.A.) 헌법》 제2부에 따른* 징계규칙에 의거 조사위원회가 구성됨을 해당 장로의 소속 당회 서기에게 통보한다.

8. 보고 대상이 미국장로교회(U.S.A.), 법인(A Corporation) 소속 직원인 경우, 대응팀은 해당 직원의 감독 책임자(개인 또는 위원회), 인사부, 법무부에 통보합니다. 대응팀은 후속 조사 또는 징계 조치 결과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감독 기관에 요청할 것입니다.

9. 보고 대상이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A Corporation) 이외의 후원 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것일 경우, 대응팀은 해당 직원의 감독 책임자 또는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대응팀은 이후 조사 또는 징계 조치의 결과를 감독 기관으로부터 후속 보고서로 요청할 것입니다.

10. 해당 신고가 자원봉사자 또는 미국장로교(PC(USA))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대응팀은 총회 기관에 3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임명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a. 신고자(안전 대응팀의 정보 포함) 및 학대 관련 당사자로부터 학대 진술을 수집하고;

b. 학대 혐의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c. 문서화된 결정을 내리고 사안 해결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며, 여기에는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1. 주요 관련 당사자(고발자, 잠재적 피해자, 피고발자,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목회적 상담을 제공할 것.

12. 이러한 사건에 대한 모든 절차의 서면 요약은 총회 기관에서 보관할 것입니다.

13. 학대 신고를 제기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사람은 고용 조건, 교회 회원 자격 또는 소속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당하거나 해고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과 함께 일할 때의 행사 규칙

총회 주관 기관은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나 활동에 대해 다음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1. 아동/청소년 사역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인종/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40세 이상), 혼인 상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표현, 신조, 보호 대상 장애인 상태, 시민권 상태, 유전 정보, 군복무 또는 참전 용사 상태, 종교적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에게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대응하며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b.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에게 존중, 인내, 성숙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롤모델 역할을 수행합니다.

c.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과 권력 관계에 있을 때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d. 특별 행사나 표창 행사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주는 단체 선물 형태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에게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두 성인 규칙: 미성년자 또는 취약 성인이 포함된 집단 활동 시에는 대면 및 온라인 모임 모두에서 반드시 두 명의 비혈연 성인이 상주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즉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모든 아동 및 청소년 담당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연령대보다 최소 4세 이상 연상이어야 합니다.

3. 비율: 아동 관련 모든 행사/활동의 성인 대 아동 비율은 대면 및 온라인 모임 모두 2:10입니다. 청소년 관련 모든 행사/활동의 성인 대 청소년 비율은 대면 및 온라인 모임 모두 2:17입니다. 또한 한 그룹에 각 성별의 미성년자가 한 명 이상 있을 경우 각 성별별로 한 명의 성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만 비율 및 성별 다양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4. 창문과 개방된 출입구: 미성년자와 성인 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한 방에 있을 경우,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반드시 관찰용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에 관찰용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5. 성인 근로자/보호자는 자신이 돌보는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및 휴대폰의 책임 있는 사용이 요구됩니다(예: 연령에 적합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완전히 옷을 입지 않은 미성년자의 사진 촬영 금지). 성인과 미성년자는 항상 적절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종사자는 보호 대상 미성년자 또는 취약 성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회의·행사 중 촬영한 후, 해당 미성년자 또는 취약 성인의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인터넷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6.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나 행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할 행동에 대해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7. 교통 수단: 아동/청소년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인 운전자는 주최 기관에 적절한 면허증과 보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는 운전자와 각 승객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중 85파운드(약 38.5kg) 미만의 미성년자는 어떤 차량의 앞좌석에도 앉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을 운송하는 모든 운전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신의 차량이 사용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자신의 보험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전세 버스를 대여하거나 외부 운송업체와 계약할 경우, 해당 업체는 운전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각 차량은 본 조항 2항에 명시된 비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행사나 활동에서도 미성년자가 운전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행사 내 골프 카트 포함).

8. 서식: 각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는 해당 활동/행사별로 필요한 정보 및 의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양식에는 법적 보호자의 모든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 서류에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증 사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교외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자가 추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이 주최 기관의 소셜 미디어 또는 출판물에 사용될 경우, 참가자의 법적 보호자와 미성년자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동의서는 행사 장소 내 접근이 제한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접근이 제한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9. 각 행사/활동은 참가자들에게 규칙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는 해당 행사/활동에 특화된 행동 강령과 함께 금지 및 기대되는 행동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동 강령 및 금지/기대 행동 목록은 각 참가자와 법적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행사/활동 시작 시 철저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10. 숙소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유하는 행사에서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다른 샤워 및 세면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현장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11. 성인은 미성년자와 절대 같은 숙소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의 예외는 가끔 발생하는 법적 보호자/아동 상황 또는 부모/자녀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보호자/부모가 필요한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법적 보호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12. 모든 총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에서 미성년자와 취약 성인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원봉사자 및 직원은 다음 금지 행위를 강조하는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애정 표현.

b. 욕설이나 음란한 농담 사용.

c. 미성년자 또는 취약 성인과 관련된 성적 접촉에 대한 논의, 미성년자를 개인적 문제나 사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시키는 행위.

d.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과 데이트하거나 "로맨틱한" 관계를 맺는 행위.

e.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이 있는 장소에서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그 영향 아래 있는 행위.

f. 교회 소유지 또는 교회 행사에 사용되는 장소에서 인쇄물 또는 온라인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성적 내용의 자료를 소지하는 행위.

g.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과 비밀을 공유하는 행위.

h. 미성년자나 취약 성인의 신체를 응시하거나 신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i.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과 부적절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전자적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성인과의 부적절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전자적 의사소통을

j. 사적인 장소에서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과 일대일로 일하는 행위.

k.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을 학대하는 행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신체적 학대: 때리기, 엉덩이 때리기, 흔들어대기, 때리기, 불필요한 구속.
- 언어적 학대: 모욕, 협박 또는 욕설.
- 성적 학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노출 행위, 성적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

대화.

- 정신적 학대: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하거나 잔인하게 행동하는 행위.
- 방임: 음식, 물,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음.

-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이 다음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신입생 괴롭히기, 따돌림, 비하적 호칭 사용, 조롱, 모욕, 성적 행위.

소셜 미디어—전자 통신

일반 소셜 미디어 정책—총회 및 그 산하 기관의 목사,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는 총회 산하 기관 또는 행사 운영진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 미국장로교회(PCUSA)의 이름으로 또는 이를 대표하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 사이트(웹, 페이스북, 유튜브 또는 유사 플랫폼)를 생성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총회 또는 그 산하 기관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성직자나 직원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단체 활동을 주도하거나 조정할 경우, 총회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채널(웹 페이지, 페이스북, 이메일 등 유사 수단 포함)만을 사용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총회 기관 프로그램을 대표하여 공개 페이지를 생성하는 자는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과 사적(그리고 부적절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총회 기관을 대표하여 페이스북 권한을 가진 자는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이 보낸 원치 않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친구 추가" 요청을 무단 문자 메시지로 간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의 "친구" 초대 수락이 행동 강령 위반임을 게시물로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답변도 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및 취약성 성인이 성인과의 학대 또는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드러낸 경우, 해당자는 이를 "학대 의심"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과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할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는 해당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의 부모/보호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 중임을 알리고, 부모/보호자가 이를 반대하거나 그룹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셜 네트워킹 행동 강령

소셜 미디어 자원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모든 사람은 본 소셜 네트워킹 행동 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 관찰자에 의해 가혹하거나, 강압적, 위협적, 협박적, 모욕적, 경멸적, 비하적, 굴욕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금지합니다.
- 성적 취향에 관한 대화나 성적 활동에 대한 논의를 금지합니다.
-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미성년자 및 취약성인 간의 사적인 메시지를 금지합니다.
- 부적절한 사진(예: 성적 암시적, 착취적, 관음적 사진) 게시 또는 사진에 대한 부적절한 댓글 작성을 금지합니다.
-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 그리고 그들의 부모에게 이 소셜 네트워킹 행동 강령을 제공하십시오.
- 부모가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이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십시오.
-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킵니다.
- 반복적으로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개인의 참여를 거부한다.

소셜 미디어 사용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는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 그리고 부모/보호자에게 본 소셜 네트워킹 행동 강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술 오용

총회 및 그 산하 기관의 목사,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기술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 기술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성적 암시적 메시지 및/또는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
- 미성년자 또는 취약 성인의 법적 보호자가 서면 동의서를 통해 사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을 악용하여 미성년자 또는 취약 성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단, 교회 또는 단체 웹사이트, 교회 또는 단체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과 같은 공개된 공공 매체를 통한 연락은 제외한다.
- 총회 소속 단체의 행사, 활동 또는 모임 장소에서 포르노그래피나 노출된 신체를 포함하는 사이트(예: 데이트 웹사이트)를 시청하는 행위. 장소나 주최 단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정책 서명 및 봉사 신청

총회 산하 단체 행사의 지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인은 장로교회(미국) 아동/청소년/취약성인 보호 정책 및 그 절차에 대한 수령을 확인하는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정책을 읽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총회 산하 단체 행사의 지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요구되는 모든 포괄적 신원조회에 동의해야 하며, 본 정책 위반 신고 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따를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기관이 미국 외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돌볼 때 따라야 할 절차

총회 기관이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회의, 컨퍼런스 또는 행사(예: 세계 선교 담당자 및/또는 선교 협력자 지역 회의)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최 기관은 회의 장소, 이용 가능한 자원 및 시설, 개최국 법률을 고려하여 본 정책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지도부와 법률 고문과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본 정책 및 절차 개정 절차

총회 회의 사이에 제안된 본 정책 및 절차 변경안은 OGA 내 중간회의부 사무실과 행정서비스그룹 법무서비스실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들은 검토 후 제안된 변경안을 장로교회(미국) A 법인 이사회("A Corp.")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조정 위원회 및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 후 이루어져야 한다. 변경 사항은 A 법인 이사회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A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변경 사항 중 편집적 수정을 넘어 실질적인 변경 사항인 경우, A 법인 이사회는 승인 후 다음 총회 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총회는 해당 변경 사항을 접수 및 수용할 수 있으나, 총회는 A 법인의 변경 사항 보고 유무와 관계없이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다.

미션 조직을 위한

미국 장로교( ) 교회( ) 2024–2026

본 문서는 선교 프로그램 및 조직에 관한 모든 기존 설명을 대체하며, 제226차 총회(2024)의 결의에 따라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출판물의 어떠한 부분도 출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 복제, 검색 시스템에 저장, 또는 전자적·기계적·복사·녹음 등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전송될 수 없습니다(잡지나 신문 리뷰에 사용되는 간략한 인용문은 제외).

미국 장로교회(PCUSA)의 각 회중, 노회 및 총회는 출판사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출판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교 조직에 대한 개정안은 총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 또는 장로교 선교 기관 내부에서 제출된 선교 조직에 대한 개정안은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승인된 내용을 총회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합니다.

저작권 © 2024

총회 서기 총회 사무국 미국 장로교회(PCUSA)

목차

서론 117

I. 미국 장로교(U.S.A.) 선교 구조의 역사 117

A. 교회의 일치 118

B. 선교에 대한 헌신 118

C. 다양성과 포용성 119

D. 전통과 유연성 119

E. 파트너십 119

F. 추가 요소 120

II. 총회의 사명 120

III. 총회 임원 및 위원회와 총회 사무국 121

A. 총회 의장 121

B. 총회 서기 123

C. 총회 위원회 126

D. 기관 검토 133

E. 회의 134

F. 제3장 개정안 제안 134

IV. 장로교 선교 기관 134

A. 정책 책임 135

B.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135

C. 총회 예산 135

D. 인사 책임 135

E. 보고 136

F. 선출된 지도부 136

G. 직원 리더십 137

V. 장로교 선교 기관 관계 139

A. 옹호 및 자문 위원회 139
B. 신학 교육 위원회 140

VI.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141

VII. 기타 총회 법인 141
A. 연금 위원회 141
B. 미국 장로 교 재단 142
C. 장로교 출판 공사 143
D. 미국 장로교(U.S.A.) 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 주식회사 143

VIII. 총회 관련 법인 144
A. 미국 장로교회(U.S.A.) 여성회, Inc 144

IX. 개정안 144

부록

A. 재정 문제 146
B. 다양한 조직 구조 관련 문서 목록 159

서론

그가 주신 은사는 어떤 이들은 사도, 어떤 이들은 선지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서 성도들을 섬김의 일에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니, 이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온 몸이 각 지체가 제 역할을 다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온 몸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도록 합니다(엡 4:11-16).[1]

이 장로들은 정기적인 단계에 따라 회의에 함께 모일 것이다. 이 회의들은 당회, 노회, 총회, 그리고 총회이다. 교회의 모든 평의회는 교회의 본성에 의해 연합되어 있으며, 본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로 책임과 권리, 권한을 공유한다. 평의회들은 서로 구별되지만 상호 관계가 있어, 그 중 하나의 행위는 적절한 평의회를 통해 수행되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다. 교회의 더 큰 부분 또는 그 대표자는 더 작은 부분을 다스릴 것이다. (*교회 질서서,* F-3.0203)

I. 미국 장로교회(PC(USA)) 선교 구조의 역사

1983년에 합병한 두 교단은 유사한 교회 정치와 신학적 신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큐메니컬 운동과 교회 일치에 대한 헌신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각 교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변화하는 세계 상황에 대응하여 선교 정책과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양 교단은 선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총회 산하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재편했습니다
.

이 두 교단은 중간 평의회들의 운영 방식, 구조, 기대치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를 발전시켰습니다. 비록 유사한 선교 프로그램을 수행했지만, 그들이 형성한 기관 구조들은 쉽게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1983년 통합 총회는 선교 설계안을 마련하기 전에 교회의 선교 이해를 분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협의의 해"라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바에 대한 이해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의 결과물은 197차 총회(1985년)에서 채택된 "생명과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적 이미지는 「생명과 사명 선언문」의 주요 주제였으며, 교회의 삶과 사역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 패턴은 상호 의존성과 타인이 가져온 필요, 경험, 은사에 대한 민감성; 솔직한 소통과 위험을 감수할 용기; 교회와 세계에 대한 글로벌 비전으로 특징지어졌다. 이는 지속적인 헌신, 평등, 겸손, 개방성, 민감성, 유연성, 사랑으로 특징지어진 파트너십을 통해 일할 것을 요구했다.

1986년 제198차 총회에서 승인된 '선교를 위한 구조 설계' 초안 작성에 있어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중요했으며, 이는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선교 조직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고백서들에* 나타난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992-93년도는 "성령을 분별하고 우리의 미래를 구상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총회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움직임이 깊이 느껴지게 하여 교회의 미래 사역에 대한 열정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선교의 자원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강력히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제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교회 전체 조직 형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이는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의 사역을 이끌고, 우리 연결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회는 미래에 대한 감각을 반영한 분별과 비전 제시의 지속적인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새로운 조직 구조가 제205차 총회(1993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새 구조의 몇 가지 구체적 요소는 제204차 총회(1992년)에 보고된 총회 검토 위원회 보고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 단순화된 설계는 사역 단위와

관련 기구를 줄이고, 우선순위 목표를 축소하며, 선교 우선순위를 반영한 균형 예산을 요구했다.

미국장로교회(PC(USA))는 국내 및 전 세계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사역은 교단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쏟아 부으려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정체성과 일치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복잡성 아래서도 교회의 사명은 하나입니다—교회에서 총회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이 모든 장로와 모든 평의회의 임무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평의회로서 총회는 미국장로교(PC(USA))의 노회, 노회, 당회, 교회의 일치를 대표합니다. 총회는 다른 책임들 가운데서도 선교를 위한 정책, 목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사명에 적합한 기관들을 제공하며, 그들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교회질서서,* G-3.0501).

총회, 그 산하 기관들, 노회, 당회 및 교회 평의회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 협력하여 함께 일합니다. 선교 조직은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강조하며, 중간 평의회들이 협력하여 교회에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A. *교회의 일치*

그리스도를 몸의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치는 교회가 특정 교단 내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컬 및 국제적으로도 일치를 보여야 한다는 근본 원칙을 확증합니다. 이 일치의 가장 강력한 상징은 사도적 비전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이 상호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이다. 전체 교회의 일치를 인정하는 것은 PC(USA)의 내부 구조와 교단의 에큐메니칼 헌신에 일련의 함의를 수반한다.

총회, 장로교 선교위원회, 총회 사무국 위원회, 그리고 법인 이사회인 미국장로교회(PC(USA)) 간에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와 프로그램, 정책 시행, 지원 기능의 조화는 교단 내 일치를 가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미국장로교회(PC(USA))는 그 자체로 교회를 이루도록 부름받았으나, 중요한 의미에서 이 교단은 그리스도의 교회 일부임을 인식합니다. 미국장로교회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담긴 세계적·에큐메니칼적 차원을 완전히 인식하며 사역을 수행하며, 국내 및 전 세계 파트너 교회들과 상호 선교, 의사 결정,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B. *선교에 대한 헌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 질서서》는* 선포, 양육, 예배, 진리 보존, 사회적 정의 증진, 그리고 세상에 천국을 드러내는 사명을 통한 교회의 위대한 목적을 명시한다(F-1.0304). 교회 전체의 소명에 있어, 교회의 생명력과 사명의 활력은 핵심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PC(USA)는 교회로서의 소명을 받았으나 동시에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각 교회 또한 그 시대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회의 책임에는 "교회를 통치하고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인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G-3.0201).

C. *다양성과 포용성*

교단 내에서 미국장로교회(PC(USA))는 상호 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의 힘을 확증해 왔으며, 이 통합에서 다양성은 전체성에 기여합니다. 이 교단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각자가 지닌 특별한 특성으로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 다문화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풍부한 다양성을 드러내고 다양한 역사와 전통을 제공하는 유색인종으로서;
-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서;
- 다양한 지리적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로서;
- 모든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들로서;
- 우리 개혁주의 전통 내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지닌 자로서;
- 다양한 은사를 지닌 자로서;
- 개혁주의 교회 가족 내 다양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선출된 기관이 교회 내 풍부한 다양한 은사를 대표하고 권력과 의사 결정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패턴이 확립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전체 인사 절차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촉진합니다.

D. *전통과 유연성*

미국장로교회(PC(USA))는 신앙과 실천의 규범으로서 성경에 확고히 기반을 둔 개혁주의 신학을 고백합니다. *교회질서서(Book of Order)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개신교의 구호들—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동기부여하는 이해의 원칙들을 구현합니다" (G-2.04). 교회는 또한 본질적으로 대표성을 지닌 개혁주의 교회 체제를 계승하고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대한 개방성은 구조적 유연성과 성장 및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수반한다. PC(USA)는 성령의 능력 아래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향해 열려 있다.

개혁주의 전통은 인간과 인간 제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견제와 균형의 체계로 구성된 교회 통치 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선출직 직원의 임기 제한과 순환 배치, 중간 평의회에서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이러한 견제 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장로교회(PC(USA))는 모든 개혁교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의 사제직을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단 내 지도자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조직 계획에 따라 교회 전체가 선교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 *협력 관계*

PC(USA)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기능하는 중간 평의회 간의 관계 체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파트너십은 지속적인 헌신, 평등, 겸손, 개방성, 민감성, 유연성, 사랑으로 특징지어집니다. 파트너십은 달성해야 할 목표 그 이상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 또는 여정입니다.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로서 협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각 평의회는 선교의 주요 주체로서 두 가지 중점을 가집니다: 1) 전체 교회의 선교 사역에서 교회 및 다른 중간 평의회들을 지원하는 적절한 역할, 그리고 2) 다른 중간 평의회들과 협의하여 평의회로서의 자체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F. *추가 요소*

선교의 구조와 방식을 안내하는 추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들의 선교 사명의 중심성을 확증할 필요성, 그리고 그들이 총회 기관들뿐만 아니라 노회와 총회로부터 자원을 필요로 하고 갈망한다는 점;
- PC(USA)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현실을 인식할 필요성;
- 장로교인으로 자칭하지만 특정 교회의 삶과 사역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반응할 필요성;
- 운동의 추진력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제도적 관성을 창출하거나 초래하는 방식은 피해야 함;
- 교회의 기능과 스타일을 규제 기관 수준으로 축소하는 추세를 역전시키고, 대신 더 반응적이고 덜 관료적인 현실을 창출할 필요성;
- 더 단순하면서도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 역사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한 이들에 대한 헌신과 보호 장치를 유지하면서 교단 내 희망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 그리고
- 총회, 노회 및 당회의 구조와 업무에서 전개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화적 설계의 필요성.
- 미국장로교회(PC(USA)) 내 공동 서비스의 가치는 총회의 지시에 따라 각 기관이 고유 사명을 수행하면서 탁월성, 투명성, 효율성으로 교회를 공동으로 최선으로 섬길 때 실현됩니다. 동시에, 어떠한 서비스 공유도 개별 기관의 안전성, 건전성, 복지 또는 선교적 목표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II. 총회 사명 (*총회 규정*)

G-3.0501 구성 및 책임

총회는 교회 전체의 의회이며, 미국장로교회(PC(USA))의 총회, 노회, 당회 및 교회의 일치를 대표한다. 노회에서 선출된 치리 장로와 말씀과 성례의 목사(F-1.0403 및 G-3.0103)로 동수로 구성되며, 해당 관할 구역 내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로 위원을 파송한다:

8,000명 이하: 치리장로 1명과 말씀과 성례의 목사 1명 8,001–16,000명: 치리장로 2명과 말씀과 성례의 목사 2명 16,001–24,000명: 3명의 치리 장로와 3명의 말씀과 성례의 목사 24,001–32,000명: 4명의 치리 장로와 4명의 말씀과 성례의 목사 32,001–40,000명: 5명의 치리 장로와 5명의 말씀과 성례의 목사 40,001–48,000명: 6명의 치리 장로와 6명의 말씀과 성례 사역자 48,001명 이상: 7명의 치리 장로와 7명의 말씀과 성례 사역자

선출된 각 의장은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총회 회원으로 등록된다.

총회는 모든 교회와 평의회 간의 연합, 공동체, 사명의 유대를 이루며, 이를 통해 온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총회는 전체 교회의 증언을 이끌고 인도함에 있어, 교회의 표지(F-1.0302), 역사 속에서 장로교 및 개혁 공동체가 스스로를 식별해 온 특징(F-1.0303), 그리고 교회의 여섯 가지 위대한 목적(F-1.0304)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명을 고려하여 총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전파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이 책임에는 교회를 위한 포괄적인 선교 전략과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것; 다른 교회 기관들과의 에큐메니컬 관계 및 교류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 본 교회의 신앙과 질서에 부합하는 다른 교회 단체들과 연합하거나 관할권 아래 편입하는 것(단, G-5.02조 및 G-5.03조의 규정에 따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선교 인력을 위임하고 파송하며 지원하는 것.

-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영접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책임에는 총회 회의 및 그 관할 하에 있는 기타 행사와 모임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허가하는 것; 총회의 공인된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에큐메니컬 모임에서 성찬식 참여를 허가하는 것; 그리고 성례전이 은혜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성례전이 나타내는 일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온 교회에 걸쳐 목회적 돌봄을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 책임에는 국가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자원 및 프로그램 제공; 공통 관심사에 관한 교회 전체와의 소통; 교회와 세상 속 교리상의 오류나 부도덕에 대한 경고와 증언; 노회가 요구하는 교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 선교, 예언적 증언, 지도자 양성, 예배, 전도, 책임 있는 행정 분야에서 노회에 대한 격려, 지도 및 자원 제공;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와 세상을 고무하고 도전하며 교육할 수 있는 진리와 비전의 사안을 분별하고 제시하며; 교회규칙에 따라 사법적 사안에 관여하며; 본 헌법에 부합하도록 회부된 분쟁을 결정하고 제출된 사건에 대해 조언 및 지도를 제공하며; G-6.02 조항에 따라 또는 총회 상임 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단 전체에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최신판 *《교단 규약》(Book of Order)*을 권위 있게 해석하며, *이* 경우 최신 *해석이* 구속력을 가짐; 그리고 정규 서기(Stated Clerk) 직분을 설립하고 유지함.

III. 총회 임원 및 위원회와 총회 사무국

A. *총회 의장*

총회 의장은 미국 장로교(PC(USA))의 정식 서기와 함께 교회 직분자이다. 의장의 사역은 세례받은 자들의 사역과 치리 장로 및 말씀과 성례의 목사라는 특별한 안수 사역에 근거한다.

1. 의장 직분과 그에 따른 모든 권리와 특권은 공동 의장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의장 직분은 다음 의장 선거까지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2. 의장의 직함은 "미국장로교회(PC(USA)) (연도) 제(번호) 총회 의장"이다.

3. 총회 의장은 총회의 위임받은 자이다. 의장이 총회를 주재할 때, 이는 교회 생활 속 일치와 공동체, 사명의 유대를 상징한다. 총회 기간 사이에는 의장이 평화의 유대 안에서 성령의 일치를 전하는 사절로서, 교회의 삶을 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탱한다.

의장이 교회 전역을 순회할 때는 교회의 사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회와 중간 평의회들을 돌보며, 지도자와 교인들 및 그들의 사역을 격려합니다. 의장은 교회의 기쁨과 염려를 경청하고 세상의 필요와 교회 선교 프로그램의 은사를 확인합니다.

의장이 에큐메니칼 대표로 활동할 때는 개혁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가시적 일치와 교회들 간의 더 깊은 교제에 대해 품고 있는 관심을 대변합니다.

의장이 국내 및 국제 선교지를 방문할 때, 선교 인력을 격려하고, PC(USA)의 기도로 가득한 관심을 자매 교회에 전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장이 교회와 사회에 발언할 때는 미국장로교(PC(USA))의 기준 안에서 목회적이며 예언적으로 말하며, G-2.0105에 명시된 권리와 책임을 유지한다.

a. 의장은 자신을 선출한 총회를 주재하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차기 총회 회의도 주재한다.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그리고 해당 기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G-3.0104).

b. 총회 의장은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의 통신회원이자 총회 사무국 위원회의 의결권 회원이다. 총회 의장은 총회 산하 다른 모든 기관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동 의장이 의장직을 분담할 경우, 최소한 한 명은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로, 두 공동 의장 모두 총회 의장단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c. 의장은 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미국장로교회(PC(USA))가 초청되거나 대표를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 및 교회 모임과 행사에서 교회의 공식 대표자가 된다. 의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 또는 의장이 서기(Stated Clerk)와 협의하여 지정한 다른 사람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

d. 의장과 부의장(부임 시)은 후임자가 취임하는 총회 회기에서 자신들의 업무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 수행 지원

a. 교회는 총회 의장과 부의장의 사역과 이 직분을 수행하는 이들의 더 큰 소명 사이에서 시간 관리의 균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균형에는 총회 의장과 부의장의 안식일 필요성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

교회는 총회 의장이 총회 산하 기관 회의 참석 요청에 응하고, 기타 활동에 참여하며, 헌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서 의장을 보조하는 부의장의 경우, 교회는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할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해야 한다.

b. 의장, 부의장 및 총회 사무국은 교회의 사명과 각 기관, 중간 협의회, 기관, 에큐메니컬 파트너 및 기타 구성원의 필요에 기반하여 그들의 여행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각 총회는 해당 노회와 협의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의 순회 방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받는다. 일반적으로 각 임기 동안 한 노회 내 방문에 대한 단일 초청만 수락된다.

c. 정관 서기는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기간 동안 휴가를 허가해 줄 것을 의장과 부의장의 소속 교회 또는 고용주에게 요청해야 한다.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정규 서기는 의장과 부의장 및 그들이 섬기는 교회나 고용주 대표들과 협의하여, 이 지도자들과 그들의 신앙 및/또는 직업 공동체 사이의 헌신과 언약에 관한 적절한 예배를 집례하여야 한다. 이 예배는 이 직분자들에게 부과된 독특한 요구와 책임을 인정하는 자리여야 한다.

d. 이러한 지도자들의 개인적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거나 그들이 종사하는 업무에 과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사무총장은 총회장 및 부총회장과 협의하여 총회 사무국 위원회에 적절한 재정적 조치를 제안하여야 한다.

e. 총회 사무위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과 그 배우자의 공식 출장 경비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기타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f. 총회 사무실 내 사무실 공간에 의장과 부의장이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한다.

5. 부의장

a. 부의장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총회를 대표한다. 부의장이 이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의장에게 부과된 모든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b. 부의장은 총회 사무국 위원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c. 의장 회의가 있을 경우, 부의장은 의장과 함께 의장 회의 계획을 수립한다.

d. 부의장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순회 사역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 부의장은 부의장 순회 사역의 특별 강조 사항에 대해 의장 및 총회 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f. 의장은 부의장에게 총회 기간 및 이후 의장의 직무 수행을 주재하고 보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정기 보고: 총회장 및 부회장의 책임성

총회 사무위원회(COGA)는 정기 회의마다 총회장과 부회장의 서면 보고를 접수하고 검토함으로써 총회 총회장과 부회장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총회를 지원해야 한다. 총회 총회장은 또한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 정기 회의마다 보고해야 한다.

B. *총회 정규 서기*

1. 정기 서기의 직함은 "미국 장로교 총회 정기 서기"이며,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현직자가 사용할 수 있다.

2. 정관 서기의 직무 (총회 회의 관련 직무는 상임규칙 H.2항 참조)

a. 미국장로교(PC(USA))의 상임 교회 직분자이자 교제 공동체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관 서기는 교회의 삶과 증언을 위한 헌법적·영적 지도력을 제공하고 위기 시 교회의 문제에 대해 목회적 권위를 행사한다. 정관 서기는 PC(USA)의 최고 에큐메니칼 담당자이자 국내 및 국제 교회 간·종교 간 기구에서의 주요 대표자로서, PC(USA)의 신앙과 실천에 관한 사안에서 교회를 대변하며 교회의 신앙과 실천에 관한 사안에 대해 발언한다.

b. 정관 서기는 PC(USA)의 일반 서신을 처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PC(USA) 또는 총회로 발송되는 모든 서신은 정관 서기를 경유해야 한다.

c. 총회 서기는 총회 임원으로서 미국장로교(U.S.A.)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며, 총회의 결정과 행동 및 프로그램을 지지하여야 한다. 총회 서기는 미국장로교(U.S.A.) 헌법 조항의 의미에 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고, 총회 행동의 의미에 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관 서기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에 대한 권위적 해석 요청을 헌법 자문 위원회를 통해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관 서기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인사나 기관과 협의한 후 법률 자문을 구하고 민사 및 형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d. 정관 서기는 미국장로교(PC(USA))의 정관 및 교회가 정관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인도받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기타 자료를 출판하여야 한다. 정관 서기는 *질서서(Book of Order)*의 편집 변경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안이 노회 투표로 승인된 본문의 실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 헌법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관 서기는 헌법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투표권 없이 참여한다.

e. 총회 상임사법위원회 서기로부터 사법 절차 사건의 인증된 기록과 최종 결정을 접수한 경우, 정규 서기는 총회가 회기 중일 때에는 그 결정을 총회에 보고하고,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그 후 첫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설 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다른 평의회에 대한 명령이 포함된 경우, 정규 서기는 해당 평의회로부터 이행 진술서를 확보하고 다음 총회에 완전한 보고를 해야 한다.

f. 정기 서기는 헌법 자문 위원회 및 고백서 또는 그에 포함된 문서의 초안 작성, 검토 또는 개정을 위해 설립된 기타 위원회에 대한 직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g. 총회의 상임 교회 사무관으로서, 정관 서기는 다른 교회 또는 교회들과의 유기적 연합에 관한 논의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수 있는 각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h. 정기 서기는 총회의 상임 에큐메니칼 대표로서, 에큐메니칼 또는 교회 간 기구,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신앙과 질서 기구(양자 간 대화 및 대담 포함)에서 PC(USA)를 대표하는 각 대표단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정기 서기는 총회의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 수립 또는 시행하는 책임을 지는 모든 기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i. 정관 서기는 총회 사무국의 최고 경영자이다. 정관 서기는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j. 정관 서기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 부정관 서기로 활동할 한 명 이상의 인물을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상임규칙 H.2.d.).

k. 정관 서기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 후 한 명 이상의 보조 정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임기는 4년이며,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 후 정관 서기에 의해 재임명될 수 있다.

l. 정관 서기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총회에 대한 조치 및 권고를 받아야 한다. 이 예산안은 총회 각 회기, 총회 사무국 및 관련 기관의 운영 자금, 미국장로교(PC(USA))의 에큐메니컬 기구 참여 자금,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경비를 포함해야 한다.

m. 정관 서기는 미국장로교(PC(USA))의 기록 보관 및 기록 관리 시설 유지, 미국 장로교 역사 보존 기관 감독, 장로교 역사 연구 촉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관 서기는 기록 관리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n. 정관 서기는 장로교 선교 기관 및 그 사무총장과 협력하여 총회와 그 산하 기관들의 조화와 효율성을 증진하며, 특히 총회 산하 기관들 간의 관계와 노회, 당회, 그리고 총회와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관 서기는 총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적절한 위원회, 위원회 및 기관에 소속되거나 관련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정관 서기는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미국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 및 기타 기관(선교 조직 제7장에 명시된 기관 포함)에서 당연직으로 활동하며,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 시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또한, 기관 또는 단체의 최고 책임자(chief officer) 또는 임시 책임자(stated clerk 직위 대체를 위한 경우 제외)로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 명단이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정규 서기는 해당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한다.

o. 정기 서기는 총회 산하 기관에서의 모든 사임서를 접수하며, 아래 "총회 산하 기관에서의 직무 수행"이라는 제목의 제3조 C항 1호에 따라 해당 직위를 공석으로 선포한다.

p. 총회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총회 조치에 대한 주요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3. 총회 사무국

a. 정기 서기는 총회 사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고 감독하며, 총회 사무국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인원에 대한 감독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인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기 서기에게 책임을 진다. 총회 사무국 내 직원 공석(보조 서기 임명 제외)은 해당 감독자(정서기의 동의를 얻어)가 충원할 수 있다.

미국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협의하여, 총회 사무국 예산 범위 내에서, 미국장로교회(U.S.A.) 법인 정관 제2.13조에 따라,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의 협의 하에, 그리고 장로교 선교 기관에 배속된 직원에 대한 회장/사무총장에게 위임된 유사 권한 범위와 일관되게,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i) 총회 사무실에 배속된 직원에 대한 인사 정책 및 절차를 수립, 시행 및 집행할 권한, (ii)

총회 사무실에 배속된 직원을 위한 직원 핸드북을 작성, 유지 및 개정할 것; (iii) 총회 사무실에 배속된 직원을 채용 및 해고할 것; 그리고 (iv) 총회 사무실에 배속된 직원을 승진시키고, 평가하며, 보수를 증감하고, 기타 관리할 것. 정관 서기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A Corporation)이 제공하는 인사 기록 관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는 총회 사무국과 협력하여 총회 사무국 업무와 관련된 계약 및 은행 계좌에 대해 총회 사무국에 배정된 직원 중 충분한 수의 직원이 적절한 서명 권한을 보유하거나 위임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b. 총회 기관 직원들의 고용 및 보수와 관련된 모든 평등 고용 기회 및 기타 통일 정책은 총회 사무국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모든 인사 임명은 미국장로교회(U.S.A.), 법인(A Corporation)의 인사 정책과 *질서서*(*Book of Order*) G-3.0103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 정기 서기는 정기 서기실 직원 중 한 명을 총회 사무국의 예산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기관들은 인력 배치 및 예산 편성 목적으로 총회 사무국과 연계된다: 총회 사무국 위원회, 상임 사법 위원회, 장로교 역사학회 이사회, 대표 위원회, 자문 위원회

헌법위원회, 소송 자문위원회, 총회 후보자 추천위원회,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관계 위원회(장로교 선교부와 공동 운영), 노회 후보자 시험 협력 위원회, 교육자 자격 인증 위원회, 그리고 총회 산하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상임 규칙 K.I. 참조).

d. 총회 사무국이 판매, 유증, 기부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수령한 모든 수입은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재무관에게 송금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재무관이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총회 사무국과 관련된 모든 지급은 정규 증빙 요청서 또는 기타 적절한 서류에 정규 서기 또는 정규 서기가 지정한 자의 승인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 재무관이 수행한다.

e. 총회 사무소 내 장로교 역사학회는 정관 서기가 임명한 자의 지휘 아래 운영되며, 본부는 필라델피아에 둔다. 장로교 역사학회 및 기록·역사부의 사명은 필라델피아에서 수행된다.

C. *총회 위원회*

1. 총회 기관에서의 봉사

a. 각 후보자는 장로교(미국) 소속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양호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노회의 정회원 목사로 양호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장로교 자립개발위원회 선거 후보자는 예외로 한다.

b. 한 사람은 동시에 단 하나의 총회 기관에서만 일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노회에서도 동일한 총회 기관에 동시에 활동하는 일반위원은 한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직분으로 인해 임명된 회원, 선교 조직 또는 기타 총회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두 번째 기관의 회원으로 선출된 회원, 또는 기존 기관에서의 직위를 근거로 두 번째 기관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총회에서 선출 후보로 지명된 자는 일반적으로 4년 임기를 수행할 자격이 있으며 추가로 한 차례 더 선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누구도 연속된 임기(전체

4년 임기를 수행할 자격이 있으며, 추가로 한 번 더 선출될 자격이 있다. 일반적으로 누구도 연속된 두 임기(전체 또는 일부) 이상을 수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총회 위원회나 이사회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그들을 선출한 총회의 마지막 회의가 폐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단, 총회의 결정이나 해당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 매뉴얼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기 종료 후, 해당 인물은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총회 산하 기관에 대한 후보 지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d. 총회 산하 기관, 총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또는 미국장로교(PC(USA)) 기관에 고용된 자는 총회에서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 및 위원회의 선출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e. *교회질서서*(G-1.0401)에 명시된 완전한 참여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 후보 추천이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을 폭넓게 대표하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회의 다양성 속의 일치에 대한 헌신(F-1.0403)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G-3.0111 참조).

f. 총회 산하 기관의 구성원이 사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임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기는 해당 기관과 해당 인사의 지명 또는 선출을 담당한 지명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 산하 기관(평의회, 위원회, 단위, 분과, 위원회, 태스크포스 또는 기타 기구)의 구성원이 사임하거나, 교회 또는 노회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만성적 또는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총회 서기는 해당 직위를 공석으로 선포한다.

g. 총회 산하 기관(평의회, 위원회, 단위, 분과, 위원회, 태스크포스 또는 총회가 승인한 기타 기구)의 이사회 구성원이 해당 기구의 연속된 두 회의에 불참하고 그 불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구성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총회 서기는 해당 구성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기구의 의장은 공석 사실을 총회 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기는 공석을 공고하고 무단 결석한 자의 지명 또는 선출을 담당한 총회 지명위원회 또는 기타 기구에 이를 통보하여, 해당 직위가 원래 채워졌던 방식에 따라 공석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로서 총회 기관의 일원으로 섬기며 노회 또는 총회를 대표하는 자가 자신의 노회 회원 자격을 이전함으로써, 해당 총회 기관에 파송한 노회 또는 총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경우, 그 직위는 총회 서기(Stated Clerk)에 의해 공석으로 선포된다. 노회 또는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 기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특정 교회 회원이 자신을 추천한 노회 또는 총회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은 특정 교회로 회원 자격을 이전할 경우, 정규 서기는 해당 직위를 공석으로 선언한다.

i. 정관 서기는 또한 총회 기관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의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 및 중간 평의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관 서기는 또한 본 교단의 노회 소속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 지위를 상실한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가 해당 기관에서 맡고 있던 직위, 또는 본 교단 소속 교회 회원을 상실한 특정 교회 회원이 맡고 있던 직위를 공석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공석은 전임자가 선출된 것과 동일한 절차로 충원되어야 한다. 만약 공석이 발생할 경우, 임기 중 첫 번째 임기 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원래 추천 기관이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선거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재지명 및 추가 임기 전체에 대한 선거 자격을 갖는다. 현직자의 두 번째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하고, 그 공석이 노회 또는 총회 대표로 지정된 직위인 경우, 잔여 임기에 대한 후보자 추천 권한은 사용 중인 순환 체계에 따라 다음 해당 노회 또는 총회로 이관되며,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는 추가로 한 번의 전체 임기에 대한 지명 및 재선 자격을 갖는다. 총회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는 직위의 공석은, 추천위원회가 해당 임명자의 이름을 다음 회기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조언을 총회 의장이 받은 후, 다음 총회까지 총회 의장의 임명으로 채울 수 있다.

2. 총회 사무국 위원회

a. 총회는 총회 사무국 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위원회는 총회의 사무총장 및 총회 사무국에 대한 총회의 감독을 수행하고, 총회 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 사무총장이 총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하며, 장로교 선교 기관과의 연계 역할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4명으로 구성되며, 각 7명씩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며, 한 번 더 선출될 수 있다. 어떤 위원도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두 번 이상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

총회 의장(또는 공동 의장)은 의장직 수행 기간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는 총회 후보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2년 임기의 무투표 위원을 지명한다. 총회 서기, 총회 부의장(해당 직위가 채워진 경우), 장로교 선교위원회 회장/사무총장은 무투표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대응 위원으로 참여한다.

b.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자체 임원을 선출하고 소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구조를 결정한다(예외 사항은 상임규칙 I.4.a. 참조).

c. 위원회는 인당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재정 활동은 총회 인당 예산 내 별도 항목으로 보고된다. 총회 사무국 위원회의 예산안은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할 책임을 가진다:

(1) 총회 사무총장 및 총회 사무국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회 각 회기에 보고함으로써 총회를 지원하며, 여기에는 지난 총회 회기 이후 완료된 총회 사무총장 및 총회 사무국 업무 평가에 대한 보고서 또는 요약이 포함된다.

(2) 정기 서기의 업무를 매년 검토하고, 임기 말 평가(상임 규칙 H.2.b.(3)(f) 참조) 또는 퇴임 면담을 담당한다.

(3) 정기 서기가 제출한 예산 요청서를 검토하여 정기 서기가 관리하는 인당 예산 부분에 대한 요청서를 총회 사무국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 서비스 그룹으로 이송한다.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또한 정기 서기가 제출한 총회 사무국 인력 구성 변경안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

(4) 총회 서기에게 총회 부서기 직에 선출될 것을 추천받는 자에 관한 모든 제안 및 총회 서기 보좌관 직에 인사를 임명하는

총회 부서기 직에 선출될 인선에 관한 제안 및 총회 보조서기 직 임명에 관한 제안에 대해 총회 서기와 협의한다(상임규칙 H.2.d. 참조).

(5) 매년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 조정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하여 관심사 및 공통 관심 사항을 논의한다.

(6) 총회 상임규칙에 대한 모든 개정안 제안에 관해 상임서기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서기가 총회 상임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기 전에 그러한 자문이 이루어져야 한다(상임규칙 L.1. 참조).

(7)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검토하고, 각 총회 회기마다 특별위원회가 수행 중인 업무 요약(해당 특별위원회에 배정된 업무를 다른 곳으로 이관하거나 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포함)을 보고한다(상임규칙 K.1.e. 참조).

(8) 정기 서기가 확보한 각 총회 회기 평가를 검토한다.

(9) 주제와 중점 사항의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고 주요 연사 및 기타 프로그램 참가자 임명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총회 프로그램을 충분히 미리 개요를 작성한다.

(10) 정기 서기가 제안한 차기 총회 의제에 관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총회 업무 이송 위원회에 제출한다(상임규칙 C.4.a. 참조).

(11) 총회 업무 이송 위원회에 제출할 각 업무 항목을 적절한 총회 위원회에 이송하도록 서기장이 제안한 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검토하고 제출한다(상임규칙 C.3. 참조).

(12) 각 총회 위원회의 의장을 맡을 위원과 각 총회 위원회의 부의장을 맡을 위원의 임명에 관해 의장을 보조한다(상임규칙 C.1.c. 참조).

(13) 총회에서의 모든 예배 계획 수립에 관해 의장과 협의한다(상임규칙 G.a. 참조).

(14) 각 총회 회의의 프로그램적 측면을 조정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에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도록 한다.

(15) 총회 산하 기관, 중간 협의회, 미국장로교(PC(USA))와 관련이 있는 기타 기관, 또는 본 교단이나 그 산하 기관이 참여하는 연합체로부터 총회 또는 그 위원회가 회기 중인 시간대에 회의, 브리핑, 청문회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요청을 검토한다.

(16) 총회 업무의 일정 및 회부 사항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기타 자료와 함께 인쇄 및 배포한다.

(17) 6년 후 회의 일정 및 장소와 기존에 정해진 회의 일정 및 장소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도록 한다(상임규칙 I.1.a. 참조).

(18) 정기 서기의 권고를 검토하고 총회 회기 당 일당 금액을 설정한다(상임 규칙 I.3. 참조).

일당을 책정한다(상임규칙 I.3. 참조).

(19) 총회를 대표하여, 총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 해석이 필요한 모든 문제를 G-6.02 규정에 따라 상정한다.

3. 헌법 자문 위원회

a. 《*교회질서서*》 G-6.02 조항은 헌법 자문 위원회 설립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9명의 의결권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총회 또는 노회의 정식 서기 또는 전직 정식 서기, 총회 상임 사법 위원회 전직 위원, 교회 정치학 교수, 또는 교회의 헌법과 교회 정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타 적격자여야 한다.

b. *교회질서서에*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총회 사무국의 인두세 예산으로 운영되며, 총회 서기가 제공하는 직원 서비스를 받는다.

4. 소송 자문 위원회

a. 소송 자문 위원회는 총회 서기에게 소송 제기 또는 참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본 절 앞부분의 총회 서기의 기능 참조).

b. 위원회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여야 하며, 교회와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총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된 6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관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다른 인사를 초청하여 특정 사건이나 문제의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들은 세 부류로 균등하게 나누어 6년 임기로 활동하며, 한 차례 더 선출될 수 있다. 어떤 위원도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두 차례 이상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상기 제3조 C항 1호 c목에 명시된 총회 산하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 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며, 일반적으로 정규 서기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서신 교환, 전화 협의(회의 전화 포함) 또는 회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d. 위원회는 민사 및 종교적 자유 문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관한 소송 참여에 대해 정관 서기에게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송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관심 분야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하는 데 있어 교회의 중간 평의회 및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 문서 자료 파일의 구축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정관 서기에게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e. 위원회는 총회 사무국의 인두세 예산으로 운영되며, 총무 서기가 제공하는 직원 서비스를 받고, 총회 연차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다(상임 규칙 B.3. 참조).

f. 위원회는 총회 각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총회 대표위원회

a. 교회질서서(*Book of Order*) G-3.01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총회 이상의 평의회는 대표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평의회에

F-1.0403에 명시된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칙 이행에 관한 자문, 지도부의 다양성 증진, 인력 채용에 관한 협의를 수행한다.

b. 위원회는

(1) 총회 및 총회에 의해 설립되고 총회에 책임을 지는 모든 기관에 대해 선출직 및 고용직 지도부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2) F-1.0403에 명시된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칙이 회원 구성에 반영되도록 한다.

(3) 각 총회 위원회의 의장을 맡을 위원과 각 총회 위원회의 부의장을 맡을 위원의 임명에 관해 의장을 지원한다(상임규칙 C.1.c 참조).

(4) 각 총회 회기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총회 서기에게 공유한다.

(5) 교회 전체 평등 고용 기회 및 적극적 조치 계획의 검토 및/또는 개정 작업에 참여한다.

(6) F-1.0403의 통일성과 다양성 원칙에 따라, 신흥 공동체 및 관심사를 위한 지도자 포함과 참여 및 대표성을 증진하는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7) 총회 아래 각 평의회에서의 대표성 위원회 활동과 영향력을 검토하며, 이는 *교회 질서서* G-3.0103에 명시된 기능과 약속에 따라 수행된다.

(8) 교회가 모든 사람의 의사 결정 참여와 포용의 정신을 구축하고, 차이를 넘어 권력을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6. 총회 후보추천위원회

총회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을 요하는 직위에 임명될 인물을 추천할 책임을 진다. 총회 의장은 총회 후보추천위원회와 협력하여 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임명될 인물을 지명한다. 이러한 추천 및/또는 임명은 *교회질서서*(*Book of Order*) G-3.0111조 및 F-1.0403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7. 장로교 역사학회 이사회

a. 이사회는 장로교 역사 협회의 사명—우리 역사를 수집, 보존,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고 미국 장로교(PC(USA))의 사명을 지원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달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b. 이사회는 최소 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구성된다. 총회 사무국 위원회가 이사회를 선출하고 총회가 이를 승인한다. 이사회의 임기는 4년이며, 한 번의 추가 임기(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c. 장로교 역사 협회의 예산은 총회 사무국의 정기 예산 절차의 일환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d. 이사회는 다음의 책임을 지닌다:

(1) 정관 서기의 동의를 얻어 장로교 역사 협회의 전략적 방향을 수립한다.

(2) 교회 전체에 대한 장로교 역사 협회의 감독 및 책임성 확보.

(3) 장로교 역사학회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4) 장로교 역사학회의 사역을 옹호하고 홍보한다.

8.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관계 위원회

a.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관계 위원회는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참여와 사역이 복음의 핵심이자 교회 생활의 열쇠라는 비전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회의 기관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미국장로교(PCUSA)의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관계와 사역 참여를 계획하고 조정한다. 교회의 모든 평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협력 노력을 연결하며, 교회 외부와의 연결을 위한 모든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노력의 공통 기반을 제공할 것; 우리 사역과 헌신의 교회적, 프로그램적, 에큐메니칼적, 교단적(조직적) 부분을 포괄하는 비전의 일치를 유지하며; 에큐메니칼 헌신 속에서 개혁주의 및 장로교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하며;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류의 일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며; 세상에 왕국을 드러내는 표징으로서 교회의 일치를 증진한다.

b.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관계 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2명은 총회 지명위원회(GANC)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가능한 한 균등한 계급으로 선출된 미국장로교(PC(USA)) 소속 회원이어야 한다. 4명은 정규 서기가 각 교단에서 위원회 투표권 위원을 한 명씩 임명하도록 초청한 4개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초청된 4개 교회 중 하나는 에큐메니칼 교회 파트너 중 하나여야 하며, 나머지 3개 교회는 완전 교제 교회 파트너여야 한다. 1명의 위원은 총회 사무국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1명의 위원은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나머지 구성원은 총회 서기 또는 에큐메니칼 관계 담당 부서기와 장로교 선교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그 지명인으로 한다.

또한 다음 PMA 관계자들은 서신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회장/사무총장 및 회장/사무총장이 임명한 최대 3명의 사역 부서장.

c. 위원회 선출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추가로 한 차례 더 선출될 수 있다. 어떠한 위원도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두 차례 이상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 에큐메니컬 교회 파트너로부터 임명된 위원은 4년 임기로 근무하며, 추가로 한 차례 더 임명될 수 있다.

d.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관계 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1)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미국 장로교회(PC(USA))가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데 어떻게 주도하고 참여할 것인지 구상하며, 총회, 그 산하 기관 및 기타 중간 평의회에 적절한 전략을 제안한다;

(2) 총회 헌법 제15장 관계 규정(G-5.02; G-5.03; G-5.05)에 명시된 총회의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G-5.05;

(3) 미국 장로교(PC(USA))의 교회적 에큐메니컬 사역을 다루는 권고안 및 제안에 대해 처리하고 결정한다;

(4) 미국 교회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USA),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개혁 교회 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카리브해 및 북미 지역 협의회(Caribbean and North American Area Council)에 파견될 에큐메니컬 대표단 구성원으로 PC(USA) 회원들을 총회에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함;

(5)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교단과의 기독교 일치 추구 협상 및 조정에 PC(USA)를 대표함;

(6) 에큐메니컬 대화, 교회 연합에 관한 에큐메니컬 협상, 다자간 및 양자간 대화에 참여할 PC(USA) 대표를 선출하고, 다른 교회 총회에 PC(USA) 에큐메니컬 대표로 파견될 PC(USA) 대표를 선출한다;

(7)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미국개혁교회, 연합그리스도교회와의 "합의 공식"(완전 교제) 이행 감독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조 계획·조정에서 미국장로교(PC(USA)) 대표 수행;

(8) 미국 내 장로교 및 개혁교회들 간의, 그리고 이들 교회와 미국장로교(PC(USA)) 간의 일치 함양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9) 총회 및 중간 기관의 모든 부서가 에큐메니칼 의식을 가지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사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 의식을 각자의 업무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도록 함;

(10) 미국장로교(PC(USA))의 관련 기관들에게 에큐메니칼 및 협의회 사역 자금 조달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11) 총회에 에큐메니칼 자문 대표를 파견할 교회 명단을 총회에 제안할 것(상임규칙 B.2.g. 참조);

(12) 종교 간 관찰자로서 총회에 대표를 파견하도록 초청할 세 종교 전통을 선정한다(상임규칙 B.2.f. 참조);

(13) 정기 서기 및 총회 기관에 교회 간(교회 대 교회) 에큐메니칼 관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총회의 G-3.0501c 조항 책임 이행을 지원할 것;

(14) 총회 기관들에게 다른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할 새로운 기회와 종교 간 관계에 관한 총회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15) 선교 기관에 미국 및 전 세계 교회들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에큐메니칼 선교 기회를 모색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며;

(16) 프로그램 기관에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 및 평신도 모두를 위한 장로교인의 에큐메니칼 형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것.

e. 위원회는 총회 사무국의 인당 예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에큐메니칼 직원팀의 공동 의장이 주요 인력 운영 책임을 진다. 에큐메니칼 직원팀은 위원회의 직원 지원 자원이 된다.

D. *기관 검토*

6년 주기 일정에 따라 총회 산하 기관들은 각 부서의 사역이 미국장로교(PC(USA)) 전체의 사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총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는 순환 첫해에 3개 위원회, 순환 둘째 해에 3개 위원회, 순환 셋째 해에 1개 위원회를 선출하며, 각 위원회는 지정된 총회 산하 기관/단체의 업무를 검토합니다. 개별 기관별 검토 위원회는 8명의 일반 위원이 구성된다. 전체 기관/ASG 검토 위원회는 10명의 일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3회 총회 위원을 포함하고 6개 기관의 업무를 이해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총회 지침 및 정책에 명시된 '총회 기관 검토 기준'을 활용한다. 위원회는 정책, 재정, 인종 및 형평성 감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업무 관련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관 서기에게 보고하며, 정관 서기는 검토 결과와 추가 권고 사항을 다음 총회에 제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시한다.

E. *회의*

총회 산하 위원회,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의 회의는 해당 기관 또는 그 지도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자 통신 장비를 통해, 중앙 장소에 모여서, 또는 양자를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다.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승인된 인원이 동시 음성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F. *제3절 개정안 제안*

관련 기관 또는 총회 사무국 내에서 본 제3장(선교를 위한 조직)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경우, 해당 개정안은 총회위원회(COGA)에 제출되어야 한다. 총회위원회는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한 후 승인된 개정안을 총회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한다.

IV. 장로교 선교 기관

선교, 곧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역의 핵심이다. *교회질서서(Book of Order)*가 상기시키듯:

...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부르심으로써, 창조와 인류의 변혁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한다(F-1.01).

장로교 선교부는 총회의 사명을 국내외에서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은 총회 산하 기관이다:[2]

- 전체 교회의 영적 복지를 육성하고 증진하며;
    - 유색인종 집단 구성원, 여성, 다양한 연령층, 결혼 상태(기혼, 미혼, 사별, 이혼)와 무관한 개인, 장애인 등을 위한 평등한 고용 기회 및 적극적 조치 지원을 위한 자원 제공;
    - 장로교 선교 기관의 선교 방향, 목표, 목적 및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선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당회, 노회 및 총회에서 수행 중인 선교 사업을 고려하고, 선교 사업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장로교 선교 기관 예산 및 프로그램을 총회 승인을 위해 제안할 것;
    - 총회 또는 헌법이 장로교 선교 기관에 부여한 특정 사항에 대해 행동하며,

총회 또는 헌법에 의해 장로교 선교 기관에 부여된 특정 사항을 처리하며, 항상 이전에 제정된 총회 정책에 따라 행동하고, 그 조치 사항을 이후 각 총회에 완전히 보고한다;

- 총회가 부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장로교 선교 기관이 교회의 소명인 이 사명에서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의 주요 목적은 총회의 선교 프로그램을 이끌고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와 기관은 헌법과 총회 결의, 교단 자원의 회계 처리, 그리고 우리 시대와 국가적 맥락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총회와 장로교 선교부 직원 사이에 위치하는 이 위원회의 역할은 선교 우선순위, 프로그램 및 전략에 대해 총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총회의 지침을 실행하도록 선교부를 이끌며, 그 결과와 추가 자문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선교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고, 그 비전과 꿈이 직면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들을 관리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 업무는 총회에서 총회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총회에 선교 우선순위, 프로그램 및 전략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총회에서 이사회는 지침과 방향을 받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해당 기관 직원들을 이끌어 총회 지침을 이행합니다. 이사회는 사명의 맥락에서 해당 지침 이행에 자산을 감독하고 조정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재적인 변화가 있는지 분별합니다. 이후 이사회는 총회 지침에 대응하여 다음 총회에서 수정된 우선순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포괄적이고 다층적이며 순환적이며, 각 총회에서 다음 총회로 이어집니다. 이사회는 PC(USA)가 성령께 신실하게 응답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사명과 일치시키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지도하려면 이사회는 기도에 감싸인 신학적, 문화간, 기업적, 법적 지식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장로교 선교부는 총회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총회 상임규칙 A.2조 참조)

A. *정책 책임*

장로교 선교위원회는 총회에 교회 전체 정책을 권고할 수 있다. 장로교 선교위원회는 총회가 수립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장로교 선교위원회의 선교 및 사역을 위한 전반적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B.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장로교 선교위원회는 선교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과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장로교 선교위원회는 지속적인 선교 검토 과정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C. *총회 예산*

장로교 선교위원회는 총회에 포괄적인 총회 선교 예산 및 프로그램을 권고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선교 사업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과 장로교 선교위원회의 기타 모든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한 총회 선교 예산을 수립한다. 이러한 예산을 준비함에 있어, 위원회는 장로교회(미국), 법인 및 장로교회(미국) 재단과 협의한 후 자체 수입 및 지출 예측을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위원회와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공동으로 총회에 제출할 1인당 예산 및 분담금 권고안을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 기관이 판매, 유증, 기부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받는 모든 수입은 장로교(미국) 법인(A Corporation)의 재무 담당자에게 송금되어야 하며, 이는 장로교(미국) 법인(A Corporation)이 받는 수입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본 선교 기구의 제3조 B항 3호 d항에 따라 총회 사무국에 귀속된다. 이 기금은 총무가 별도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장로교 선교 기관과 관련된 모든 지급은 장로교 선교 기관 예산에 부합하고 장로교 선교 기관 회장/사무총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자의 승인을 받은 정규 증빙 요청서 또는 기타 적절한 증빙 서류 접수 시에만 재무관이 수행한다. 장로교 선교 기관이 책임지는 프로그램이나 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제한적 및 비제한적 자금(원금 또는 수익)은 장로교 선교 기관이 총회가 정한 예산 및 기타 절차(연금 위원회 및 장로교 재단이 보유한 자금에 관한 협정 포함)에 따라 배분한다.

D. *인사 책임*

장로교 선교 기관에 배정된 직원에 관하여,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는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정관 제2.13조에 따라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다:

1. 총회장/사무총장은 장로교 선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고 감독하며, 장로교 선교회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인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해당 인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장/사무총장에게 책임을 진다. 장로교 선교회 내 직위 공석은 해당 상급자가 충원할 수 있다.

2. 총회 기관 직원들의 고용 및 보수와 관련된 모든 균등 고용 기회 및 기타 통일 정책은 장로교 선교 기관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든 인사 임명은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A Corporation)의 인사 정책과 *질서서*(*Book of Order*) G-3.0103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a. 인사 절차 승인.

b. 장로교 선교 기관 운영 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장로교 선교 기관 인사 정책과 일치하여, 회장/사무총장에 대한 연례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c. "교회 전체 차원의 평등 고용 기회 및 적극적 조치 계획"의 승인 및 모니터링.

d.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에서 권고한 보상 지침의 승인, 이 지침 내에서 급여는 장로교 선교 기관이 관리할 수 있음.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구성원은 임기 기간 동안 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선발될 자격이 없습니다.

E. *보고*

장로교 선교위원회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가 그 업무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장로교 선교 기관 절차의 예외 사항이나 변경 제안, 프로그램 중점의 주요 변경, 주요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증언 정책, 유색인종 및 여성 문제 옹호, 장로교 신학 기관 관련 사안은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됩니다. 이러한 보고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는 장로교 선교 기관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Presbyterian Church (U.S.A.), A Corporation)이 장로교 선교 기관을 위해 보관하는 정보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장로교 선교 기관이 책임지는 프로그램 또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기금에 대한 기부자, 기금 및 기금 제한 사항에 관한 정보; 해당 기금 및 장로교 선교 기관 자체에 관한 외부 감사 보고서; 그리고 장로교(미국)의 다른 기관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인인 장로교(미국)의 법인 회의록에 대한 접근 권한.

F. *선출된 지도부*

1.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의 조직

장로교 선교 기관의 업무는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의 계획과 선교 이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이사회는 이 사항에 대해 총회에 책임을 진다. 장로교 선교 기관의 운영과 감독은 운영 매뉴얼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장로교 선교위원회는 여성 및 유색인종에 대한 옹호 기능과 사회 증언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 및 총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및 유색인종에 대한 옹호 기능과 사회 증언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보장합니다.

정기 서기는 총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위원회, 위원회 및 총회 기관의 구성원 자격 또는 관계를 갖는다. 정기 서기는 장로교 선교위원회, 법인인 미국장로교회(PCUSA) 이사회 및 기타 기관(선교 조직 제7장에 명시된 기관 포함)에서 당연직으로 활동하며,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 시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또한, 정규 서기는 기관 또는 단체의 최고 책임자(수석 임원) 또는 임시 기관 또는 단체 책임자(정규 서기 직위 대체를 위한 경우 제외)로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 명단이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해당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장로교 선교위원회는 미국 장로교회(PC(USA))와 기관적 또는 협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각 신학 기관의 대표를 포함하는 위원회로서 신학 교육 위원회(COTE)의 지속을 보장합니다. 신학 교육 위원회의 목적은 미국 장로교회(PC(USA))와 역사적 관계 및 통치 약속('기관적 관계')을 통해, 또는 언약적 약속과 본 교단의 사역 지도자 및 교인 양성에 대한 공동 관심('언약적 관계')을 통해 공식적으로 PC(USA)와 관계된 신학 기관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COTE는 총회 및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구성원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의 구성원, 임기 및 임원은 장로교 선교 기관 운영 매뉴얼에 규정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G. *직원 리더십*

1. 회장/사무총장

선출 및 평가—장로교 선교 기관의 총재/사무총장은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재/사무총장은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선출된 총재/사무총장은 선거 후 다음 총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직위의 완전한 권한을 행사한다. 총회가 총재/사무총장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직위는 즉시 공석이 된다. 회장/사무총장에 대한 정기적 심층 평가는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의 책임이다. 회장/사무총장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추가 임기 연임이 가능하다. 최초 4년 임기는 선출 후 업무 시작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4년 임기는 전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회장/사무총장은 관련 직원 핸드북 및 당시 시행 중인 인사 정책과 절차에 따라 장로교 선교위원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회장/사무총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장로교 선교위원회가 총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b. 장로교 선교 기관과 다른 총회 기관, 중간 협의회, 유색인종 협의회 간의 관계 육성(이해 협약 참조);

c. 장로교 선교 기관의 업무를 지휘하는 것;

d. 장로교 선교 기관에 배정된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 제공 및 행정 감독;

e.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장로교 선교 기관의 인사 의사 결정 과정을 주도하며, 포용성, 적극적 조치, 균등한 고용 기회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 시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f.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와 협력하여 장로교 선교 기관의 예산 계획 수립 과정을 조정합니다;

g. 기금 개발을 포함한 모든 장로교 선교 기관 활동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h. 장로교 선교 기관의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주요 대변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i. 이사회가 특정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임한 경우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The Presbyterian Church (U.S.A.), A Corporation)의 회장/사무총장은 관련 인사 또는 기구와 협의한 후, 법률 자문을 선임하고 민사 및 형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2. 직원

장로교 선교 기관에 배속된 모든 직원은 회장/사무총장에게 책임을 진다. 선교 인원은 배속된 해외 협력 교회와 장로교 선교 기관 양측에 공동 책임을 진다.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는 장로교 선교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제2.13조에 따라 회장/사무총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정관;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와 협의하여; 그리고 총회 사무국에 배속된 직원에 대한 정례 서기에게 부여된 유사한 권한 위임 범위와 일관되게, 권한:

a. 장로교 선교 기관에 배속된 직원에 대한 인사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하고 집행할 권한;

b. 장로교 선교 기관에 배속된 직원을 위한 직원 핸드북을 유지 관리하고 개정안을 제안할 권한;

c. 장로교 선교 기관에 배속된 직원의 채용 및 해고를 수행할 권한; 그리고

d. 장로교 선교 기관에 배속된 직원의 승진, 강등, 평가, 보수 증감 및 기타 관리를 담당한다. 총회장/사무총장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에서 제공하는 인사 기록 관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는 장로교 선교 기관에 배속된 직원 중 적절한 수의 직원이 장로교 선교 기관 업무와 관련된 계약서 및 은행 계좌에 대한 적절한 서명 권한을 보유하거나 위임받도록 장로교 선교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3. 이사회 회의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는 협력, 동료애, 조정 및 신뢰를 구축하고 재정, 투자 실적 및 관련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적절한 장로교 선교 기관 직원 및 초청된 직원들과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V. 장로교 선교 기관의 관계

장로교 선교 기관은 총회, 노회, 당회와 협력하여 각 협의체가 미국 장로교(PC(USA))의 삶과 사명을 교회 전체 차원에서 함께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장로교 선교 기관과 그 임원, 이사, 이사회 구성원 및 직원들이 모든 사안에서 장로교 선교 기관에 대한 개별적 이익이나 손해를 우선시하기보다 교회 전체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로교 선교위원회와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인두세 예산 및 분담금 준비와 제출, 그리고 기타 공동 사업 기회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장로교 선교 기관은 총회를 위한 선교 프로그램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장로교 선교 기관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미국 장로교회(PCUSA)에 맡기신 선교의 일부를 위해 서로 연결되고 교회와도 연결된다.

장로교 선교 기관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법인은 장로교(미국) 법인(Presbyterian Church (U.S.A.), A Corporation)으로, 재산을 수령·보유·이전하고 교회의 법인 업무 관리를 지원한다. 장로교 선교 기관에 대한 이 법인의 역할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장로교(미국) 선교 기관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미국 장로교회(법인)와 장로교 선교 기관은 모두 총회에 종속된다. 따라서 장로교 선교 기관은 총회가 장로교 선교 기관과 미국 장로교회(법인)에 내린 선교 지침에 관해 미국 장로교회(법인)에 종속되지 않는다. 법인인 미국장로교회(U.S.A.)는 정관과 부칙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항에 관해 장로교 선교 기관에 종속되지 않는다. 양 기관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그분 안에서만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므로, 이 모든 면에서 그분의 교회의 사명과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장로교회(U.S.A.), 법인인 미국장로교회(U.S.A.) 이사회는 정관, 본 선교 기구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인사, 계약, 재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해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또는 장로교 선교 기관 회장/사무총장에게 특정 권한을 위임하여 장로교 선교 기관이 총회의 선교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86년 총회 결의에 따라 미국장로교회(U.S.A.) 법인체 분할 계획을 승인한 지급 기관으로서, 총회가 장로교 선교 기관 예산 및 선교를 위한 인당 예산에서 승인한 금액을 장로교 선교 기관을 위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 기관은 해당 예산, 기금 제한 사항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의 선교 결정에 따릅니다.

기타 관계에는 다음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A. *옹호 및 자문 위원회*

사무총장은 옹호 및 자문 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세 그룹 모두 총회와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인종적 평등 옹호 위원회(REAC)는 미국 장로교(PC(USA))가

교단 헌법 F-1.0403조에 명시된 대로 교단의 풍부한 다양성을 완전히 구현하도록 지원합니다. 본 위원회는 특히 인종이 유색인종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경우, 공공 정책 수립 과정에 유색인종을 참여시키기 위한 예언적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내외에서 유색인종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정책 시행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2. 여성과 성평등을 위한 옹호 위원회는 미국 장로교회(PCUSA)가 *교회 질서서에*명시된 대로 교인들의 풍부한 다양성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F-1.0403. 위원회는 교회와 세상에서 여성의 지위와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절차, 프로그램 및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교회 생활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포용성과 평등을 옹호할 것이다.

3. LGBTQIA+ 평등 옹호 위원회는 미국 장로교회(PCUSA)가 *교회 질서서* F-1.0403에 명시된 대로 교인들의 풍부한 다양성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원회는 교회와 세상에서 LGBTQIA+ 인사의 지위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절차, 프로그램 및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사회 전체에서 교회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 걸쳐 완전한 포용성과 평등을 옹호할 것이다.

4. 사회증언정책 자문위원회는 장로교 선교위원회와 협의하여 총회에 제출할 사회증언정책을 수립하고 권고하는 절차를 담당한다. "사회 증언 정책"이란 총회가 공공 질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채택한 입장을 의미하며, 이는 교회의 삶과 사명과의 관계도 포함한다. 이러한 입장은 *총회 매뉴얼* 65쪽 '사회 정책 수립' 2.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책 선언문, 결의안, 연구 보고서 또는 사회 참여 보고서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B. *신학 교육 위원회*

장로교 선교위원회(PMAB)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장로교회(PCUSA)와 기관적 또는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각 신학 기관의 대표를 포함하는 위원회로서 신학 교육 위원회(COTE)의 지속을 보장합니다. COTE는 총회 및 장로교 선교위원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그 업무는 신학·양성·전도 사역 영역을 통해 조정되며, 직원들은 신학·양성·전도 사역 영역 책임자에게 책임을 진다. 접근 방식은 결의안, 2년마다 제출하는 서술 보고서,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 기타 적절한 서신 형태로 이루어진다. 2년마다 제출하는 서술 보고서는 장로교 선교위원회에 전달되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학 교육 위원회의 목적은 미국 장로교회(PC(USA))와 역사적 관계 및 통치 약속("기관적 관계") 또는 언약적 약속과 본 교단 사역 지도자 및 교인 양성에 대한 공동 관심("언약적 관계")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관된 신학 기관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다.

"제도적" 관계는 신학 기관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해당 기관은 PC(USA) 및 그 전신 교단을 위한 목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PC(USA)로 통합된 장로교 교단들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온 역사에서 드러나듯, PC(USA)와 역사적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2) 해당 기관은 PC(USA)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기관의 정관 문서(본 문서에서 정관 문서란 설립 주에서 요구하는 정관, 법인 설립 증서 또는 헌장을 의미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해당 기관은 PC(USA)와 제도적 관계를 맺은 기관에 대해 COTE가 규정하는 보고 및 확인 정책을 준수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에는 총회에서 승인한 다음 조항들이 포함된다: (a) 해당 기관은 신학 교육 위원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할 것; (b) 각종 정관 규정에 따라 선출된 총장/집행 간부 및 이사진/이사들은 총회에 제출되어 인준을 받을 것 [참고: 이 인준 투표는 각 기관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교단이 신학 기관의 지도부를 확인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c) 운영 문서의 중대한 변경 사항은 총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학위 프로그램은 미국 및 캐나다 신학교 협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의 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장로교회(PC(USA))와 중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신학 교육 기관은 PC(USA)와 공식적인 협약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협약" 관계는 해당 신학 기관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며, 협약 문서에 상세히 명시될 것이며, 여기에는 당사자 간 추가적인 약속이 포함될 수 있다: (1) 장로교 신학 교육 사업과 관련한 그 사명이 명백하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장로교회(미국)와 사역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총회 신학교 평가위원회(COTE)의 총회 정기 보고서에 포함되어 총회에 해당 기관의 총장/집행 책임자 및 이사회 구성원 명단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장로교 및 개혁주의 교회적·신학적 교재의 교육을 명백히 지지해야 합니다.

COTE 기관 회원 수는 투표권을 가진 협약 회원 수보다 최소 한 명 이상 많아야 한다.

총회 상임규칙은 미국장로교회(PC(USA))와 기관적 또는 협약적 관계를 맺은 신학 기관의 총장/행정 책임자(또는 그 지명자)가 총회의 통신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VI. 미국 장로교회(PC(USA)), 법인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체는 총회의 법인체입니다. 본 법인은 1986년 총회 결의안, 정관 및 부칙에 따라 자금과 재산권을 보유합니다. 이 법인은 총회 및 그 산하 기관을 위한 회계, 보고,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회 사무국과 장로교 선교 기관에 배정된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단체는 총회의 전체 예산 승인을 조건으로, 자체 보유한 비제한 기금; 지정된 제한 기금; 장로교 선교국 및 총회 사무국의 각 예산 중 직원, 시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분; 관리 수수료; 그리고 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수수료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장로교 선교 기관과 총회 사무국은 행정 서비스 그룹과 서비스 제공을 규율할 지속적인 서비스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장로교 선교국과 총회 사무국을 제외하고, 장로교 총회(미국)의 다른 기관은 총회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장로교 선교국과 총회 사무국을 제외하고는 장로교 총회(미국), 미국 장로교회(PCUSA) 법인(A Corporation)은 총회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미국 장로교회(PCUSA) 법인(A Corporation)이 향후 교회 및 그 산하 기관에 제공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 및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PCUSA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장로교회(U.S.A.), 법인(Presbyterian Church (U.S.A), A Corporation)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단체가 원하는/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단체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다.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체의 임원,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 재무 담당자는 독립 공인회계사가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A Corporation)의 재정 상태 및 운영에 대한 감사 보고서 또는 보고서들을 작성하도록 위임해야 하며, 별도로 위임 및 작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총회 및 그 기타 기관들의 재정 상태 및 운영에 대한 감사 보고서 또는 보고서들도 포함됩니다.

VII. 기타 총회 법인

A. *연금위원회*

연금위원회는 미국 장로교(PC(USA))의 연금 및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민사 헌장에 따라 설립된 법적 책임이 있는 법인체이다. 법에 따라 이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오로지 참가자 및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

연금위원회와 장로교 선교회의 관계는 공식적인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교회 구조 내에서 미국장로교(PC(USA))에 대한 사역을 수행하는 연금위원회의 특별한 필요를 존중하고 반영하면서, 이들 기관 간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협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기 서기는 총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위원회,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거나 관련 관계를 유지한다. 정기 서기는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법인인 미국 장로교회(PCUSA) 이사회 및 기타 기관(선교 조직 제7장에 명시된 기관 포함)에서 당연직으로 활동하며,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 시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또한, 정규 서기는 기관 또는 단체의 최고 책임자(수석 임원) 또는 임시 기관 또는 단체 책임자(정규 서기 직위 대체를 위한 경우 제외)로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 명단이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해당 후보자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

보수, 복리후생, 연금 및 재정 지원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장로교 선교 기관과 연금 위원회 간에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장로교 선교 기관과 연금 위원회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의장(또는 지정된 자)은 연금 위원회의 대응 위원으로 활동한다.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는 총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명위원회는 그 구성원 중 한 명을 연금위원회에 선출될 후보자로 추천한다. 이 사람은 또한 교회 전체 인사 및 보상 정책과 관련하여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를 대표한다. 총회 서기와 미국장로교회(U.S.A.) 법인 회장은 연금위원회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습니다. 직원 수준에서는 연금위원회 위원장이 장로교 선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습니다. 연금위원회는 총회에 직접 보고하며 총회에 책임을 집니다.

B. *미국장로교회 재단*

미국 장로교 재단(이하 재단)은 총회를 위한 '신탁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체로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회를 대신하여 교회 투자 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유증 및 유언 강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금을 위탁한 기부자 및 기타 관계자들의 의사와 제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재단은 1986년 인도(Deliverance)에 따라 재산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총회를 위한 업무 외에도 재단은 교회 및 교회 기관은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독교 신앙과 청지기 정신의 표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단 이사회는 총회가 정상적인 지명 절차를 통해 선출합니다. 이사회는 총회에 보고하며, 보고서의 확정본은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에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가 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기적으로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 총회위원회, 법인인 미국장로교회(PCUSA)에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단의 총 예산은 장로교 선교위원회, 총회위원회 및 법인인 미국 장로교회(PCUSA)의 검토를 받도록 마련됩니다. 재단은 총회에 직접 보고하며 책임을 집니다.

관리, 선교 자금 조달, 유증 기부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장로교 선교 기관과 재단 간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향후 부록에서 이러한 관계를 정의할 예정이다. 제208차 총회(1996년)에 보고된 장로교 선교 기관과 재단의 공동 보고서는 제한적 기금에 관한 합의 사항과 이해 관계를 제시한다.

기금에 관한 합의 사항과 이해 관계를 제시한다.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 의장(또는 지정자)은 조정 목적으로 재단 이사회에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 없이 참석한다. 재단 이사장은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에 준회원으로 참여한다.

정관 서기는 총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위원회,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거나 이와 관련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관 서기는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 및 기타 기관(선교 조직 제7장에 명시된 기관 포함)에서 당연직으로 활동하며,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 시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또한, 정규 서기는 기관 또는 단체의 최고 책임자(수석 임원) 또는 임시 최고 책임자(정규 서기 직위 대체를 위한 경우 제외)로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 명단이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해당 후보자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

직원 수준에서는 총회 정규 서기와 장로교 선교 기관의 회장/사무총장이 재단의 이사로 임명된다.[3]재단 회장은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투표권은 없다. 또한 재단 회장은 사무총장실을 통해 확대 직원 리더십 팀의 일원으로 포함된다. 미국장로교회(U.S.A.) 법인 회장은 연금위원회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C. *장로교 출판 공사*

장로교 출판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자립 법인으로서 미국장로교(PC(USA))의 사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 출판사는 미국장로교를 비롯한 전 세계 광범위한 에큐메니컬 독자를 대상으로 도서 및 교육 자료를 출판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출판 프로그램은 교회의 사명을 가능한 한 광범위한 독자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종교적·사회적·문화적 관점을 포괄합니다.

인쇄된 말씀과 우리 교회의 사명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장로교 선교부와 장로교 출판사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출판사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에는 출판사 사장 겸 발행인, 총회 서기, 그리고 장로교 선교 기관의 회장/사무총장이 의결권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됩니다.(4) 미국 장로교회(PCUSA)의 회장은 장로교 출판사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나머지 이사들은 총회 지명위원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하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어떤 구성원도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해 두 번 이상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 이사회는 법인 정관에 따라 법인의 임원을 선출한다.

정기 서기는 총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위원회,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원 자격 또는 관계를 가진다. 정관 서기는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 및 기타 기관(선교 조직 제7장에 명시된 기관 포함)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 시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또한, 정규 서기는 기관 또는 단체의 최고 책임자(수석 임원) 또는 임시 기관 또는 단체 책임자(정규 서기 직위 대체를 위한 경우 제외)로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 명단이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해당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장로교 출판사 회장은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의 협의 회원으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직원 수준에서는 장로교 출판사 사장 겸 발행인이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 회의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장로교 출판사는 총회에 직접 보고하며 총회에 책임을 진다.

D. *미국장로교(PCUSA) 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 주식회사*

PC(USA)는 위대한 사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이야기를

예배, 증거,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건물들 안에서 이를 수행합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재건축하기 위한 자본을 조성하는 일은 미국 장로교회(PCUSA) 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 주식회사의 사역입니다.

미국 장로교(PCUSA) 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 주식회사(이하 "프로그램")는 펜실베이니아 주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각 주, 푸에르토리코,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무담보 이자부 투자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장로교회(PC(USA))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로 조성된 자금은 교회 건물 신축 및 기존 시설 재건축을 위해 교회, 중간 협의회 및 관련 기관이 사용하는 모기지 대출로 전환됩니다.

본 프로그램, 재단, 장로교 선교 기관 간에는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단과 장로교 선교 기관 모두 본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 약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1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모든 이사는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는 자체 구성원 중에서 2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총회 지명위원회는 6명의 일반 이사, 1명의 총회 소속 이사, 1명의 노회 소속 이사를 지명한다. 미국장로교회 재단은 2명의 이사를 추천하며, 법인 인사/추천위원회는 3명의 일반 이사를 추천한다.[5] 미국장로교회(U.S.A.) 법인 회장은 프로그램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프로그램은 장로교 선교위원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하며[6]총회와 장로교 선교위원회에 책임을 진다.[7]

정기 서기는 총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위원회,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원 자격 또는 관계를 갖는다. 정기 서기는 장로교 선교 기관 위원회,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 및 기타 기관(선교 조직 제7장에 명시된 기관 포함)에서 당연직으로 활동하며,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 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또한, 기관 또는 단체의 최고 책임자(수석 임원) 또는 임시 최고 책임자(정식 서기 직위 대체를 위한 경우 제외)로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 명단이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해당 후보자에 대해 정식 서기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회장 및 최고경영자는 장로교 선교 기관 이사회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는 발언 특권을 가진다. 또한 회장은 총회 집행자 포럼에 참여한다.

VIII. 총회 관련 법인

A. *미국 장로교회(U.S.A.) 소속 장로교 여성회*

미국 장로교회 여성회(Presbyterian Women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Inc.) (PW)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여성들의 포용적이고 돌보는 공동체로서 조직 및 운영되며,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한 신앙 양육, 전 세계 교회의 선교 지원,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 미국장로교회(PC(USA))(교회)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증거합니다. 장로교 여성회 회원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본 조직은 각 단계에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교회, 노회, 총회, 전국 단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PW는 PC(USA)의 통합 보조 기관입니다. PW는 총회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PW의 법인 설립 증명서에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PW가 교회 헌법에 명시된 개혁주의 전통의 교리와 원칙을 고수함을 규정합니다. PW는 4년마다 총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는 협정을 통해 장로교 선교 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IX. 개정안

총회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제출된 선교 조직 개정안은 장로교 선교위원회, 총회 사무국 위원회 및 미국 장로교회 법인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장로교 선교위원회와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이러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승인된 안건은 총회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한다.

---

[1]본 문서의 모든 성경 인용은 새개정표준역(NRSV)을 따릅니다.

[2]이러한 책임들은 2011년 새 교회 조직법이 승인되어 선교 조직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교회 조직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3] 1986년 구제법, 제3조(b)(2)[항 (4)] 2006년 구제법

, 제2조(e)[항 (5)] 1995년 구제법, 제2조(b)항

[6] 1995년 구원, 제2조(g)항

[7] 1995년 구원, 제2조(a)항

부록 A

재정 문제

제218차 총회(2008) 승인

I. 재정 문제 관련 용어 해설

II. 가치 선언문

III. 교회 전체 선교 지원

A. 교회 전체 선교 지원의 헌금 형태
B. 중간 협의회 역할과 책임
C. 특별 헌금 및 기타 특정 모금 활동
D. 선교의 검증
E. 회계 정의 및 기준: 지정, 제한, 비제한
F. 수집, 보고 및 감사

IV. 총회 예산 수립

A. 예산 주기
B. 예산 범위
C. 총회 1인당 예산
D. 기본 예산 설계
E. 행정 서비스 그룹 예산
F. 총회
G. 예산 수립에서의 역할과 책임

V. 행정 서비스

I. 재정 관련 용어 사전

채택된 예산: 총회, 노회, 시노드 또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예산.

협의: 일반적으로 중간 기구의 정식으로 선출된 대표들 간의 대면 만남으로, 교회 전체의 건강을 위한 선교 계획, 자금 조달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정보, 관점, 의견 및 조언을 교환하기 위한 것.

기부자: 기부금의 통제권을 다른 비과세 기관이나 협의회로 이전하는 개인, 기관 또는 협의회; *기부자* 참조.

지정: 협의회가 설명하거나 결정한 예산 범주. 중간 협의회만 지정을 할 수 있음; *제한적 기부* 참조.

약정 자금 분배: 교회 사명을 위한 사명 지원 약정 공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중간 협의회 간 합의.

기부자: 자선 목적으로 기부를 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기타 과세 대상 법인(예: 유산 또는 신탁). 중간 협의회가 비과세 법인인 경우 기부자가 될 수 없음. *기여자* 참조.

긴급 호소: 긴급 구호 경보를 통해 긴급한 필요에 즉각 대응할 것을 요청하는 적법하게 승인된 호소.

균등화: 제한 없는 기금을 사용하여 협의회가 체결한 약속 및/또는 협약을 이행하는 것.

일반 사역 자금: 중간 협의회에서 채택한 예산의 전반적 지원을 위해 제한 없이 접수된 기부금 및 헌금.

특정 사역 자금: 채택된 예산 내 지정된 예산 범주나 프로젝트를 위한 제한적 기부 형태.

사역 분야: 장로교 선교부 직원 구조 내 주요 업무 영역.

선교: 부록 A의 목적상 *선교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되며, 이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지역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교 지원 약속: 특정 연도에 다른 중회의의 선교와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회의가 채택한 총 금액의 특정 금액 또는 비율.

선교 지원 협의: 중간 평의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직접 만나 교회의 전체 선교 사명에 대한 공동 책임감을 확립하고, 선교 지원 목표에 대한 권고안을 지지하며, 약속된 선교 자금의 분배 방안에 합의하기 위한 대면 행사.

임무 지원 목표: 향후 특정 연도 또는 여러 해를 목표로 설정된 임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목표치.

기타 특정 호소: 승인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검증된 선교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요청.

인당 분담금: 모든 교인이 미국 장로교(PCUSA)의 선교 조정 및 평가 비용, 그리고 교회적·입법적·사법적 기능 수행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

예산 외 사업: 승인되었으나 확정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제한적 기부: 기부자 또는 후원자가 검증된 프로젝트, 예산 범주 또는 모금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한 기부금. 제한적 기부금의 처리는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정한 기준을 준수합니다.

특별 헌금: 승인된 예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특정 목적을 위해 계획, 조직 및 승인된 추가 헌금.

과세 대상 기관: 부록 A의 목적상, 연방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개인, 합자회사, 유산 및 신탁, 또는 법인.

비제한적 기부: 노회, 총회 또는 총회의 채택된 예산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수령된 제한 없는 기부금.

검증된 사명: 총회, 노회, 지방회 또는 총회의 정식 결의로 승인된 범위 내의 모든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기관의 승인된 예산에서 자금이 지원되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II. 가치 선언문

미국 장로교(PCUSA)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다음 원칙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셨기에,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로서 삶과 자원으로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연성: 우리는 성령께서 과거의 약속을 존중하고 미래의 약속을 준비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교적 본능을 부여하신다고 믿기에, 지역적 차이, 역사적 관행,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할 것입니다.

존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자 하므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남의 이익을 구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빌립보서 2:4-5). 따라서 우리는 책임 있는 시스템과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정보에 기반한 포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부자들의 열정을 인정할 것이며,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설계되고 실행되는 다양한 선교 관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부자들의 열정을 존중하는 것과 교단적 본질에 대한 지지를 장려하는 사이의 긴장을 인식하지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시 24:1-2)고 고백합니다.

소통: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므로(고린도전서 4:1), 다양한 경계를 넘어 상호 이해와 경험과 소망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중간 평의회 및 개인들과의 빈번한 교류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장로교회(PCUSA) 전역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와 일치할 것입니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은 청지기 정신이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 성경적 십일조 개념을 장려하며,
   - 삶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실한 제자도의 응답으로 이해되는 청지기 교육 장려,
   - 창의적이고 매력적이며 명확하고 저렴한 청지기 교육 자료 개발을 요구합니다.

2.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은 교인, 목사, 중간 평의회, 후원자들의 열정과 가치관에 호소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와 마음에 전하는
   - 교회의 사명에 기부자를 참여시키며
   -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임을 인식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청지기 직분으로부터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3.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자금 조달 설계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부자의 의도를 존중하며,
   - 기부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기회 제공,
   - 목회자, 당회, 잠재적 기부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기준을 충족합니다.

4.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자금 조달 설계는 우리의 연결성을 활용하고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며 선교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 대인 관계의 가치를 강조하며,
- 포용적인 평의회가 구성원들의 사명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 포용성이 부족한 평의회가 교회 경계를 넘어선 사역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 중간 평의회와 구성원들 간의 시간과 자원 상호 투자를 장려하며, 장로교인들이 장로교 선교의 주요 지원 기반임을 인식하고, 장로교가 승인한 선교에 대한 자금 지원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확증합니다.

5.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자금 조달 설계는 중간 평의회 간 정보 공유를 강조하여 역동적인 사명과 비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 중간 평의회들을 구조적·상호작용적 관계 속에 배치하고,
- 다른 중간 평의회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 자신의 관할 범위를 넘어선 사역에 참여하기 전에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6.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은 양방향 소통을 촉진할 것입니다:

- 정보와 피드백의 흐름을 환영하고 장려하며,
- 정보 공유가 교회 전체에 유익함을 인식하며,
- 가능할 경우 대면 소통을 장려합니다.

7.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자금 조달 설계는 역사적 관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 기존 자금 조달 체계가 가졌던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자금 조달 체계 개발에 계속 참고가 될 수 있음을,
- 현재의 자금 지원 파트너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8.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자금 조달 설계는 총회 기관 및 단체들의 목적 일치를 확증할 것입니다:

- 전체 교회의 선교적·교회적·행정적 사역을 육성하기 위한 자원 공유,
- 총회가 산하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존중하며(G-3.0106),
- 교회 구성원들에게 구조와 시스템 및 그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하고,
- 교회 전체를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 그리스도에 대한 더 근본적인 순종, 예배와 사역에서의 더 기쁜 경축"이라는 부르심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F-1.0404).

III. 교회 전체 선교 지원

A. 교회 전체 선교 지원의 헌금 형태

교회 전체 선교 지원은 모든 중간 평의회가 교회 전체의 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 지원 체계로, 세 가지 전반적인 헌금 형태가 있습니다.

1. 기본 선교 지원

   a. 일반 사역 기금: 제한 없이 헌금된 기부금으로, 당회, 노회, 총회 또는 총회의 승인된 예산 전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b. 특정 사역 자금: 제한이 있는 헌금으로, 당회, 노회, 총회 또는 총회의 승인된 예산 내에서 사용됩니다.

2. 교회 전체 특별 헌금: 총회가 계획, 조직 및 승인한 특정 목적의 헌금으로, 승인된 예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3. 기타 특정 모금: 제한이 있는 헌금으로, 일반적으로 당회, 노회, 총회 또는 총회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검증된 선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모금은 지속적, 기간 한정 또는 긴급 필요에 대응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 선교 지원과 별개의 추가 헌금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로회 여성회, 미국장로교회 재단, 검증된 선교 지원 단체 및 기타 기관을 통한 헌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헌금 중 일부는 채택된 예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은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 평의회의 역할과 책임

모든 재정 문제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이 준수될 것입니다.

1. 모든 위원회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역할

a. 선교 지원 목표 및 선교 지원 약속 분배에 관한 협의회 간 협의에 참여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b. 선교 우선순위, 예산 전망, 자금 필요 사항 및 선교 지원 목표를 공유한다.

c. 연례 해석 시즌을 위한 정보 제공, 지원 및 참여를 수행합니다.

d. 다른 위원회의 선교 우선순위와 자금 필요를 고려한다.

e. 선교 지원 약속을 채택하고, 해당 평의회가 직접 책임지는 예산에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한다.

f. 사명 지원 약속 변경을 고려할 때는 다른 관련 위원회와 즉시 소통하십시오.

g. 지도자와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h. 수령처가 교회 전체에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책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i. 기금 수령 및 지출, 협의회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완전한 재정 보고서를 매년 다른 협의회 및 교회에 제공하십시오.

j. 기부자, 교회 및 단체로부터의 선교 지원금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수하여 전달하십시오.

k. 개별 교회의 기부금 및 협의회가 요청한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총회와 적절한 경우 노회 및 구성 노회에 보고하되, 개별 기부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유지하십시오.

2. 총회의 역할

a. 모든 평의회 수준에서 선교 지원 목표 수립을 지원한다.

b. 선교 예산과 연간

c. 매년 총회, 노회, 및 교구 회의에 완전한 재정 보고서와 프로그램 평가를 제공하십시오.

d.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에 따라, 그리고 해당 회계 발표 및 비영리 산업에 특화된 규정을 준수하여 업계 표준을 보급한다.

비영리 산업에 특화된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 재무 담당자 및 재정 책임자를 위한 모범 사례로 업계 표준을 보급한다.

e.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교회 전체 특별 헌금 4종의 목적과 수혜자를 승인한다.

C. 특별 헌금 및 기타 특정 모금 활동

1. 교회 전체 특별 헌금

a. 특별 헌금 기금 수령 기준

특별헌금은 연결된 교회를 위한 중요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전체 교회의 장기적 사역을 위한 핵심 자원입니다. 다음 기준은 특정 사역이 이러한 특별헌금 중 하나로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 특별헌금 사역은 교회 전체의 자금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내에서 가치 있는 선교 해석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 특별헌금 사역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선포하며, 교회의 전체 선교 우선순위와 관련된 역사적 및 지속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특별헌금 사역은 교회 전체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을 잠재력을 가져야 합니다.

(4) 특별 헌금 사역은 충족해야 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역 실행 계획을 제공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로교 선교 기관에 영향력, 효과성 및 책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b. 특별헌금 운영 지침

다음 원칙과 실행 지침은 미국 장로교(PC(USA))의 교회 전체 특별 헌금을 안내합니다:

(1) 검토

a) 매년 장로교 선교부 사무총장 또는 지정된 자가 특별헌금 사역의 영향력, 효과성 및 명시된 목표 대비 책임성을 검토한다. 이 검토에는 특별헌금 사역의 예비금 적절성도 포함된다. 기금 개발 비용 및 인력 구성 역시 목표, 효과성 및 전략 측면에서 매년 검토된다. 모든 검토 결과는 장로교 선교부로 전달된다.

b) 4년 주기로 장로교 선교국은 특별헌금 및 수혜 사역에 대한 검토·평가와 기존 기준에 따른 새로운 특별헌금 목적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2) 기금을 배분할 때 장로교 선교국은 특별헌금 사역들을 그 전략적 비전과 사명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것이다.

(3) 각 장로교 선교 기관 특별 헌금 사역은 해당 사역 연간 예산의 2년치 이하의 재정적 예비금을 유지할 것이다. 장로교 재난 대응 사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장기적 복구에 전념함에 따라, 이는

장기적 복구 지원에 대한 헌신을 고려하여, 장로교 재난 대응 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재난 대응 기금은 이 요건에서 제외되며, 단 장로교 선교 기관이 지출 계획을 승인하고 매년 검토해야 함을 명시한다.

(4) 교회 전체 특별헌금 홍보는 프로그램별 기관이 아닌 장로교 선교부 기금 개발 사역 영역에서 진행됩니다
.

(5) 각 교회 전체 특별헌금의 홍보 및 접수 비용은 해당 헌금의 수입금에서 지급됩니다. 각 헌금의 총 수입금(제한적 및 비제한적)에서 해당 헌금의 비용을 공제한 후, 모든 수입금은 해당 헌금의 목적에 영구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헌금의 비용은 장로교 선교 기관의 정기 예산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6) 신규 또는 크게 개정된 특별헌금의 초기 비용은 발생 시 지출 처리됩니다.

(7) 특별헌금 홍보 자료는 헌금이 모금되는 전례 계절과 연계되어야 한다.

(8) 교회 전체 특별헌금의 배분 방식 변경 시, 해석 및 홍보 자료 개발과 배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9) 어느 한 해에도 교회 전체 특별헌금은 네 번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총회는 헌금 홍보 및 접수 시기를 지정할 것이다.

(10) 교회 전체 특별헌금 기금을 받는 사역부는 해당 특별헌금 기금의 수령 및 배분과 관련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교회 및 기타 협의회에 제공될 것이다.

(11) 교회 전체 특별헌금으로 자금을 받는 모든 사역부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와 기금 개발 담당자와 협력하여 교회 전반에 걸친 해석자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12) 모든 교회 전체 특별 헌금은 개혁주의 신학에 확고히 기반을 두고 해당 헌금이 권장하는 예배 시기에 적합한 해석 자료를 개발할 것이다.

(13) 사명을 추진하고 관대함을 인정하기 위해, 각 헌금의 지정된 대로 특별헌금 영수증을 장로교 선교부와 노회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 선교부는 교회별 헌금을 기록하고 노회에 통보하며, 교회에 적시에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2. 기타 특별 모금 요청

a. 기타 특별 모금 요청에는 신학 교육 기금, 특별 캠페인 또는 헌금(전국적, 지역적, 또는 지역적), 긴급 구호 요청(전국적, 지역적, 또는 지역적), 그리고 추가적인 헌금 기회가 포함됩니다.

(1) 신학 교육 기금은 제198차 총회(1986년)에서 승인된 1% 계획을 통해 당회에 요청되는 연간 특별 모금의 독특한 유형입니다.

(2) 하나 이상의 평의회가 승인한 특별 기간 한정 캠페인은 자본 수요 충족 및 기타 선교 목적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평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다른 관련 평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평의회 간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경우, 장로교 선교위원회는

총회 회기 사이에 기간 한정 캠페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구호 경보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기타 위기 상황과 같은 긴급한 필요에 대해 사람들이 연민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로교 선교부는 국가적 차원의 긴급 구호 경보를 발령하는 절차를 승인하여, 교회 자금이 긴급 상황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과 당회가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회, 노회 또는 총회가 보다 지역적인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 구호 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헌금 기회는 채택된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선교 사업을 후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a) 교회의 사명 무결성을 유지하는 검증 절차를 통해 이러한 기회를 식별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기회는 추가 기부 기회 프로그램을 통해 당회를 넘어 중간 평의회들이 공동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b) 확정된 예산 범위를 넘어 검증된 사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부자나 후원자는 보다 포괄적인 평의회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 기부 기회를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령 평의회나 기관의 기부 목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c) 효과적인 추가 기부 프로그램은 승인된 예산과 추가 기부 기회에 관한 정보의 상당한 공유에 달려 있습니다.

b. 기타 특정 모금 캠페인은 사전에 예상되는 행정 비용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모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정 모금을 지정하는 위원회는 자금 홍보, 접수 및 지급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의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특정 모금 수입에 대해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와 후원자에게는 실제 비율이 통보됩니다. 장로교 선교 기관은 전국적 긴급 구호 경보 전달 비용을 결정하며, 각 특정 모금별로 보고되는 이 비용을 수입에서 공제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c. 검증된 모든 사업 또는 기관에 대한 기부금 수령 확인은 수령 협의회 또는 검증 기관이 기부자 또는 후원자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부 목적에 대한 동의도 포함되어야 한다(부록 A, 교회 전체 선교 지원, 항목 E.2. 참조).

d. 검증된 선교 기금을 수령한 모든 자는 장로교 후원자나 기부자로부터 직접 받은 모든 헌금을 검증 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D. 선교 사업의 승인

1. 검증된 선교는 정식 회의를 통해 승인된 노회, 총회 또는 총회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교회 조직 규정에 부여된 책임과 일치하는 모든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위원회의 승인된 예산으로 자금이 지원되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검증된 선교는 교회의 주요 목적(F-1.0304)과 일치해야 하며, 다음 *교회 조직 규정의*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a. F-1.00 교회의 사명
b. G-3.0106 선교 행정
c. G-3.0113 재정
d. G-3.0201 구성 및 책임 (회중)
e. G-3.0301 노회의 책임
f. G-3.0401 총회 책임

g. G-3.0501 총회 책임

2. 모든 평의회는 교회 전체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사명을 적절히 검증한다. 이렇게 검증된 사명은 타인에게 권고될 수 있으나 그들의 동의나 지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3. 검증된 사명은 당회 예산 범위 내 또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a. 예산 내 승인된 사명: 당회, 노회, 총회 또는 총회의 승인된 예산에 포함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선교 기금 및 특정 선교 기금으로 지원될 사업도 포함됩니다.

b. 예산 외 승인: 채택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회, 노회, 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로 승인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 승인하는 평의회는 금액 및/또는 시간 제한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 회계 정의 및 기준: 지정 기부금, 제한 기부금, 비제한 기부금

1. 회계 목적상 지정자, 기부자 및 후원자에 대한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 지정 권한은 위원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기부자나 후원자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된 범주나 항목에 적용합니다. 지정권자는 반드시 위원회여야 합니다.

b. 기여자는 기부자, 협의회 또는 기타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자는 제한 없는 기부 또는 제한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c. 기부자란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기부자는 국세청 규정과 수령 기관의 수용 범위에 부합하는 제한적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은 기부 완료 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2. 회계상 목적으로, 무제한 기부와 제한 기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적 기부는 기부자나 후원자가 특정 사업, 예산 항목 또는 모금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을 둔 기부를 의미합니다. 제한적 기부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과 국세청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합니다. 비제한적 기부는 제한 없이 이루어진 기부로, 수령 기관의 사용 및 재량에 따릅니다.

a. 비제한적 기부는 기부 체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제한적 기부를 통해 개인과 위원회는 교회가 수행하는 전체 사명과 사역에 대한 지원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b. 교회 전체 특별 헌금 및 기타 특정 모금 활동과 같은 제한적 기부는 비제한적 기부에 더해지는 가치 있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한적 기부를 원하는 기부자는 먼저 승인된 예산 내의 프로젝트나 범주를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별 헌금 및 기타 특정 모금 활동은 항상 명시된 목적에 따라 제한됩니다.

(1) 각 평의회는 기부자의 기부 의도에 따라 기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의도를 존중할 수 없는 경우 기부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가 처음 접수된 위원회를 넘어 기부자와의 대화 및/또는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c. 기증품 사용 제한은 기증자나 기증 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항상 기부를 받는 위원회 또는 공인된 비영리 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1)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 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령 기관은 세금 면제 자격을 위태롭게 합니다.

(2) 제한적 기부가 수락될 경우, 해당 기부는 반드시 위원회가 승인한 지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 목적에 사용됩니다.

3. 지정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승인된 예산을 초과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b. 모든 관련 민법 준수를 보장할 것;

c. 모든 기부자 및 후원자에게 보고하십시오;

d. 기부 제한 조건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기부자 또는 기여자에게 연락할 것—제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기부자 또는 기여자가 다른 목적의 기금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금은 기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4. 예산 편성 및 균등화

a. 승인된 예산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조달됩니다:

(1) 먼저, 제한된 자금은 해당 예산 항목에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2) 다음으로, 제한 없는 기금은 모든 예산 항목의 이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3) 이러한 비제한 자금의 사용은 평의회 예산 내 균등화를 가능케 합니다. 이 과정은 적절한 제한과 지정을 존중하면서 평의회의 질서 있는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결정을 지원합니다.

b. 당회는 노회가 채택한 선교 지원 약속 분할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당회가 이러한 분할 협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노회는 해당 정책이 당회에 전달된다는 전제 하에 비제한 자금 사용을 통해 협정 이행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비제한 자금의 이러한 사용은 교회 간 균등화를 제공합니다. 교회 전체 특별 헌금 및 기타 특정 모금은 선교 지원 약속 이행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균등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F. 모금, 보고 및 감사

1. 자금 모금 및 송금

a. 총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에 따라, 그리고 비영리 산업에 특화된 모든 적용 가능한 회계 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무 기록을 유지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은 상기 요구 사항 준수를 지원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b. 총회는 운영에 있어 다음의 최소 기준을 준수할 것입니다. 노회와 총회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준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모든 기부금 수령 시 기부자 또는 교회에 상세한 영수증을 제공할 것.

(2) 매월 결산한다.

(3) 가능한 경우 언제 어디서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활용하여 자금 이체를 신속히 처리한다.

(4) 노회, 총회 및 총회 간 전자적 데이터 및 자금 송금 시 표준화된 상세 송금 양식을 사용한다.

(5) 현금 관리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현금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한다.

2. 보고

총회는 모든 출처로부터의 자금 수령에 관한 재정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며, 해당 정보는 PC(USA) 웹사이트의 재정 페이지에 게시될 것입니다.

a. 각 노회와 총회는 송금 시 지급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b. 각 노회와 총회는 승인된 정보 전달 양식을 사용하여 모든 헌금을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총회 사이트에 보고해야 합니다.

c. 총회는 각 노회 및 총회에 교회별 연간 정보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연간 보고서는 노회 또는 총회 관할 구역 내 교회들에게 해당 노회, 총회 및 총회를 위해 수령한 모든 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d. 총회는 노회와 협력하여 최소 분기별, 최대 월별로 각 노회에 정보 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며, 여기에는 노회, 총회, 그리고 총회 간에 합의된 달러 배분(노회의 선교 지원 약속 포함)이 실제 수령한 자금과 비교하여 명시될 것이다. 차이가 존재할 경우, 총회 측이 보고 측과 협력하여 필요한 변경 및/또는 수정을 명확히 하고 실행할 것이다.

3. 내부 감사

장로교 선교 기관은 다양한 감사 서비스를 포함하는 내부 감사 기능을 수립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재무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그리고 해당 정보가 식별, 측정, 분류 및 보고되는 방식 검토

b. 특정 재정 관리 기능의 효과성과 효율성 검토;

c.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및 규정 준수 여부 검토;

d. 내부 정책 및 절차 준수 여부 검토;

e. 연차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경영진 및 독립 감사인과 함께 검토하여 독립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공시 내용 및 내용에 만족하는지 확인;

f. 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독립 감사인을 선정하여 장로교 선교위원회 감사위원회에 검토 및 추천; 그리고

g. 장로교 선교위원회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

IV. 총회 예산 수립

A. 예산 주기

총회 예산은 선교, 인두세, 행정 서비스 그룹 및 지정 예산을 통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 총회 예산은 예산 주기별로 수립됩니다. 각 예산 주기는 연속된 두 개의 역년으로 구성되며, 첫 해는 2년마다 열리는 총회 회의 다음 해입니다(예: 2022년 총회, 2023/2024 예산 주기). 각 주기마다 미국장로교회(U.S.A.), 법인 이사회, 장로교 선교위원회 이사회,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해당 세 이사회가 승인한 절차를 통해 통합 예산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제안된 예산은 총회가 장로교 선교 기관의 선교 사업 계획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총회가 승인한 기타 조치들을 반영해야 한다. 제안된 예산은 장로교 선교 기관, 총회 사무국, 행정 서비스 그룹의 고유한 사역을 반영하고,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들의 목적 일치를 증진하며, 전체 교회의 사역을 세우기 위한 자원 공유의 가치를 촉진해야 한다.

B. 통합 총회 예산 승인

총회의 해당 위원회는 예산 주기 내 각 연도에 대해 균형 잡힌 예산안을 권고할 것이며, 여기에는 제안된 예산안과 청원안, 위원 결의안 및 총회의 기타 조치 사항이 반영되어 예산 주기의 업무 개요로 승인받게 된다. 총회는 제안된 예산에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후 장로교 선교위원회, 미국 장로교회 법인 이사회,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총회 후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정을 수행한다.

C. 예산 모니터링

미국장로교회(U.S.A.) 법인(A Corporation)은 예산 주기 전반에 걸쳐 자금의 적정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각 회기별 총회에 매년의 재정 결과 및 교회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보고합니다. 보고서는 지난 두 회계 연도(예: 2022년 총회에서 2020년 및 2021년 회계 연도)의 재정 결과를 다룹니다. 이 두 회계 연도는 동일한 예산 주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V. 행정 서비스

행정 서비스는 미국 장로교회(U.S.A.), 법인(A Corporation)의 회장에게 책임을 진다.

A. 다음 기관에 회계 및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장로교 선교부, 그 사역 지역 및 특정 관련 기관과 위원회.

2. 총회 사무국.

3. 수수료 기반 서비스 요청 시 기타 기관.

4. 적절한 경우 노회, 당회 및 교회 재정 담당자.

B. 다음 기능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수행합니다:

1. 회계 관리자/재무 회계 통제, 총계정 원장 관리, 일반 회계, 재무 보고, 미지급금, 미수금, 교회 및 학생 대출, 급여, 예산 편성, 고정 자산 관리, 해외 회계, 재고 관리, 프로젝트 회계.

2. 재무부/중앙 수납 서비스, 은행 관계 및 서비스, 해외 재무 서비스(적절한 경우), 외환, 단기 투자, 운전 자본/현금 관리, 기금 및 수익 회계.

3. 재무 계획, 자본 계획 및 경제 예측, 재무 모델링.

4. 부동산 유지 관리 및 운영(취득, 기증, 임대차, 처분 포함), 구매 및 인쇄 서비스, 우편 서비스.

5. 교회 내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교회 전체 수령 장소에 대한 기준 수립.

6. 주문 처리, 고객 서비스, 창고 관리 및 배송을 포함한 유통 관리 서비스.

C. A 법인 산하 각 기관의 경영진이 승인한 총 예산을 초과하여 어떠한 지출도 지급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궁극적으로 각 기관은 해당 분야 지출이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책임져야 하며, 이는 지출 약속 전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D. 모든 재무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기관에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E.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제출될 총회 재무상태표, 활동 및 순자산 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부록 B

다양한 조직 구조 관련 문서 목록

(다음은 다양한 조직 구조와 관련된 문서로, http://www.presbyterianmission.org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전 부록 B-J에 해당합니다.)

B. 미국 장로교회(PCUSA) 제198차 총회(1986년), 총회 산하 특정 기관의 법인 구조 설계 시행 결의안 [1986년 6월 17일 채택, 제199차 총회(1987년)* 및 제214차 총회(2002년) 수정]

C. 장로교 선교 기관의 특정 기관에 관한 법인 구조에 관한 결의안

- 미국 장로교회(PCUSA), 법인
- 출판 법인 - 제217차 총회(2006) 개정

D. 연금위원회와 장로교 선교 기관 간의 관계 정의에 관한 각서

E. 미국 장로교(U.S.A.) 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 주식회사 설립 및 관련 사항 [(제207차 총회(1995) 승인, 제209차 총회(1997) 개정)]

F. 공동 보고서—장로교 선교 기관 및 미국 장로교 재단 (회의록, 1996, 제1부, 617–18쪽)

G. 미국장로교회 재단의 자회사인 뉴 코번언트 신탁 회사(N.A.) 설립 승인 및 관련 사항 [제211차 총회(1999) 승인, 제212차 총회(2000) 및 제214차 총회(2002) 개정] [*회의록,* 1999, 제1부, pp. 492–94; 회의록, 2001, 제1부, p. 339]

H. 신약 연금 보험 회사 설립 및 관련 사항 [제211차 총회(1999) 승인] [*회의록*, 1999, 제1부, 500–502쪽]

I. 신약 기금 설립에 대한 재단 참여 승인 [제211차 총회(1999) 승인] [*회의록*, 1999, 제1부, 505쪽]

J. 미국 장로교(PCUSA) 모기지 법인 설립 [제213차 총회(2001년) 승인] [*회의록*, 2001년, 제1부, 173–75쪽]

*선교를 위한 구조 설계에서 발췌